

월간
재정포럼

2021. December_Vol.306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2

권두칼럼

업스트림 정책과 재정을 고민할 때 | 김현곤

현안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소고 | 김우현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 한동숙

정책토론회리포트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2021년도 제2차 PEMNA 예산분과 및 국고회계분과 웨비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세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2022년도 인플레이션 조정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업스트림 정책과 재정을 고민할 때 | 김현곤 02

현안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소고 | 김우현 08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 한동숙 30

정책토론포트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58

2021년도 제2차 PEMNA 예산분과 및 국고회계분과 웨비나 8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세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2022년도 인플레이션 조정 발표 외 100



업스트림 정책과 재정을 고민할 때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재정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의 증가, 저성장 추세의 지속, 일자리 창출 이슈, 탄소중립 대응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재정규모와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에 비해 나라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긴 안목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정부정책 및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재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한다. 조직도 사회도 마찬가지다. 개인으로서든 조직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든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과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살아간다.

특히, 정부와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2022년 예산만 해도 6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그런데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똑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하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짧은 생각을 공유해 보고 싶다.

현상질문과 본질질문, 현상정책과 본질정책

질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현상질문과 본질질문이다. 현상질문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관련된 질문이고, 이에 비해 본질질문은 문제의 근본과 본질을 묻는 질문이다. 어떤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일까? 모든 질문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상질문보다는 본질질문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터치하기 때문이다.

정책도 재정도 마찬가지다. 현상정책과 본질정책, 현상재정과 본질재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해결하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정책은 더욱더 필요하다. 그런데 본질정책과 본질재정을 고안하는 작업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현상정책과 현상재정은 고안하고 실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미 발생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서의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재난을 예로 한 번 들어 보자. 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나면 이재민이 발생한다. 이때 이재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적정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상대적으로 실행하기가 쉽다. 이미 발생한 홍수 사태와 이재민의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냥 두면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로 이재민이 된 사람들을 돕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정책과 재정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홍수와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해결하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본질정책은
더욱더 필요하다.**

.....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재정 소요는
계속 증대되는 데
반해 재정 공급은
한계가 있다.
문제의 근본에
초점을 둔 정책이
재정을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긴 안목으로 근본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것이 재정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향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책과 재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어야 한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애써 가야 할 길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근본과 본질에 접근하는 정책이 단순히 현상만을 해결하는 정책보다 더 낫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이유에서만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향후의 재정 소요는 불가피하게 계속 증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반해 재정 공급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업스트림 정책 및 재정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패러다임적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술변화, 인간변화, 환경변화다.

기술변화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으로도 불리는 인공지능(AI) 혁명이고, 인간변화의 핵심은 고령화와 장수혁명이다. 그리고 환경변화의 핵심은 주지하다시피 기후위기다.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의 세 가지 모두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메가톤급 변화들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와 국가가 주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과제들이 너무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재정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저성장의 지속,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치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메가톤급 정책들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재정 확보의 필연성이 높아질 것도 쉽게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를 한 번 들어 보자. 지금도 일자리 문제로 아우성인데, AI혁명의 진전으로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의 활용이 확산되면 될수록 기존의 일자리는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재정에 대한 수요를

집착하기 어렵지 않다.

장수혁명으로 사람들의 수명은 훨씬 더 길어지고 고령자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 사회보장, 고령자 일자리, 건강증진 등에 소요되는 예산만으로도 재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탄소중립으로의 길을 가려면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지원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도 새로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 세차게 몰아닥칠 이러한 패러다임적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모든 정부정책 및 재정운용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전환기적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최근 발간된 댄 히스의 『업스트림』¹⁾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강 하류(Downstream)에서 떠내려오는 이재민들을 구출하는 다운스트림 정책을 넘어서, 강 상류(Upstream)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업스트림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할 때다. 그래야 재정도 지속가능해지고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문제 발생 후에 강 하류(Downstream)에서 이재민을 구출하는 다운스트림 정책을 넘어, 강 상류(Upstream)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업스트림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할 때다.

1) 댄 히스, 『업스트림: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힘』, 웅진지식하우스, 2021.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소고

김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한동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소고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whkim@kipf.re.kr)

I. 서론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정형선, 2020). 2017년 8월에는 그동안의 보장성 확대 노력을 계승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다시 발표되었다. 해당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하에 향후 5년간 총 30.6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계획대로 추진되어 왔는지, 이를 위해 활용된 재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강건하게 판단하기에 현 시점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했다.¹⁾ 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감염병의 환경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 감소 등 외생적인 요인을 유발하며 2020년부터의 정책효과를 온전하게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한국의료패널」,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 등 거시적·미시적 의료 이용 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은 이 글을 쓰는 현재 2018~2019년까지 공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코로나19의 외생적 충격이 더해지기 이전인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단기 성과를 검토하고 추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시사점을 고민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지난 건강

1) 보건복지부, 「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원 의료비 혜택받았다」, 보도자료, 2021. 8. 12.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별화된 계획 및 현황을 논의한다. 제III장에서는 자료 분석을 통해 2018년부터의 정책 성과를 ① 보장률 제고, ② 비급여의 급여화, ③ 의료 이용의 변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현황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김우현 외, 2018). 먼저,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에 따라 경상의료비²⁾ 중 정부 및 의무가입건강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비중으로 집계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해 산출된 한국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2.2%이다(<표 1> 참조). 특히, 지난 몇 년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재원의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2017년 대비 2.6%p 상승). 하지만, 국제 비교 시 OECD 회원국 평균 및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재원 비중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비교 가능한 최신 연도인 2019년 기준으로 OECD 28개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부담 비중은 74.2%로 한국의 61.0%에 대비하여 약 13.2%p 높다([그림 1] 참조). 물론, 이와 같은 비중의 차이는 전체 국가 소득 중 보건의료 공공재원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를 배분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공공재원 규모는 GDP 대비 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또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집계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건보공단 집계 건강보험 보장률은 분모에 '건강보험 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분자에 '건강보험 부담금'을 둔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고 있으며,³⁾ <표 2>와 같이 약 60% 초중반대를 지난 20여 년간 횡보하고 있다. 보장률의 정의가 어쨌든 현재까지 전체 의료지출 중 건강보험 및 정부 재원이 부담하는 비중이 약 60%대이며, 나머지 약 30~40%는 환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환자 부담이 높아 이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낮은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단기 성과를 검토하고
추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시사점을
고민하고자 한다.**

2) 한 국가가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의미한다(신정우·정형선, 2015).

3)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정의 기준

<표 1> 연도별 재정체계에별 경상의료비 재원 조달 추이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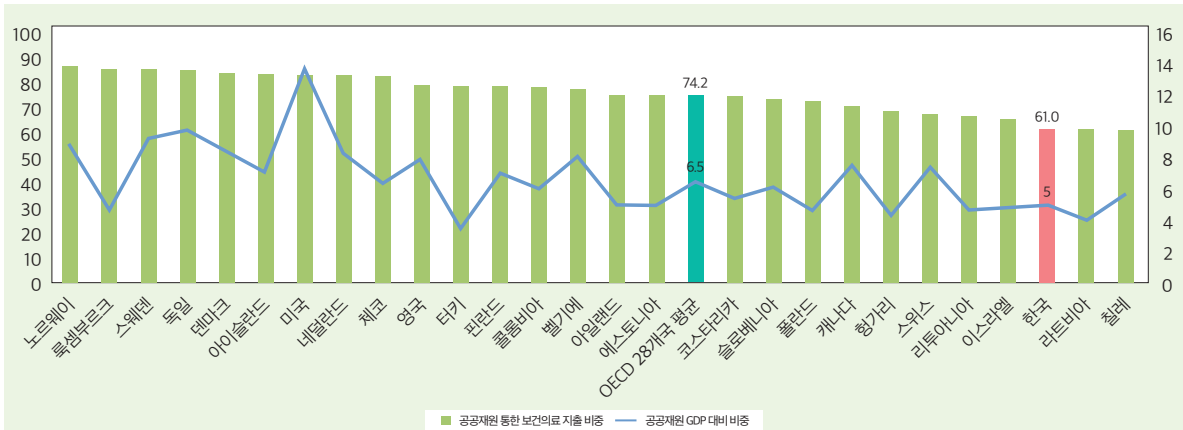
연도	경상의료비	정부 및 의무가입 건강보험(HF.1)			HF.2+HF.3	임의 가입 제도(HF.2)				가계 본인부담(HF.3)
		소계	정부	의무가입 건강보험		소계	임의가입 건강보험	비영리 단체	기업	
1970	72(100)	7(9.7)	6(8.3)	1(1.4)	65(90.3)	1(1.4)	-	1(1.4)	0(0.0)	64(88.9)
1975	242(100)	25(10.3)	20(8.3)	5(2.1)	217(89.7)	4(1.7)	-	2(0.8)	2(0.8)	213(88.0)
1980	1,365(100)	275(20.1)	96(7.0)	179(13.1)	1,090(79.9)	14(1.0)	-	8(0.6)	6(0.4)	1,076(78.8)
1985	2,893(100)	943(32.6)	188(6.5)	754(26.1)	1,950(67.4)	37(1.3)	-	28(1.0)	9(0.3)	1,913(66.1)
1990	7,275(100)	2,917(40.1)	540(7.4)	2,377(32.7)	4,359(59.9)	67(0.9)	-	48(0.7)	19(0.3)	4,292(59.0)
1995	14,758(100)	6,215(42.1)	1,075(7.3)	5,140(34.8)	8,542(57.9)	140(0.9)	-	106(0.7)	34(0.2)	8,402(56.9)
2000	25,398(100)	13,687(53.9)	2,624(10.3)	11,064(43.6)	11,711(46.1)	628(2.5)	400(1.6)	190(0.7)	38(0.1)	11,083(43.6)
2005	44,205(100)	26,246(59.4)	5,265(11.9)	20,981(47.5)	17,959(40.6)	1,273(2.9)	860(1.9)	349(0.8)	64(0.1)	16,685(37.7)
2010	78,264(100)	47,683(60.9)	9,042(11.6)	38,641(49.4)	30,581(39.1)	3,956(5.1)	3,343(4.3)	519(0.7)	94(0.1)	26,624(34.0)
2011	83,454(100)	50,098(60.0)	9,153(11.0)	40,945(49.1)	33,356(40.0)	4,861(5.8)	4,136(5.0)	607(0.7)	118(0.1)	28,495(34.1)
2012	88,317(100)	52,217(59.1)	9,442(10.7)	42,775(48.4)	36,099(40.9)	5,588(6.3)	4,766(5.4)	702(0.8)	119(0.1)	30,512(34.5)
2013	93,784(100)	55,442(59.1)	9,925(10.6)	45,517(48.5)	38,342(40.9)	6,244(6.7)	5,310(5.7)	805(0.9)	128(0.1)	32,098(34.2)
2014	101,258(100)	59,551(58.8)	10,715(10.6)	48,836(48.2)	41,707(41.2)	7,374(7.3)	6,286(6.2)	942(0.9)	146(0.1)	34,333(33.9)
2015	110,393(100)	64,971(58.9)	11,747(10.6)	53,224(48.2)	45,422(41.1)	8,271(7.5)	7,014(6.4)	1,089(1.0)	168(0.2)	37,150(33.7)
2016	120,464(100)	71,064(59.0)	12,395(10.3)	58,670(48.7)	49,399(41.0)	9,532(7.9)	8,174(6.8)	1,172(1.0)	187(0.2)	39,867(33.1)
2017	130,070(100)	77,514(59.6)	13,595(10.5)	63,919(49.1)	52,557(40.4)	10,380(8.0)	8,883(6.8)	1,305(1.0)	193(0.1)	42,177(32.4)
2018	142,741(100)	85,736(60.1)	14,467(10.1)	71,269(49.9)	57,005(39.9)	10,979(7.7)	9,342(6.5)	1,423(1.0)	215(0.2)	46,026(32.2)
2019	156,674(100)	95,541(61.0)	16,085(10.3)	79,456(50.7)	61,133(39.0)	13,747(8.8)	11,959(7.6)	1,565(1.0)	222(0.1)	47,386(30.2)
2020	161,753(100)	100,552(62.2)	17,892(11.1)	82,660(51.1)	61,201(37.8)	13,992(8.7)	12,138(7.5)	1,617(1.0)	237(0.1)	47,209(29.2)

주: () 안은 비중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자료(인출일자: 2021. 9. 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공공재원을 통한 보건의료 지출 비중 및 공공재원 GDP 비중(OECD, 2019년 기준)

(단위: %)



주: 공공재원은 정부(government transfers)와 의무가입 건강보험(compulsory health insurance) 혹은 사회보험 기여(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의 합으로 산출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1, <https://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표 2>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공단 집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보장률	61.3	61.8	64.5	65.0	62.6	65.0	63.6	63.0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장률	62.5	62.0	63.2	63.4	62.6	62.7	63.8	64.2

(단위: %)

출처: e-나라지표,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원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표 3>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공단 집계)

구분	목표 보장률	중증질환	고액의료비	3대 비급여	보완적 안전망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05~2008)	('04)61.3%→ (08)71.5%	중증 질환 산정특례제도 도입 (입원 20%→10%)	MRI 급여 적용 확대	-	본인부담 상한액 하향 조정 (6개월간 300만→200만원)
	'08년 보장률: 62.2%	PET 급여화 (중증 질환 대상)	입원 식대 급여화 (본인부담 50%)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09~2013)	('09)64.0%→ (13)80.0%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 경감 확대 (10%→5%)	MRI 급여 적용 확대(척추, 관절 등)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 적용(3단계)
	'13년 보장률: 62.0%	초음파 급여화 (중증 질환 대상)	치과, 한방 급여화 (치석 제거, 틀니, 한방물리요법)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4~2018)	('14)63.2%→ (18)68.0%	선별급여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	MRI 급여 적용 확대(근골격계 질환 등)	-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 상급병실 축소 (건강보험 적용 병상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기준 세분화(7단계) + 재난적 의료비 도입
	'18년 보장률: 63.8%		초음파 급여 적용 확대 (임산부, 간질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2023)	('17)62.7%→ (23)70.0%		예비급여 도입 (치료를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선택진료 폐지 - 상급병실: 병실 2:3인실 보험 적용, 인실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적용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완적 의료비 지원 제도 내실화

출처: 여나금(2020), p. 25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2.2%로,
지난 몇 년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재원의 비중이
소폭 상승했으나
OECD 평균 및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재원 비중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부터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의 형태로 급여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표 3> 참조). 초기 제1~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양한 정책 방향 가운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률 확대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최종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은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부담을 높이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장률의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비급여본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꾸준히 지적되었다(여나금, 2020).⁴⁾

이에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부터 본격적으로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선별급여의 도입, 재난적 의료비 제도 도입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급여화가 진행되었다. 뒤이어 문재인 케어로 언급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정책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의 형태로 급여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실제로 기존의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고액 진료비로부터의 가구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표 4> 참조).

I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

2018년 이후 본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되는 과정 중, 정부는 2차례(제1차: 2019. 7., 제2차: 2021. 8.)에 걸쳐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년이 된 올 8월에는 총 3,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⁵⁾ <표 4>의 주요 스케줄에 따라 3대 비급여의 해소 및 개선, 초음파 및 MRI검사의 단계적 비급여 해소, 취약계층(아동, 고령층, 장애인, 난임 가구 등)을 위한 단계적 본인부담 인하 및 비급여 해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의 인하(연 소득의 10% 수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 및 지원 한도 확대(2천만원 → 3천만원)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 준비금(적립금)은 약 17조 4천억원으로 집계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계획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성과 발표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행정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즉, 환자 본인부담 수준 조정, 비급여

4) 물론 제1~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급여화를 일부 시도했으나, 급여화가 보장률의 상승을 견인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5) 보건복지부, 「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원 의료비 혜택받았다」, 보도자료, 2021. 8. 12.

<표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2018년~)의 주요 내용

항목	적용 일시	주요 내용
비급여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2018. 1. 1. 폐지
	상급병실료	2018. 7. 1. 2·3인실 건보 적용
	간병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017: 26,381병상 → 2021: 60,287병상)
기타 비급여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적용
초음파·MRI	초음파	2018. 4. 1.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2019. 2. 1.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2019. 9. 1.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보 적용
		2020. 2. 1.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보 적용
		2020. 9. 1. 눈 초음파 건보 적용
		2021. 4. 1. 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MRI	2018. 10. 1. 뇌·뇌혈관·특수검사 건보 적용
		2019. 5. 1.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건보 적용
2019. 11. 1. 복부, 흉부 MRI 건보 적용		
급여 본인부담 인하		
취약계층 부담 완화(아동)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2017. 10. 1. 본인부담률 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2019. 1. 1. 본인부담률 21~42% → 5~20%
	조산아, 저체중 출산아 외래 진료비	2020. 1. 1. 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취약계층 부담 완화(고령층)	중증치매 치료	2017. 10. 1.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률 20~60% → 10%
	틀니·임플란트	2017. 11. 1. (틀니) 2018. 7. 1.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재난적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2018. 1. 1.	소득수준 하위 50%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대상: 4대 중증질환 → 전체 질환 한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2021. 11.)

정부는 현재 기존의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고액 진료비로부터 가구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2100m01.do>, 검색일자: 2021. 9.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횡보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결과는
고무적이나, 상승 폭이
충분하지 않아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치인 2023년
70%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여 서비스의 급여 전환 등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 변수이므로 계획에 맞춰 정책 변수의 조정에 성공했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세부 집단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장률의 변화는 급여 서비스의 이용량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더했는가,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은 사회 구성원의 건강 증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등 본질적인 정책 질문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2019년⁶⁾까지의 가용할 수 있는 각종 집계자료 및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위의 질문 중 일부인 ① 세부 보장률 변화, ② 비급여 전환 이후 비급여 및 급여 지출의 추이, ③ 급여 서비스의 이용량 변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건강보험 보장률

<표 2>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1.5%p 상승했다. 횡보하던 보장률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거나, 상승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치인 2023년 70%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정부 공약인 목표 보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⁷⁾

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무수히 많은 급여 의료 서비스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의 “평균적인” 수치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환자들은 연령, 소득수준,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상이하게 체감할 수 있고, 보장률 지표는 다양한 환자군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정형선, 2020).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 정도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고액진료비 지출 중 경제적 부담이 되는 세부질환을 상위 30개, 상위 50개로 각각 구분하여 보장률을 집계했다. 제1~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제3차의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도입 등 중증질환 및 고액 진료에 정책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에는 해당 보장률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이와 같은 추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중증질환 및 고액 진료의 부담 경감에서 전체 의료 서비스의 비급여 통제 등으로 보장률 강화 정책의 대상이 확대된 것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참고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은 첫째, 현재 시점(2021.9.)으로 분석자료가 아직 미공개이며, 둘째,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한 의료대면 서비스 이용 감소 등의 효과로 해당 기간의 자료분석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식별하기가 까다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추후 건강보험 재정 분야의 연구 주제이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종 통계자료 및 미시자료가 활용 가능한 2019년까지를 자료 분석기간으로 간주한다.

7) 예를 들어, 참여연대는 2021년 8월 12일 논평을 통해 비급여의 효과적인 통제가 실패하여 목표 보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참여연대, 「[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2021. 8. 12.,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13119>, 검색일자: 2021.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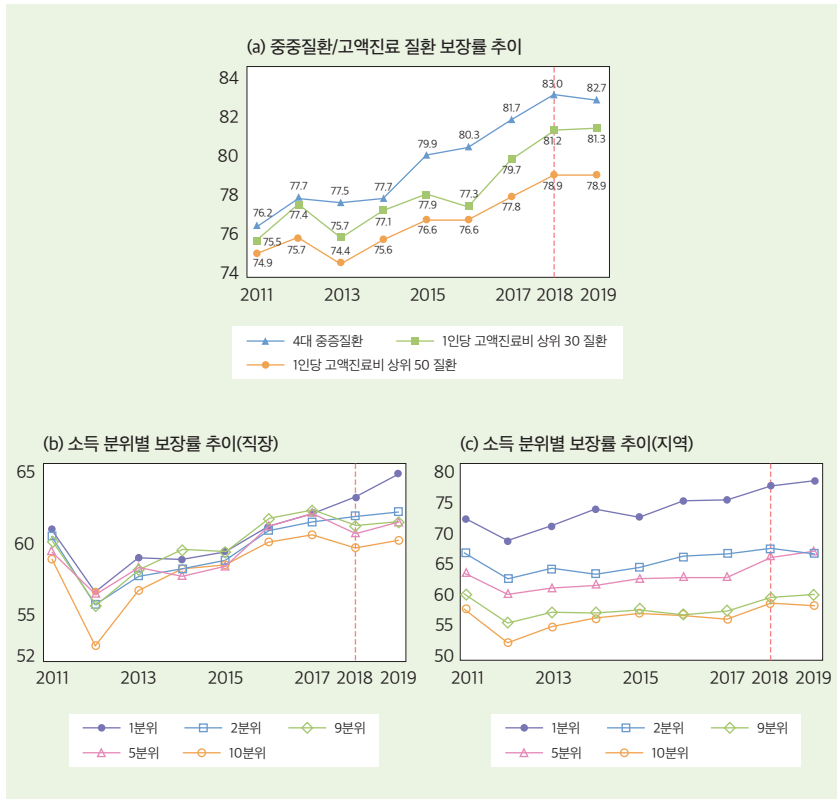
한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⁸⁾ 변화로 2018년부터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되었다(<표 5> 참조). 소득 분위별 보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 대비 2018~2019년에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를 중심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 대상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일부 정책 효과들이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중증질환 대상에서 전체 질환 대상으로 보장률 제고의 정책 방향 전환이 단기 결과로 확인되며, 주로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장률 제고 효

소득 분위별 보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018~2019년에 소득 1분위를 중심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보장률 추이(중증질환/고액진료, 소득분위 기준, 2011~2019년)

(단위: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 가구 소득 10분위 기준으로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선이 설정되어 매년 상한 기준 이상의 건강보험 급여 법정본인부담 지출 시, 상한선 이상의 지출 금액을 사전적으로 면제, 혹은 사후적으로 상환해 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변화로
2018년부터 소득 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되었다.

<표 5>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변화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원(제도 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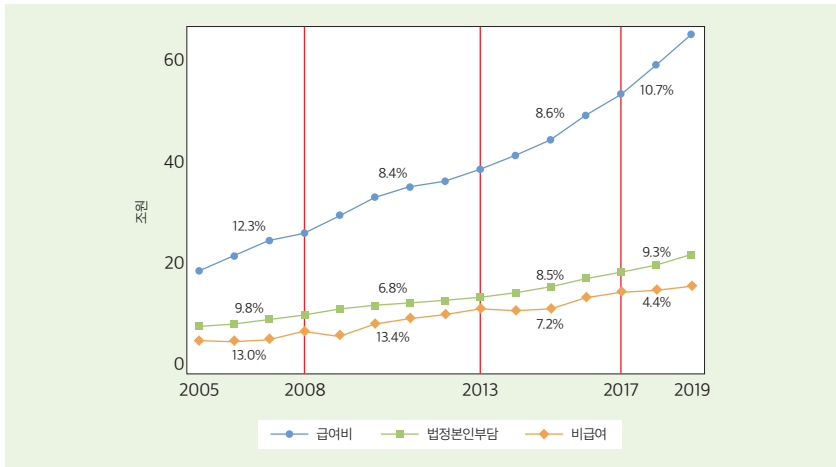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1. 8. 20.

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당 기간 보장률의 변화가 정책 대상 및 질환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 전환

비급여의 급여화는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과제이며,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과제이다. 현재까지 정확한 비급여 의료지출의 규모 및 시계열에 대한 공인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나금(2020)의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총진료비 및 총 건강보험급여비를 연도별로 산출하고,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그림 3] 세부 진료비 규모 추이와 구간별 증가율



주: 급여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은 건강보험통계연보상 총 진료비에서 총 급여비를 제한 수치
출처: 여나금(2020), p. 24 [그림 2]의 방식으로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급여비 자료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의 보장률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을 보면 제1~2차 보장성 강화 시기에 비급여의 증가세는 각각 연평균 13.0%(제1차)와 13.4%(제2차)로, 건강보험 급여비나 법정본인부담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 표본을 통해 조사한 보장률을 반영하여 보장률 산식에 따라 비급여 규모를 역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으로 간접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식으로 판단된다.

<표 3>에서 소개된 것처럼 제1~2차 보장성 강화 시기에도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었지만 정책의 본격적인 핵심 목표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시기에 비급여의 증가세는 각각 연평균 13.0%(제1차)와 13.4%(제2차)로, 건강보험 급여비나 법정본인부담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3] 참조). 이후 보장률의 정체를 비급여의 증가에 있다고 판단한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로 3대 비급여의 폐지 및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선별급여, 예비급여로의 전환 등이 추진되며, 비급여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3~2017년 동안 연평균 비급여 증가율은 7.2%로 낮아졌으며, 2018~2019년 2년간은 4.4%로 더욱 낮아졌다. 2023년까지의 자료를 이후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근거로 비급여의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급여 지출의 증가율을 둔화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의 편입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원 소요는 불가피하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평균 1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논의사안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 이용의 변화 여부와, 의료비 증가 시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지지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다.

의 증가율로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평가 및 대책은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이 17조 4천억원이며 정부의 계획 범위에 있으므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 지원이 확대(2017년 약 6조 9천억원 → 2021년 약 9조 5천억원)된 효과가 반영된 결과임을 간과할 수 없다.

비급여 서비스가 예비급여의 형태로 제도권 안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신의료기술까지 포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을 재평가하는 근거의 정비, 인력과 절차의 구축이 필요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강희정, 2018). 4대 중증질환 관련 진료가 보장 범위였던 선별급여와 달리 전체 질환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 예비급여의 경우, 과학적 평가를 위한 임상자료 마련 등이 여의치 않은 행위와 재료도 적지 않아 제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용진 외, 2020).

3.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지출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며 논의의 중심이 된 사안 중 하나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 이용의 변화 여부와, 만약 증가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이를 (장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인지에 관한 예측이다. 다양한 성격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의료 서비스 이용의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 건강보험 재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운용 방향을 설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합리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은 국내에서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공백 속에서 논의의 중심은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일시적인 현금흐름 해소를 목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즉, 2017년 기준 약 20조원의 적립금을 그대로 적립해두는 것이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은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변수의 변화에 의한 결과물이며, 적립금의 적절한 규모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다양한 가정하에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부터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보험료 증가, 지출

효율화 등 대책에 필요하다는 추계 연구도 소개되어 있다(김윤희, 2020).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할 때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이 특히 지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의료 이용 변화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발표 자료 및 집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변화를 가늠해본다. 2021년 8월 12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이 약 17.4조원 적립되어 있고 이는 정부의 계획 범위 안에 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매년 급여비의 1~3%를 절감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규모가 2017년 약 6조 9천억원에서 2021년 약 9조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 수지의 부정적인 요인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7~2016년 평균인 3.2%보다 낮은 평균 2.91%의 보험료율 상승을 보임으로써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표 6>은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과 각종 건강보험 지출 집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특히 지출 측면에서의 양적 변화가 눈에 띈다. 전체 지출 측면(진료비, 급여비)뿐 아니라, 인구 변화의 효과를 통제한 1인당 지출규모(1인당 진료비, 1인당 급여비)에서 증가율의 유의한 상승 변화가 관찰된다. 1인당 진료비는 2010~2017년 연평균 증가율 6.22%와 비교하여, 2018년 11.69%, 2019년 10.85%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 또한 2010~2017년 연평균 증가율 6.57% 대비, 2018년 14.75%, 2019년 8.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변화 등의 효과를 제외하고 의료 이용의 양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1인당 내원일수 또한 2010~2017년 연평균 증가율 1.28% 대비, 2018년 1.61%, 2019년 2.81%의 상승 추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계 정보는 보장성 강화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이므로, 이를 순수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재정 수입 및 지출이 꾸준히 양적 증가 추세를 보여 왔던 과거의 해당 시계열 추세와 비교해도 2018년부터의 정책 시행 이후 변화된 추세를 주목할 만하다.

집계변수의 변화 검토는 건강보험 재정 전체의 종합적인 변화를 거시적으로 관찰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기간 동안 의료지출 집계 변수는 해당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들의 종합적인 평균치가 제시되는 것으로,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할 때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이
특히 지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의료 이용
변화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6>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특히 지출 측면의 양적 변화가 눈에 띈다. 전체 지출 측면뿐 아니라, 인구 변화의 효과를 통제한 1인당 지출 규모에서도 증가율의 유의한 상승 변화가 관찰된다.

<표 6> 건강보험 관련 주요 지표(2010~2019년)

(단위: 조원, %, 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료(조원)	33.31	37.95	41.73	44.83	47.91	51.42	54.68	57.19	60.97	66.90
증가율	-	13.92	9.97	7.42	6.86	7.33	6.35	4.58	6.60	9.73
'10~'17년 평균증가율	-	-	-	-	-	-	-	8.06	-	-
1인당 보험료(만원)	68.32	77.24	84.32	89.97	95.52	101.95	108.01	112.46	119.54	130.58
증가율	-	13.05	9.16	6.70	6.17	6.74	5.94	4.12	6.30	9.24
'10~'17년 평균증가율	-	-	-	-	-	-	-	7.41	-	-
진료비(조원)	43.63	46.24	47.84	50.96	54.43	57.95	64.58	69.34	77.66	86.48
증가율	-	5.98	3.46	6.51	6.81	6.48	11.43	7.37	12.00	11.36
'10~'17년 평균증가율	-	-	-	-	-	-	-	6.86	-	-
1인당 진료비(만원)	89.48	94.11	96.65	102.26	108.52	114.91	127.54	136.33	152.27	168.80
증가율	-	5.18	2.70	5.80	6.12	5.89	10.99	6.89	11.69	10.85
'10~'17년 평균증가율	-	-	-	-	-	-	-	6.22	-	-
급여비(조원)	33.75	35.83	37.58	39.67	42.83	45.76	51.01	54.89	63.17	69.00
증가율	-	6.17	4.89	5.57	7.95	6.85	11.48	7.60	15.08	9.23
'10~'17년 평균증가율	-	-	-	-	-	-	-	7.22	-	-
1인당 급여비(만원)	69.22	72.93	75.93	79.62	85.39	90.73	100.76	107.93	123.86	134.67
증가율	-	5.36	4.12	4.86	7.25	6.26	11.05	7.12	14.75	8.73
'10~'17년 평균증가율	-	-	-	-	-	-	-	6.57	-	-
1인당 내원일수(일)	18.57	18.82	19.21	19.42	19.71	19.63	20.16	20.28	20.61	21.19
증가율	-	1.40	2.03	1.12	1.48	-0.41	2.69	0.64	1.61	2.81
'10~'17년 평균증가율	-	-	-	-	-	-	-	1.28	-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 지표(총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따라서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 세부 질환 및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서비스의 의료 이용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미시자료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에 활용한 건보공단의 표본코호트 DB는 2006년 기준 약 100만명 표본을 기본으로 2002~2019년까지의 의료 이용 기록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

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 기관 방문 횟수 등 보건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앞으로 제시할 몇몇 의료 서비스의 양적 변화 사례는 약 100만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변화이므로 국민 전체 이용 변화로 해석할 수 없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급여 의료 서비스가 급여화된 사례인 상·하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의 이용 추이를 살펴보자. 두 의료 서비스는 과거 일부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체계로 유입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이용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질문은 기존 비급여 상황에서의 이용량 대비 건강보험 체계 편입 이후 이용량이 증가했는가인데, 과거 비급여 당시의 이용량 정보가 없어 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된 사례의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서비스의 이용량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건강보험 보장규모의 변화만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먼저 강조하고자 한다.

상·하복부 초음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첫 번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미 2013년 10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산정특례자, 2015년 9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되어 왔다. 이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8년 4월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복부 초음파가, 2019년 2월 1일부터 소장·대장·충수, 서혜부, 직장항문 및 신장, 부신, 방광 등 비뇨기를 대상으로 하는 하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되었다(Jang and Park, 2020).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회의 필수급여가 인정되며, 필수급여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 80%의 적용으로 예비급여화되었다.

건강보험 자료(30테이블)의 행위 분류코드 변수에서 해당 수가코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급여 초음파 검사량을 식별했다. 상복부는 EB441(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일반), EB442(간·담낭·담도·비장·췌장 정밀) 코드, 하복부초음파는 EB443(충수), EB444(소장·대장), EB445(서혜부), EB446(직장·항문), EB447(항문) 및 EB448(신장·부신·방광), EB449(산정·부신), EB450(방광)의 비뇨기 코드를 활용했다.⁹⁾ 그 결과 상복부·하복부 초음파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전환 시기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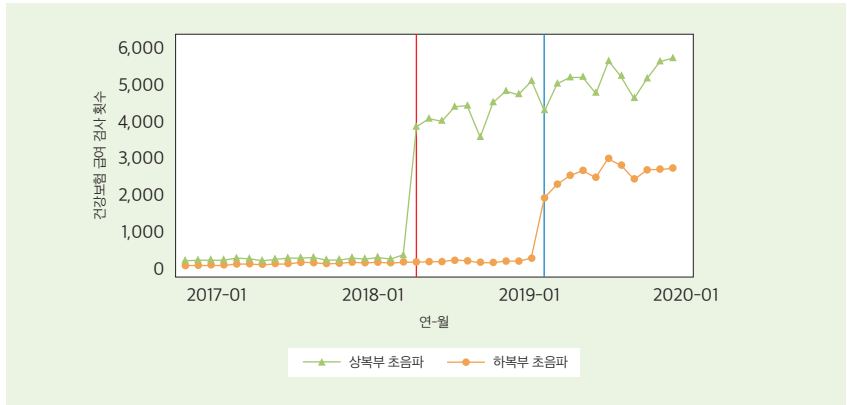
**비급여 의료 서비스가
급여화된 사례인
상·하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의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두 의료 서비스는
과거 일부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
되었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9) 각 분류코드는 도플러 초음파, 연령 등 대상에 따라 세부 코드로 세분류되고 있으며, 이 세부 코드 또한 모두 포함하여 검사 행위를 식별했다.

상·하복부 초음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첫 번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초음파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전환 시기부터 큰 폭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림 4] 상복부·하복부 초음파 검사(건강보험 급여)

(단위: 회)



출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큰 폭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 증가가 관찰되었다. 상복부 초음파의 검사 급여 횟수는 보장성 확대 기간인 2018년 1월 기준 전후로 월 평균 275.8회에서 4,661.4회로 약 16.9배가 증가했으며, 하복부 초음파 또한 2019년 2월 기준 전후로 평균 14.7배가 증가했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급여 형태의 초음파 검사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¹⁰⁾

뇌·뇌혈관 MRI는 기존에는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8년 10월 1일부터 신경학적으로 이상 증상이 있는 것을 진료 의사가 판단하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해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중증 뇌질환자의 경우에도 수술 전후 MRI 검사의 적용 기간 및 횟수 등이 확대되었다. 급여 확대를 통해 뇌 MRI 촬영을 위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 40만~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역시 표본코호트 DB 자료에서 뇌, 뇌혈관, 경부혈관의 촬영료 코드를 통해 MRI 검사급여 횟수를 식별했다.¹¹⁾ 제도 변화 시점인 2018년 10월 전후로 뇌 MRI 검사 급여 횟수는 월 평균 26.8회에서 1,443.9회(53.9배 증가), 뇌혈관 MRI는 평균 11.5회에서 1,162.9회(101.1배 증가), 경부혈관 MRI는 평균 7.8회에서 543.4회(69.7배 증가) 증가했다.

이제는 원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자의 본인부담을

10) 즉, 정책 도입 이전 비급여와 급여 형태로 시행되던 총 검사 수를 알 수 없으므로, 정책 도입 이후 총량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없다.

11) 제도 변화 이전 HE101(뇌), HE135(뇌혈관), HE136(경부혈관), 제도 변화 이후 HI101(뇌), HI135(뇌혈관), HI136(경부혈관)의 코드 및 하위 세부 코드를 활용하였다.

[그림 5] 뇌·뇌혈관 MRI검사(건강보험 급여)

(단위: 회)



뇌·뇌혈관 MRI는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된 2018년 10월 전후로 뇌 MRI 검사 급여 횟수는 월 평균 53.9배 증가, 뇌혈관 MRI는 평균 101.1배 증가, 경부혈관 MRI는 평균 69.7배 증가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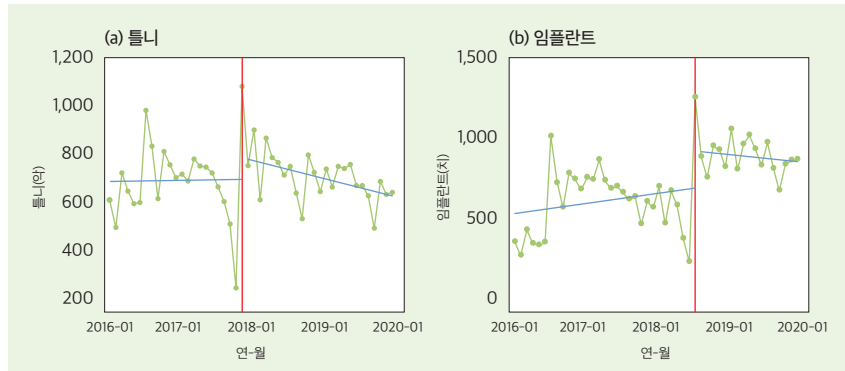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부담 비중을 증가시킨 몇몇 사례들의 의료 이용 변화를 검토한다. 앞선 사례와 달리, 이 분류에 속하는 의료 서비스는 보장성 강화 이전에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되어 서비스 이용량이 관찰될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을 통한 부담의 경감이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는지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틀니, 임플란트 이용은 환자 본인부담이 50%에서 30%로 각각 2017년 11월 1일(틀니)과 2018년 7월 1일(임플란트) 기준으로 변화되었다. 틀니는 의료수가표상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장착되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단계가 청구자료에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의 경우 제작에 필수적인 인상채득을 기준으로 횟수를 측정했다.¹²⁾ 그 외 임시 완전틀니, 임시레진상부분틀니 등 임시 이용 틀니는 1약당 별도 코드를 활용

12) 행위코드는 UA111, UA112, UA113, UA114, UA115, UA116, UA117, UA118, UA119, UA311, UA312, UA313, UA314, UA315, UA316, UA317, UA318, UA319, UA511, UA512, UA513, UA514, UA515, UA516, UA517, UA518, UA519이다.

틀니는 구강의 위·아래로 장착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틀니 수요가 없으나, 임플란트는 치아 개수별로 필요에 의해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의료 수요 변화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고령층 틀니·임플란트(건강보험 급여)



출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해서 식별했다.¹³⁾ 임플란트 역시 시술 과정이 진단 및 치료 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의 3단계를 거치며 과정마다 수가가 생성되어 청구자료에 기록된다. 치아 개수당(1치당) 고정체 식립술 시술 여부를 기준으로 임플란트 개수를 측정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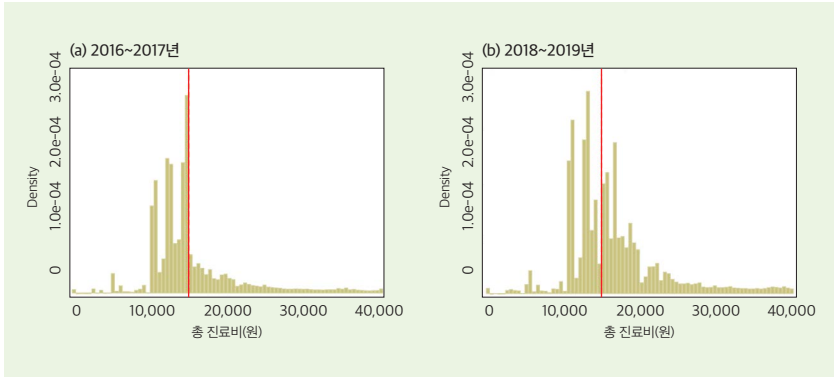
우선 본인부담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 직전 몇 달간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횟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제도 변화 이전의 정보 공개로 인해 단순히 시술 시기를 제도 변화 이후로 연기하는 효과로 보인다. 본인부담 변화 이후 이용 횟수의 변화가 있었는지 *t* 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틀니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임플란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p < 0.001$). 틀니는 구강의 위·아래로 장착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틀니 수요가 없으나, 임플란트는 치아 개수별로 필요에 의해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의료 수요 변화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외래 이용은 2018년 이전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 + 환자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1만 5천원 기준으로 기준선 이하의 외래 이용 시 1,500원의 정액이 환자에게 부과되고, 진료비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30%의 정률 금액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진료비 1만 5천원 초과 상대적인 고가의 외래 이용에 고령층의 부담이 크며, 임상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김계현 외, 2014).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구간 1만 5천~2만 5천원의 환자 본인부담이 10~20%로 경감되었다.

김우현(2021)은 「한국의료패널」 2012-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표 7>의 제도

13) 행위코드는 UA201, UA202, UA203, UA204, UA205, UA206, UA207, UA208, UA209, UA401, UA402, UA403, UA404, UA405, UA406, UA407, UA408, UA409이다.
 14) 행위코드는 UB121, UB122, UB123, UB124, UB125, UB126, UB127, UB128, UB129 및 하위 재수술코드를 포함한다.

[그림 7] 고령층 외래 이용 히스토그램



주: 붉은 색 선은 진료비 15,000원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7> 만 65세 이상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변화(2018. 1. 1.)

구분	본인부담	
	2018. 1. 1. 이전	2018. 1. 1. 이후
진료비 구간	2018. 1. 1. 이전	2018. 1. 1. 이후
1만 5천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 5천원 초과~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2만 5천원 이하		20%
2만 5천원 초과		3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2100m01.do>, 검색일자: 2021. 9.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개선 이후 진료비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액 외래의 이용이 증가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7]처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제도 변화 이전인 2016~2017년에 진료비 1만 5천원 직전 구간으로 외래 수요가 집중되었으나, 제도 변화 이후 진료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 수요가 증가했음을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급여 적용이 제한적이었다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급여 횟수가 크게 증가한 일부 사례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각각양색일 수 있다. 급여 적용 확대로 인해 의학적 필요가 있었으나 비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료 수요를 건강보험 적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긍정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의 변화가 일부 불필요한 의료 수

김우현(2021)은 「한국의료패널」 2012~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표 7>의 제도 개선 이후 진료비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액 외래의 이용이 증가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7]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모든 의료 이용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요인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의료 서비스별
미시적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 추계 및
수입·지출의 거시적인
모니터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를 견인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를 건별로 의학적인 필요가 있었는가의 기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나, 의료 행위 자체의 불확실성, 진료의사와 심사평가 대상자의 정보의 비대칭, 심사 체계의 정비 필요와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심사 평가는 완벽할 수 없다.

다행히 의료 행위의 정밀한 기록 혹은 대용량의 청구자료 확보 시, 경제적·통계적으로 모형화하여 의학적으로 적합한 의료 이용과 그렇지 않은 의료 이용을 구분해내는 연구들이 일부 소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Abaluck et al., 2016; Mullainathan and Obermeyer, 2019).

국내에서도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연구 성과가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이용량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 기관 경향 심사(혹은 분석심사) 평가 체계 설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양상이 세부 의료 서비스의 성격과 대상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를 모니터링할 때, 의료 서비스의 특징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의료이용 증가이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의 증가이든, 모든 의료 이용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요인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선 의료 서비스별 미시적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 추계 및 수입·지출의 거시적인 모니터링 또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난 노력들과, 특히 현 정부의 초기 2년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정에서 관찰되는 결과들을 몇몇 집계자료와 미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전체적인 보장률 제고 효과는 2019년까지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2023년까지 목표 보장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중증질환/고액진료 중심으로 과거의 보장률 개선을 관찰했으며, 지출 측면의 재분배 효과도 일부 확인했다. 비급여의 급여체계 편입을 통

해 비급여 서비스 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실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급여 서비스 이용의 변화가 의료 서비스의 특징 및 대상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관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실효적인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정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둘러싼 정책적 고민이다. 목표 보장률은 세부적인 하부 정책 과제들이 달성되었을 때 모든 효과를 종합해서 산출된 정책 결과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근거가 외부와 전문가 집단에 공유되는 편이 안전하다. 정책 목표 설계 및 근거 공유에 기반하여, 이번처럼 목표 보장률 70%의 달성이 2023년까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제시될 경우, 이것이 급여 서비스의 본인부담이 충분히 경감되지 않았거나, 비급여의 풍선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거나, 높은 본인부담의 예비급여 편입 항목들의 의료 수요가 예측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목표 보장률이 미달성되는 결과에 반복적으로 직면하며, 그 원인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 환경은 현실적으로는 이해되지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덧붙여, 정책 추진에는 목표 보장률 70%와 같이 이해가 쉽고 직관적인 정책 목표가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보장률은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정형선, 2020). 다양한 성격의 의료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가구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하나의 평균적인 수치로 제시한 보장률 지표가 의료비 부담의 다양한 측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목표 보장률의 70% 미달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도 4대 중증질환, 고액 진료의 보장률은 80%에 도달하고 있으며, 소득 분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의 재분배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의 병행 보장률 지표 개발 및 보험수혜자인 국민과의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기본 보장률 지표 외 주요 정책 대상 집단별, 영역별 병행 보장률을 산출하고 공유하는 보장성 정책 지표의 다양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남규, 2020).

**건강보험의 실효적인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정운용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둘러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목표 보장률은
하부정책 과제 달성 시의
모든 효과를 종합한
정책 결과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근거가 외부와 전문가
집단에 공유되는 편이
안전하다.**

**전체 경제규모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재정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재정운용의
위험요소는 확정적이다.
예산 제약에 대한
자각과, 우선 순위
근거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의 의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에서 비급여의 급여체제로의 전면적 편입은 결코 만만한 정책 과제가 아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식별하고 이를 예비급여 체계에 편입하여 일정 기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후, 해당 의료 서비스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여 급여체제로의 편입 여부를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통제의 미시적인 접근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검증하며, 의료 서비스 간 상대적 유효성·경제성을 대조해야 하는 등 많은 정책 자원이 소요될 것이다. 끊임없이 도입되는 신의료기술과 함께 임상 현장의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이와 같은 평가와 검증의 작업도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랜 기간 보장성 강화 기초를 유지하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제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한국의 실질 GDP는 연평균 약 2.94% 상승했지만(한국은행 국민소득 기준, <표 6>과 같이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8.08%,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8.31% 증가했다(2010~2019년). 전체 경제규모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재정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재정운용의 위험요소는 확정적이다. 따라서, 예산 제약에 대한 자각과 함께 우선 순위 근거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희정,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25호, 2018, pp. 23~37.
 국민건강보험 건강정책연구원,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0.
 권용진·차영미·한명직·주정민·정호주·강선실, 『예비급여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2020.
 김계현·이정찬·김한나, 「노인 대상 외래진료 본인부담제도의 개선방안」,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2014, pp. 435~456.

- 김우현, 「고령층 외래 진료 본인부담 제도 변화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2021, pp. 95~120.
- 김우현, 이은경, 김대환, 김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4대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윤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추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20, pp. 117~145.
- 보건복지부, 「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원 의료비 혜택받았다」, 보도자료, 2021. 8. 12.
- 서남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시사점」, 『건강보험 ISSUE&VIEW』, 제25호, 202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2020.
- 신정우·정형선,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조의 국제 비교」, 『보건복지포럼』, 제229권, 2015, pp. 74~81.
- 여나금,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 『보건복지포럼』, 제289권, 2020, pp. 23~37.
- 정형선, 「건강보험보장률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 『HIRA 정책동향』, 제14권 제6호, 2020, pp. 23~29.
- 참여연대, 「[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2021. 8. 12.,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13119>, 검색일자: 2021. 9. 2.)
- Abaluck, J., Agha, L., Kabrhel, C., Raja, A., and Venkatesh, A., “The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in medical testing: Intensity and allocation of care,” *American Economic Review*, 106(12), 2016, pp. 3730~3764.
- Jang, M. J. and Park, S. J., “A new health care policy in Korea part 2: expansion of coverag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e abdominal ultrasound and MR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81(5), 2020, pp. 1069~1082.
- Mullainathan, S. and Obermeyer, Z., “A machine learning approach to low-value health care: wasted tests, missed heart attacks and mis-predictions,” NBER Working Paper(w26168), 2019.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ands@kipf.re.kr)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던 위기에 세계 경제는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이 절실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인 역할 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근본적인 변화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ESG의 적극적인 실현이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에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국제적으로 ESG 경영이 급박하고 그 범위가 방대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경제 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ESG가 도입되고 정착하는 데도 공공기관의 추진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ESG를 더욱 고려하게 되었다(OECD, 2020). 이렇듯 ESG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 운영에 ESG를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K-ESG 평가지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관련 지표에 관한 정보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들도 ESG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ESG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공유되지 않고 ESG의 평가나 추진전략에 대한 준비가 갖춰지지 못해 어려

음을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정의, 도입 현황,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 개념, 평가지표, 도입 사례 등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ESG가 논의되기 이전 유사 개념이 국제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을 통해 ESG 도입의 배경과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고에서 살펴보는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G 도입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ESG 경영의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온 말로,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거래소, 2021). 기업을 경영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근거로 금전적 이익 가능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오랜 기간 진행되었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ESG를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ESG는 지속가능성이 다루는 광범위한 이슈 중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연관성 없어 보이는 각 항목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기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하였던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달라진 관점으로 인해 기업의 ESG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김재필, 2021). 소비자의 다양화된 시각과 태도가 강조되고 있으나, ESG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폭넓은 지속가능성과 맥락이 동일하면서도 기업에 그간 요구해 왔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 지속가능성과 ESG

고객, 직원,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이 점차 강조되고,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로 이어진다. 지속가능

본고에서는 ESG 관련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G 도입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SG를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제고된다는 점에서,
ESG와 지속가능성은
효과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성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 측면에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통해 확산된 개념이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개념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자연자원 및 부존자원에 대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공평한 활용, 경제발전과 환경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담론을 의미하였다.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ESG는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 ESG에서 중시하는 안전과 환경기준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여긴다.

국제기구에서도 지속가능경영 규범을 개발하여 그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규범들이 투자운용사들의 투자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1995년 세계지속가능발전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¹⁾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04).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각 경제 주체가 사회적 책임, 생태적 효율성, 혁신과 기술을 병행, 생태계 관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경쟁적인 시장 조성, 위험관리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구해 왔다(현대경제연구원, 2004). 국내에서도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법」과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산업계에서는 WBCSD의 협력기구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를 구성하여 국내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국제적 수준으로 실제 경영에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SG를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제고된다는 점에서, ESG와 지속가능성은 효과 측면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단, ESG는 지속가능경영에서 강조하는 세대 간의 공평성에 대한 전제 없이,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비재무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

2.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ESG는 한동안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와도 유사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청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업의 봉사활동

1) 세계지속가능발전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는 1995년에 지속가능기업협의회(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세계환경보호산업협의회(World Industry Council for the Environment)가 통합되어 출범하였다.

동 등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다. OECD는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고, EU는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사회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그 사업활동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주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이은선·최유경, 2021). 다양한 정의를 표준화하여 국제표준협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범, 표준,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ISO 26000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국제표준화는 국제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 평가를 통해 기업의 수준을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단과 경영전략 수립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국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현 정부에서 더욱 확장되었으며,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에 비하여 ESG는 자본시장 중심의 시각이나 투자자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으로, 투자 자체를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ESG의 유사 개념 비교

구분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ESG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비재무적 요소
목적	기업의 책임이 주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관계된 이해관계자까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기업의 부가 활동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기업의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전략
관점	기업의 이해관계자	투자자, 일반 국민	투자자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CSR의 개념이 다층적 차원에서 논의되나, 현실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다수 국내: CSR을 기업의 고유 목적사업과 별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측정 방안이 발달 국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큰 이슈가 아니며 관련 연구도 풍부함 국내: ESG가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구현은 기업의 수익 추구 활동과 무관한 경우가 많음 보고양식: GRI 실행지침: ISO 2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며 제도에 반영하고자 함 공공기관 대상으로 경영 평가의 지표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지표를 수립, 평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 평가기관이 존재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논의

출처: 이은선·최유경(2021); 김재필(2021); 김보미(2019); 나석권(2021)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ESG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편이며, 주로 ESG 경영과 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 ESG 경영의 평가 결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일관적으로 이어졌다.

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참여, 공동체’ 등 13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조직과 제도가 시민의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그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규범적이며 실천적인 가치로 볼 수 있다(사회적가치연구원, 2019).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바’라고 정의하고 있다(허경선·한동숙·김봉환, 2020). 사회적 가치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가치와 성과가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는 ESG와 상호배타적이기보다는 일정 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몇몇 요소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부터 요구받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념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이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ESG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입장에서는 하면 좋은 활동으로 생각되지만,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관에 투자를 하는 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더 필수적인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 기존 논의에 비하여 ESG는 자본시장 중심의 시각이나 투자자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으로, 투자 자체를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방향으로 하도록 전환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ESG 관련 선행연구

ESG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편이며, 주로 ESG 경영과 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ESG 경영의 평가 결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일관적으로 이어졌다. 장승욱·김용현(2013)은 서스틴베스트의 ESG 등급 정보를 활용하여 ESG 평가등급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37개 기업의 4년간 재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들에 비해 주식수익률, 영업성과, 기업가치가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정은·김진섭(2013)은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

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과 2011년의 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ESG 평가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ESG 평가모형의 ESG 평가지수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평가지수(GOVE), 사회평가지수(SOC), 환경평가지수(ENVI)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ESG 평가지수와 개별평가지수 모두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옥(2016)은 975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정보 및 경영자의 이익관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책임투자지수와 환경책임투자지수, 지배구조책임투자지수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은정·이유경(2021)은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주식시장에 ESG 경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업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도 안정적인 주가를 보여주는지를 점검해보았다. 분석 결과, 위기 상황에서는 ESG 경영이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위기 상황 전인 정상 기간에는 ESG 등급이 기업의 주가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상희(2021)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2011~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신용등급과 ESG 등급 중 기업가치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신용등급은 NICE 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을 활용하였고, ESG 등급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등급과 ESG 등급 모두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신용등급이 ESG 등급보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도 나영·임옥빈(2011)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57개를 선정하여 ESG 정보의 공시효과가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ESG 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ESG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기업보다 기업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SG 정보가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ESG 정보가 공시된 이후 초과수익률과 누적초과수익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ESG 정보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지 제고 또는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나영·임옥빈(2011)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기업을 분석하여, ESG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기업보다 기업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ESG 정보가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UN과 OECD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규범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정착되는 등, ESG와 유사한 개념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국제기구·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ESG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ESG 평가등급이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ESG 평가 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수록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ESG 경영이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G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SG 경영이 공공기관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III. ESG 경영의 도입 현황

1. 국외 현황

ESG와 유사한 개념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국제기구·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UN과 OECD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규범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정착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가이드라인으로는

<표 2> UN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1.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적극 반영한다.
2. 투자정책과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 투자 대상에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투자하는 산업에서 사회적 책임투자원칙이 수용되고,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5.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사항을 공개한다.

출처: PRI, "What a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pri/what-are-the-principles-for-responsible-investment>, 검색일자: 2021. 9. 10.

1976년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활동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때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언급하였고, 고용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보건 측면에서 각 국가에 규범이 되는 준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한 것이 정확히 지켜지는지 실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2004년 UN에서 발간한 UN Global Compact에서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부패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 여섯 가지 사회책임 투자 원칙을 공

2004년 UN에서
발표한 사회책임
투자 원칙을 통해
ESG의 이슈의 반영,
정보공개 등이
구체화되면서 ESG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었다.

<표 3>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증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출처: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17개 목표와 현황」, <http://ncsd.go.kr/unsdgs?content=2>, 검색일자: 2021. 9. 10.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2020년 ESG 사업 전략을 채택하지 않는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를 줄이겠다는 연례 서한을 보내며 ESG 경영 요구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했다.

표하였는데, 사회적책임투자원칙을 통해 ESG의 이슈의 반영, 정보공개 등이 구체화 되면서 ESG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창출 능력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었다(김재필, 2021).

국제기구 UNEP 산하 단체인 GRI(글로벌 리포팅 구상, 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2000년부터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프레임 워크로 활용하고 있다. GRI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비정부기구와 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지표를 비교하기가 힘들고 기업 간 수준 차이로 인해 활용상 한계가 있다.

국제규범이 고도화되면서 2015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이 개발되고 경제적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로드맵으로 제시되었다. 이 17개 목표는 2015년 당시 2016~2030년 향후 15년간 각국의 정부가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를 위해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하여야 할 사항을 도출한 것이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하였다. 다만, 지속가능한 목표는 폭넓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수단이 ESG라고도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의, 2020년 ESG 사업 전략을 채택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줄이겠다는 연례 서한으로, 국제적인 규범을 통한 확산뿐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ESG 경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블랙록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배에 달하는 9조달러의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 화학 등 국내 대표 기업의 3대 주주로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에, 블랙록 회장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자본시장에 ESG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계기로 이어졌다.²⁾ 미국 신용평가사이면서 전 세계의 기업과 국가의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무디스, 피치, S&P 3대 신용평가사 모두 ESG의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하여 신용등급평가에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경우에는 1조달러의 ESG 펀드를 조성하여 ESG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각 국가의 초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속가능경영 요구에 대응하였다.

개별 기업의 사례를 통해 ESG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엑손모빌(Exxon Mobil)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시가 총액 1위

2) 『이코노미조선』, 「ESG 펀드(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금액 1년 새 400% 폭풍 성장」, 2020. 4. 20.,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8769, 검색일자: 2021. 9. 4.

를 기록했던 석유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고수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의 노력이 없어 위기 극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다우존스 산업지수에서 퇴출되었다.³⁾ 이러한 에너지 부문의 변화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의 비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다른 초국적 기업인 애플 역시 기업운영 영역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하면서 협력사에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등 ESG를 그들의 운영방식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기획재정부, 2021. 8. 26.).

EU의 지침에 따라 유럽지역 기업들도 ESG의 정보 공유를 위해 2018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사회·노동·인권·반부패에 관한 정보공시를 하게 되었다(대한상공회의소, 2021). 유럽연합 국가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매업체도 협력업체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유럽 외 국가의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다. 특정 정책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평가 및 공시를 함으로써 시장에서는 ESG 도입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민간 투자시장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제1호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기후변화의 물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신재생 에너지 성장을 경제 부양책으로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뒤를 이어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금융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 손실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The White House, 2021). 또한, 미국 정부는 인종 형평성 추구, 노동조합 지지, 최저임금 상향, 작업장 안전 이슈들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하여 환경뿐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 이슈에 힘을 신게 되었다. 친환경 정책에 대해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에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하였다(『이코노미크리뷰』, 2021). 구체적으로 저탄소 인프라와 친환경 연구개발(R&D)을 위한 공공 자금을 제공하고, 목표 환경 규제 시행 및 기후 정책의 목표를 공유하여, 기업은 넷-제로 탄소경제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축하고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는 역할을 요구하였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자본을 넷-제로 탄소경제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행정부와 차별화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제1호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올해 들어 민간
투자시장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3) NPR, "Exxon Mobil Exits: The Dow Drops Its Oldest Member," <https://www.npr.org/2020/08/25/905818004/exxon-mobil-exits-the-dow-drops-its-oldest-member>, 검색일자: 2021. 9. 12.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본 후생연금펀드는
일본경제 전체의 성과
향상을 위해 기업에
ESG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투자 기금을
운영하였다.

을지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도록 정책을 제안하였다.

국가별로는 연기금 운용 측면에서도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시작하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경우에는 인권침해·환경파괴·부패 등의 행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에서 배제하기로 하였고,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역시 UN 사회책임투자원칙의 주체로서 기업의 화석연료 투자 철회, 인권리스크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본 후생연금펀드는 일본 경제 전체의 성과 향상을 위해 기업에 ESG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투자 기금을 운영하였다. 특히,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외이사 활용, 투자자의 주주 권리 행사를 권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출산율, 일과 직장의 병행을 도모하여 경제성장까지 이어질 전략을 채택하였다(레베카 헨더슨, 2021).

2. 국내 현황

우리나라의 ESG 공시와 평가에 대한 준비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2020년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제임을 선언하고, 2021년에는 이에 관한 장기전략 공개 요구와 양질의 ESG 정보공시를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정책결정자와 규제를 하는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저축과 자산을 관리할 때 일관적이고, 비교 가능하며, 믿을 만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입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기업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대규모(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기업에서부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화된 목표 및 ESG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 전사적인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대기업을 선두로 SK그룹, 삼성그룹, 현대나 기아차에서 ESG 경영을 새로운 규칙으로 여기고 자원순환, 전기·수소차 중심의 성장 등 구체화된 경영원칙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ESG 관련 펀드를 활발히 발행하고 있다.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 특수 목적 발행 채권의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아시아 지역에서 ESG 채권 발행 실적이 1위로 나타났다(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ESG 펀드는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주택저당증권),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 공기업과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사회적 채권 발행하고 있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04개 종류의 사회적 채권 순자산 규모는 7조 5천억원 수준이다(서스틴베스트, 2021). 이 펀드들은 ESG 점수가 높을수록 2021년 6개월간 초과수익률(KODEX200 대비 초과수익률)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서스틴베스트, 2021). 그 밖에도 금융권 탈석탄 선언을 통해 민간 금융사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국내외 석탄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에는 대출과 채권 인수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스튜어드십(stewardship Code)을 개정하여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투자 이행 전 ESG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건설사 등 SOC 분야에서도 친환경 건설로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친환경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온실가스과 에너지 감축의 계획을 실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다. 사업 내용의 경우에도 태양광, 배터리 재활용, 조립식 주택 사업 등 '친환경' 신사업을 개발하여 확장시키고 있다(『이코노미리뷰』, 2021). 사업의 추진방식에서도 자재, 폐기물 처리 등에 친환경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발전 부문의 가장 큰 이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배출권 리스크 관리도 시행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한 '탄소세' 도입도 논의되어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상 풍력발전의 사업 고도화, 수소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ESG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판 뉴딜 등 ESG 관련 정책을 도입하는 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대폭 확대하였다(기획재정부, 2013. 3. 4.). 기존의 공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아시아 지역에서 ESG 채권 발행 실적이 1위로 나타나는 등 최근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ESG 관련 펀드를 활발히 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대폭
확대하며 공공기관이
ESG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하고 있다.

시 내용에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하여 가족돌봄휴가·휴직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추가하였다. 둘째, 2021년부터 추진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따라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신설하여 환경보호 노력도 공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율공시 항목이었던 봉사 실적을 사회공헌활동 항목으로 신설하여 봉사활동 실적과 기부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계약정보에서 혁신조달 구매 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하였다.

공공기관의 우선적인 목적은 공공성의 실현이지만 그러면서도 수익성과 효율성까지 요구받고 있다.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시되는 가치가 다양화되고 글로벌화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기존 사업의 경제성이 강조되던 관리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로 전환되었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등의 정책수단으로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구심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폭넓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자발적 관리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ESG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한국거래소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정책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해외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경영 참여 및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3대 연금금이 책임투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국거래소, 2021). 한국남동발전의 경우에도 친환경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한 선도적인 기업으로 해상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의 개발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발전폐기물도 100%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권경영을 협력업체와 자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등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확산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먹거리를 활용한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로컬푸드 발굴 등으로 ESG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ESG 추진위원회 설립, ESG 경영선언, ESG 추진전략 수립 등 기관 경영전략과 ESG 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전KDN,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ESG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

<표 4> 공공기관 통합공시 중 ESG 공시 확대 부분

기존(2020. 12. 8.)		변경(2021. 2. 26.)	
15.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등 운영 현황 및 사용자 수 출산·배우자출산 휴가 운영 현황 및 사용자 수 유산·사산휴가 등 운영 현황 및 사용자 수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운영 현황 및 사용자 수 	16.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등 운영 현황 및 사용자 수 출산·배우자출산 휴가 운영 현황 및 사용자 수 유산·사산휴가 등 운영 현황 및 사용자 수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운영 현황 및 사용자 수 유연근무 현황: 유연근무 성별 실시 인원 수 가족돌봄휴가 현황 및 사용자 수 가족돌봄휴직 현황 및 사용자 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41. 안전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현황 안전관리 책임자 	17. 안전관리 및 환경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42. 기타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활동 및 기관 운영 관련, 공개 필요사항 	18. 사회공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활동 실적 기부 실적(액수, 대상물, 주요 내용, 상세내역)
39. 계약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정보 	40. 계약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정보 혁신조달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주: 밑줄 친 부분은 개정된 공시 기준에 추가된 내용임
출처: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012. 8. 개정),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021. 2. 26. 개정)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고 있다. ESG라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고 있다.

ESG 경영은 공공기관이 미래 성장, 재무적 성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SG 투자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성과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식별해 위험조정 수익률을 개선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측면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재무 연관성이 있는 ESG 항목으로 평가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 더욱 폭 넓은 범위의 고객, 수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ESG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한국거래소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정책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들은 ESG라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 기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한 ESG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고 있다.

<표 5> 공공기관 ESG 추진전략

구분	한전KDN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비전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ICT기술, 신뢰받는 한전 KDN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무역·투자·금융 파트너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	
전략 방향 및 전략 과제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을 통한 환경 책임 경영 이행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기준 준수 저탄소 업무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어촌 분야의 탄소중립 선도 그린에너지 탄소저감 녹색 생태계 구축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공감 포용·안전사회 구축 ICT 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 및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ICT전문 역량 기반 안전·보안 강화 전력공급 안정화로 국민편익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상생협력·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재난·안전 및 정보 보안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농어촌 희망 만들기 활력 올리기 안전지킴이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 청렴·윤리 가치 확산 지배구조 건전성 확립 이해관계자 소통 기반 ESG운영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중심으로 준비·투명 경영 확립 ESG 경영 체계 구축 윤리·준법 경영 공정·투명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과 함께 공영의 가치 실현 참여 투명 청렴

출처: 한전KDN 홈페이지, <https://www.kdn.com/menu.kdn?mid=a10901010100>;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company/esg_management01.do;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s://www.ekr.or.kr/homepage/cms/index.krc?MENU_MST_ID=21759, 검색일자: 2021. 11. 1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익자의 투자수익 극대화를 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한다. 즉,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착한 행위’를 추구한다기보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방위적인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재필, 2021). 그러나 아직 공공부문에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ESG 경영방식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점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6> 무디스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

등급		선진국	신흥국	총계
CIS-1	긍정적 (Positive)	한국,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맨섬, 오스트리아 (11개국)	-	11개국
CIS-2	중립적 (Neutral-to-Low)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홍콩 등 (20개국)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버뮤다, 불가리아,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10개국)	30개국
CIS-3	다소 부정적 (Moderately Negative)	일본, 그리스, 몰타,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6개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칠레, 쿠웨이트, 태국 등 (32개국)	38개국
CIS-4	부정적 (Highly Negative)	-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스리랑카, 이집트, 인도, 캄보디아, 쿠바, 터키 등 (45개국)	45개국
CIS-5	매우 부정적 (Very Highly Negative)	-	라오스, 레바논,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이라크, 잠비아 등(20개국)	20개국
		37개국	107개국	144개국

출처: 기획재정부, 「무디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1. 19.

IV. ESG 평가체계

지난 1월 1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 세계 144개 국가에 대한 ESG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ESG에 대한 국제 기준을 고도화하였다. 기업 평가를 넘어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에도 ESG가 주요 요소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무디스의 ESG 국가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는 신용영향점수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으나, 세부평가에서는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 2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무디스의 긍정적인 평가에 우리의 방향이 맞다는 긍정적인 확인을 거두고 지속적으로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려고 한다.

ESG 경영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평가의 과정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현재 평가의 지표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상의 자체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활용되는 주요 평가지표인 모건스탠리의 MSCI의 경우에는 ESG에 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전 세계 144개 국가에 대한 ESG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ESG에 대한 국제 기준을 고도화하였다.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K-ESG 지표와 주요 ESG 평가항목 간에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정부가 가이드로 제시하는 평가항목은 공통적인 지표를 담는 것이 적절하다.

른 기회와 위험요인, 사회적 비용 발생을 ESG 팩터로 구분하여 투자수익으로 연결 짓는다(김재필, 20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ESG 평가는 2003년 G(지배구조)부문 평가로 시작되어 2011년 ESG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김재필, 2021).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전년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전체, 코스닥시장(KOSDAQ) 상장기업 중 일부, 그리고 기관투자자 등 외부에서 평가를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평가지표는 총 95개(E 34개, S 44개, G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S와 G는 산업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지표를 적용했으며 E는 업종에 따라 지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환경 이슈가 중요한 발전 업종에서는 E의 34개 지표를 모두 활용했지만 금융(20개), 행정서비스(28개) 등 특정 업종에서는 변별력이 낮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중치도 업종별로 차이를 두었는데, 그 예로 발전은 E, S, G 가중치 비율이 40 대 40 대 20인 반면, 행정서비스는 30 대 48 대 22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오염물질 누출, 부정부패 등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지도 미디어 등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기관은 감점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 톱슨 로이터사의 레피니티브 평가항목에서도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하여 성과와 노력, 효과성을 평가하며 산업별로 환경과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전체 산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표 7>을 살펴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안으로 제시한 K-ESG 지표와 주요 ESG 평가항목 간에 다양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평가 주체에 따라 살펴보는 항목이나 비중이 다를 수 있으나 정부가 가이드로 제시하는 평가항목은 공통적인 지표를 담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한국의 특성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올해 민간에 권고하는 지표안을 발표하고, 각계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표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내외의 공통 지표를 도출하고,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하며 더불어 업계가 평가에 대응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국내외에서 ESG 지표만 600여개가 난립하면서, 이를 준수하려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영향력 있는 평가기관의 지표에 기업들이 갖는 부담

<표 7> 주요 ESG 평가와 K-ESG 지표(안) 간의 차이

구분	무디스 (국가별 ESG 평가보고서)	MSCI (글로벌 1위 업체)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샘플보고서 기준)	레피니티브 (구 톰슨 로이터)	K-ESG (산업자원부)	
평가 항목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 및 폐기물 환경적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사용 배출 (emissions) 제품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성과 환경경영 검증 환경 법규 준수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노동및소득 교육 주거 보건및안전 기본서비스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본 제조물책임 주주의 항의(논쟁) 사회적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협력사/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인권 사회 제조물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책임 경영정책 임직원 다양성 등 인적자원 관리 (교육, 역량개발) 근로환경 인권정책 등 협력사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정보보호 사회부문 법규 준수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구조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지배구조 기업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 권리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management) 이해관계자 CSR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다양성, 활동 등 주주 권리, 배당 등 소유구조 윤리경영 및 반부패 감사 지배구조 법규준수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2021); 한국거래소(2021); 산업통상자원부(2021. 4. 21.)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현재 국내외에서 ESG 지표만 600여개가 난립하면서 이를 준수하려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평가별로 등급 차이도 커 신뢰도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어난다.

이 크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평가별로 등급 차이도 커서 신뢰도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어난다. 국내에 한정해서도 평가체계는 표준화된 등급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등 20여개의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기업과 산하기관의 ESG 평가방식이 상이해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으며, 실제로 데이터 확보 및 정확한 분석을 위해 평가기관들의 인수합병도 활발히 일어난다. 평가별 차이에 대해 다른 MEMO 보고서에서는 모건스탠리 보고서, 레피니티브(Refinitiv, 구 톰슨 로이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원 간에 평균 1.4단계부터 최대 5단계까지 격차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장윤제(2021)는 국내 ESG 평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더불어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를 마련하여 ESG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8>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권고 지표

구분	항목	비고
환경	온실가스 배출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에너지 사용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매립, 재활용 등 처리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사회 부문	임직원 현황	임직원의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현황, 청년인턴 활용, 육아휴직 활용
	안전·보건	산업재해, 제품 안전(리콜 건수나 조치),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한 규제 건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거버넌스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방식

출처: 한국거래소(2021), pp. 30~31.

가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ESG 평가등급 또는 정보를 활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 모범 규정을 마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점검 결과의 피드백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ESG 평가기관의 정의 명확화, ESG 평가방법론과 내부 통제 방안 정보의 공시 등을 ESG 평가기관의 규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평가뿐 아니라 공시제도에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더불어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를 마련하여 ESG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SG 정보공시에 대한 의무화가 국제적으로도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정보공개를 권고하는 내용은 환경부문 5개 항목, 사회부문 4개 항목, 거버넌스 부문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8> 참조).

그러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시항목은 기존 경영에 관한 공시를 활용하는 가운데 몇 개의 지표 신설 및 보완의 방식을 택하였고, 지표 간

의 공통점도 부족한 편이다. 신설한 지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안전 및 환경 부문에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사회공헌 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의 요소이다. 아직 ESG의 공공부문 평가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나, 공시제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틀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 및 평가지표는 한 눈에 보아도 국제적으로나 민간기업에 요구되는 수준에 비하여 몇몇 요소로 제한적이다. 민간에서는 ESG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지표가 되므로 정량화, 계량화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책임 등의 개념보다는 발전한 측면이 있으며, 공공부문도 민간의 ESG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공공부문으로부터 ESG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SG 도입이 초국가적 대기업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ESG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한 과제이다.

V.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우리나라는 시장실패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시장의 경제주체들 간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ESG 도입이 초국가적 대기업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ESG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한 과제이다.

1. 공시제도 및 평가제도의 체계화

평가지표 및 관리체계 구축은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체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ESG 가이드라인도 국제수준에 맞추면서도 한국형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표준화를 위한 과정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ESG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평가 지표(K-ESG)를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지표는 ① 민간 주도하의 필요 최소한의 평가 기준으로 구성된 기본 지표, ②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혁신지표 등 2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민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데 반해,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ESG 분야별로 세부 항목을 예시로 들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바

공공기관은
 개별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ESG 경영의
 내재화, 주요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편, ESG 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ESG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다.

는 ESG의 도입에 앞서서, 민간과 협력,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공시 및 경영평가 제도화는 지엽적이고 기존 지표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활용하는 지표와 같이 종합적인 공시항목과 평가항목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지표를 보면, 기존에 활용하던 제한적인 지표를 유지하거나 몇 개의 지표를 추가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반영한 민간이나 국제부문에서 활용되는 지표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존재한다.

2. 공공기관의 대응역량 제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크게 세 차원으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다. 개별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ESG 경영의 내재화, 주요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편, ESG 성과의 지속적인 관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주요 사업 재편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위해 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구체화된 정책 집행의 주체가 될 것이다. 기업의 경우 친환경·안전강화형 사업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사업의 예로 자동차·배터리 등 산업에서 환경·안전 연대·협력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중이고, 자동차업계에서는 협력업체 사업장별 용수 재활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을 지원하고, 배터리 제품 제조 시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ESG 항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평가에 단기적인 지표로 기업들의 행태를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과 평가 관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특히 취약한 측면 중에 하나는 지배구조의 폐쇄성과 경직성이다. 내부 직원들의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관한 공개와 합리적인 절차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거버넌스의 재설계와 같은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이 이를 문화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 목적 수립과 이에 대한 시차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관이 이렇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3. 인프라와 인센티브 구축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ESG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현실적인 경영에 도입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인프라 성격의 ESG 경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공시나 평가의 가이드라인 개발에 표준화를 강화하고 이러한 제도 확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별 공공기관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내·외부적으로 인력과 조직 역량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에는 산업별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대대적인 사업 재편 등을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컨설팅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친환경·안전강화형 사업재편을 인정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의 협력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ESG 도입 초기 단계인 것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ESG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표창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성과를 중심으로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확산하기 위해 업종별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한국형 ESG 평가모델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국내 첫 공공부문 ESG 평가로 업종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였고, 기관이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공기업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함께 개발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소속 업종을 나누었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GICS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자체적 기준에 따라 발전, 전력망, 가스망, 물공급, 금융, 행정서비스 등으로 업종을 구분하였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부문 지표와 관련한 기본 가중치는 30 대 50 대 20으로 다른 글로벌 평가기관에 비해 G의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인데, 이는 공공부문의 지배구조는 법률과 상급 부서의 지침 등을 통해 관리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경영대상 사례를 민간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SG 개념을 체계화하고 현실적인 경영에 도입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인프라 성격의 ESG 경영 토대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은 ESG 도입이 소비자
와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이며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표 9> 경영대상 선정 기준

부문	중분류	세부지표
환경(E)	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질소산화물 배출량, 황산화물 배출량 등
	자원 사용	총 에너지 소비량, 총 취수량,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 관련 활동	환경 관련 연구개발 비용, 친환경 인증마크 보유 여부 등
	ESG 관련 자산	ESG 자산 비중
사회(S)	환경적 논란	화학물질, 유독가스 유출 및 누출 관련 사건 사고 사례
	직원과 공급망	보건 및 안전보장 여부, 여성직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등
	제품 책임	고객만족도, 품질관리 등
	인권	인권 기준 적용,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배제
	지역사회	봉사시간, 기부금액, 청렴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배 구조(G)	사회적 논란	차별, 파업, 부상, 개인정보유출 등 사건·사고
	이사회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감사위원회 유무
	지속가능경영과 보상	CSR위원회 존재, 회사 내규 공개 여부
	지배구조 논란	회계·세무, 거래, 부정부패, 이사회 관련 사건·사고 등


출처: 『환경 ESG』, 『국내 첫 공공부문 ESG 평가...업종별로 가중치 차등 적용』 『한국 경제』, 2021. 6. 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_061064751, 검색일자: 2021. 9. 20

VI. 결론

국제기구, 언론,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ESG 경영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무관심하거나 ESG 경영을 도입할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ESG 경영이 추진하는 중장기적 방향을 고려했을 때,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재를 계속하기 위해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것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ESG 지표 관리 성과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ESG 도입이 자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그간의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에서와 다르게 ESG의 관리는 재무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evelli and Viviani, 2015).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도 산업별 정보

공개 표준을 개발하여 보다 유용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평가분석을 시행하였고, 이 기준 역시 장기적 재무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Khan et al., 2015). 다수의 실증연구가 ESG 성과가 기업의 가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SG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도 정보공시 수준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 ESG 경영의 정보공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Fatemi et al., 2018).

ESG 경영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도 기관의 신뢰성, 국가의 신뢰도 평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ESG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입장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 전체에 ESG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의 동참을 요구하였던 그간의 측면을 넘어, ESG가 기업 입장에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연결되고 기업이 국제적인 기준이 정립된 ESG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ESG 공시 및 평가지표가 보다 표준화되어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무디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1. 19.
- _____,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대폭 확대한다」, 보도자료, 2021. 3. 4.
- _____,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1. 8. 26.
- 김보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1), 2019, pp. 3-39.
-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한스미디어, 2021.
- 나석권, 「ESG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 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 나영, 「ESG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2011, pp. 439-467.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3호, 2021.
- 리베카 헨더슨, 『자본주의 대전환: 하버드 ESG 경영수업』, 어크로스, 2021.

정부가 제시하는 ESG 공시 및 평가지표가 보다 표준화되어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것을 기대한다.

-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 가치와 공공가치에 관한 연구」, 2019.
- _____, 『ESG Handbook Basic』, 2021.
- 산업자원부,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경영 추진 지원」, 보도자료, 2020. 12. 8.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한국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보도자료, 2021. 4. 21.
- 서스틴베스트, 『2021년 2분기 ESG펀드 보고서』, 2021.
- 오상희, 「신용등급 및 ESG 등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 연구』, 제69권, 2021, pp. 125~144.
- 이은선·최유경,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1-19-4, 2021.
- 이은정·이유경, 「ESG 경영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COVID-19 확산에 따른 위기기간을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35권 제3호, 2021, pp. 63~91.
- 이정은·김진섭, 「기업지배구조, 사회 및 환경평가지수와 기업가치의 관련성 분석」, 『회계연구』, 제18권 제4호, 2013, pp. 81~99.
- 『이코노미조선』, 「‘ESG 펀드 <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금액 1년 새 400% 폭풍 성장」, 2020. 4. 20.,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8769, 검색일자: 2021. 9. 4.
- 『이코노믹리뷰』, 「[ESG탐구영역②] 美 바이든 정부 출범에 더 뜨거워진 ESG」,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232>, 검색일자: 2021. 9. 20.
- 임종욱, 「ESG 평가정보 및 이익관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1권 제1호, 2016, pp. 111~139.
- 장윤제, 「ESG 평가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규제 방향」, 『상사관례연구』, 제24권 제3호, pp. 423~472.
- 장승욱·김용현, 「기업의 ESG와 재무성과」, 『재정관리연구』, 제30권 제1호, 2013, pp. 131~152.
- 전국경제인연합회, 「ESG MEMO_국내외 ESG 평가 동향 및 시사점」, 2021.
- 『환경 ESG』, 「국내 첫 공공부문 ESG 평가…업종별로 가중치 차등 적용」, 『한국경제』, 2021. 6. 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1064751>, 검색일자: 2021. 9. 20.
-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2021.

허경선·한동숙·김봉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재무성과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현대경제연구원, 「지속가능경영의 도입 프레임워크」, 2004.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17개 목표와 현황」,
<http://ncsd.go.kr/unsdgs?content=2>, 검색일자: 2021. 9. 10.

Fatemi, A., Claum, M., and Kaiser, S., “ESG performance and firm value: The moderating role of disclosure,” *Global Finance Journal*, 38, 2018, pp. 45-64.

Khan, M., G. Serafeim, and A. Yoon, “Corporate Sustainability: First Evidence on Materiality,”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 15-073, March 2015.

NPR, “Exxon Mobil Exits: The Dow Drops Its Oldest Member,” <https://www.npr.org/2020/08/25/905818004/exxon-mobil-exits-the-dow-drops-its-oldest-member>, 검색일자: 2021. 9. 12.

PRI, “What a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pri/what-are-the-principles-for-responsible-investment>, 검색일자: 2021. 9. 10.

Revelli, C. and Viviani, J., “Financial Performance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What Have We Learned? A Meta-analysis,”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24(2), 2015, pp. 158-185.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홈페이지, <https://event.hankyung.com/seminar/esg2021/>, 검색일자: 2021. 9. 18.

한전KDN 홈페이지, <https://www.kdn.com/menu.kdn?mid=a10901010100>,
검색일자: 2021. 11. 17.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company/esg_management01.do, 검색일자: 2021. 11. 17.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s://www.ekr.or.kr/homepage/cms/index.krc?MENU_MST_ID=21759, 검색일자: 2021. 11. 17.



정책토론포트 |



-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 2021년도 제2차 PEMNA 예산분과 및 국고회계분과 웨비나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2021년 11월 12일 (금) 13:30 ~ 17:50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요

- 일 시 2021년 11월 12일(금) 13:30 ~ 17:50
- 장 소 온라인 회의
- 문 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세션	구분	성명
13:30~15:00	1세션	사회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I-1	복지와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발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지현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토론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2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 관계 종단연구	
		발표	이경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교수
토론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본 원고는 11월 12일(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시간	세션	구분	성명
13:30~15:00	I-3	고령자 가구의 자산효과 변화 연구	
		발표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김행중 세명대학교 도시경제부동산학과 교수
	I-4	가계부채의 유형화 및 이행의 확률과 영향요인	
		발표	박호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세션	사회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II-1	Analyzing Causal Effects of Political Attitudes on Welfare Preferences Using a Fixed Effect Model with Instrument Variable	
		발표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I-2	Estimation of Latent Preference for Desirable Tax Rate of Taxpayers	
		발표	김병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토론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I-3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의 결정요인 연구	
발표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토론		안중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이사	
II-4	탈빈곤 경험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		
	발표	민보람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박사과정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토론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15:00~15:10	휴식		
15:10~16:40	3세션	사회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II-1	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QUAID 모형을 이용하여	
		발표	이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II-2	Card or cash? Evidence regarding consumers' VAT compliance	
		발표	김영록 간사이대학교 박사후과정 연구원 만홍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토론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시간	세션	구분	성명
15:10~16:40	III-3	부모의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표	주현정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 센터장
		토론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II-4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비에 관한 연구 : 출생시기 코호트와 거주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표	손용진 부산노인건강센터 자문위원
		토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4세션	사회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V-1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구 유형별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발표	신상화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토론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V-2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한 노동공급효과 분석	
		발표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토론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V-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요인분해	
발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V-4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액이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	손혜림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고은비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토론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6:40~16:50	휴식		
16:50~17:50	5세션	사회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우수	부동산 조세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주택매각과 주택증여를 중심으로	
		발표	이석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장려	개인연금을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산정의 설계는 적절한가? : 기초연금의 개인연금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최재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장려	첫째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발표	김지형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주제발표 요약

I-1
주제

복지와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지현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소득, 자산이다. 소득 중에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있다. 복지는 현재 빠르게 증가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과거보다 훨씬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복지 확대 이외에 자산시장의 호황도 갈수록 소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자산시장이 호황일 때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은 가계로 하여금 부채를 내서 투자에 나서게 하는데 이것은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복지과 자산이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세대별로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이 대상이다. 재정패널조사 제9차(2015년 조사)~제13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4,296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부채 및 종사상 지위과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할 것이다.



토론 요약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상기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자산 및 부채, 그리고 부동산자산 가격의 변동이 일반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2010년대 말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와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전지출의 빠른 증가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해봄으로써 통계분석을 통해 정책성과를 검증·평가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방법론상으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정책 영향을 추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상기 논문은 제목과 본문에서 복지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이전소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논문은 공적이전소득과 자산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기본 회귀방정식은 소비함수이므로, 크게 보아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함수 회귀방정식에 대한 올바른 설정과 회귀분석 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소비함수는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소비지출을 피회귀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와 통제변수, 그리고 함수형태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기 논문에서는 소비함수를 공적이전소득 효과, 자산효과, 부채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명변수 조

합 패키지를 크게 세 개로 분류하고 각각의 설명변수 조합을 순차적으로 회귀변수로 설정하며, 이들 각각을 위의 세 가지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소비함수로 설정·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함수는 필요에 따라 함수형태나 설명변수 조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함수로 유일하게 정의되는 함수이므로 설명변수 패키지를 차별화하는 추정전략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가계소비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변수 후보군을 선정하여 최적의 회귀방정식 추정식(설정)을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적합한 소비함수 회귀방정식을 식별해내는 것이 실증분석의 핵심사항이다. 공적이전소득 효과, 자산효과, 부채효과 모두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회귀방정식으로 선정된 추정식의 계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공적이전소득 효과, 자산효과, 부채효과를 모두 담아내는 방향에서 논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연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설명변수를 하나의 회귀방정식에 모두 담아내는 방향으로 통계분석을 재수행해보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세부적·기술적으로 몇 가지 세부적인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미시분석에서 설명변수로 선택하고 있는 변수 중 변수값이 0인 관측치가 많은데, 논문에서 설정한 것처럼 자연대수선형모형으로 회귀모형을 설정하면 매칭이 되지 않는 관측치가 많아진다. 이때 자칫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이 발생하여 선택편의로 인한 추정 결과의 불일치성(inconsistenc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굳이 자연대수선형모형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단순선형모형으로도 충분한 만큼 모형식을 단

순하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함수의 특성상 인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으로 통제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인적 특성을 회귀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변수 중 기율기 더미변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율기 더미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기율기의 구조변화를 포착하기 위함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기율기가 변할 때 종축의 절편도 함께 변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율기 더미변수를 설정하는 경우 수준 더미변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일치 추정이 가능하므로 수준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기를 권고한다.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동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는데, 여타 설명변수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가처분소득도 설명변수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의 계수가 공적이전소득의 소비효과를 나타내지 않게 된다.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소득변수 간에 구성항목의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재설정해야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본문에서 추정한 결과에서 공적이전소득 계수의 부호가 일반적인 경제상식에 배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던 것도 다분히 위와 같은 설명변수 선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패널모형에서 시간 추세(time trend)와 연령변수를 동시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시간 추세는 주로 회귀변수와 피회귀변수 사이의 시계열적 수준 변화 추이의 기율기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변수이고, 연령변수는 생애주기상 연령·세대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다. 두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여도 설명변수 행렬의 full rank는 그대로 유지된다. 생애주기 효과

를 좀 더 정확히 포착하고자 한다면 연령제곱항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귀분석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이다. 본문에서는 인과관계로 보기 어렵고 단순 상관관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에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조금 더 신중하게 기술하는 것을 권고한다.



주제발표 요약

I-2
주제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 관계 종단연구

이경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교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부와 소득의 분배 불평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현상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두 변수의 분리와 결합이라는 양방향 관계에서 최상위 소득 집단에서 생긴 소득 구성의 변화가 기존과는 다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관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또한 두 구성개념 및 통제변수(지식자본 축적 시 노동수요) 사이의 관계 현상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구성개념의 연결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 문헌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갭(Gap)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패널조사 제 11~13차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1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근로소득 상위 10분위와 자본소득 신고자인 참가자 450명이 포함되며, 연구 2에서는 자본소득 상위 10분위 해당자 중 근로소득 신고자인 참가자 59명이 포함된다. 분석방법으로 시간 결과에 따른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교차지연 패널모형(CLPM)을 적용해 시간적 상호 인과 방향을 규명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은 기술적으로 비교적 좋지만, 충분하지 못한 표본으로 인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 쓰이는 상위 1~0.1% 최상위 소득구간의 소득 집중 현상이 한국에서는 양극화 및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 불평등에 희석될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다층 및 다차원으로 전개되는 소득 불평등 연구에서 다층모형(MLM)을 이용한 종단연구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 요약

임병인 /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제11~13차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의 관계를 구조적 변화의 틀 안에서 살펴보고 두 변수 간 인과관계 방향의 효과를 교차지연 패널 모델(CLPM)과 ML(Maximum Likelihood)기법으로 추정한다. 저자

는 이러한 목적 외에 두 구성개념 및 통제변수(지식 자본 축적 시 노동수요) 사이의 관계 현상을 제시함으로써 개념 구성개념의 연결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 문헌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갭(gap)을 메우는 것이 목표라고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 심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 현실에 비추어 연구 주제의 시의성이 돋보인다.

본 연구가 더 훌륭한 연구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목적과 저자가 추가로 언급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증되었는지를 추정 결과를 제시한 제4장과 제5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특히, 방법론적 갭(gap)을 어떻게 보완한다는 것인지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를 보완하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 1과 연구 2에 적용한 표본이 지나치게 작아 추정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즉, 연구 1에 사용한 표본은 근로소득 상위 10분위(450명) 중 자본소득 상위 10분위 해당자 3명(이런 점에서 추정계수가 0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연구 2에 사용한 표본은 자본소득 상위 10분위 해당자 중 근로소득 신고자 59명에 불과하다. 연구 1에 사용된 표본이 3명에 불과한 이유는 지나치게 짧은 분석기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저자도 언급했지만 높은 자본소득이 증여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 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지만, 그래도 근로를 통해 소득을 획득하는 표본이 연구 2에 적용한 표본에서 5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본소득이 많지 않다면 부(富)의 추구에 대한 욕구가 커서 근로시간 외

에 개인적인 시간을 투입하여 자본소득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직관에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연구 1의 표본을 보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두 표본을 이용한 추정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도 없어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셋째, 종단연구 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자료를 통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과의 관련성을 실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둘째와 셋째 견해에 근거할 때, 장기에 걸쳐 조사된 다른 패널조사 자료(예: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한다면 저자의 의도가 충분히 실증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제시한 시사점 중의 하나인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 언급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듯하다.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부과 자체가 세후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 결과와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발표 요약

I-3
주제

고령자 가구의 자산효과 변화 연구

이순국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가구주를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일용직)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재정패널 조사 제7차(2014년)~제13차(2020년) 7개년도 자료를 통해 가구 특성에 따른 자산효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에 자산유형,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효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 증가에 따라 임금근로자는 정(+)의 자산효과를 보이나 비임금근로자는 음(-)의 효과를 보인다. 가구원 수 증가는 모든 계층에서 소비 증가를 가져오나 비임금근로자 자녀 수의 증가는 음(-)의 효과를 보인다. 모든 계층에서 총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있는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10% 총자산이 증가할 때 각각 0.24%, 0.13%, 비임금근로자는 0.15%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

또한, 자산유형별로 고정효과 모형에서 임금근로자는 주택자산, 비임금근로자는 금융자산, 주택자산, 주택 이외 부동산자산에서 양(+)의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 부채와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소비를 증가시킨다. 소득분위별로 상용직 소득2분위는 기타자산(0.0336), 소득3분위는 주택자산(0.0163), 소득5분위는 부동산자산(0.0061)에서 비임금근로자는 소득4분위(0.0139)에서 자산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이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산효과가 상이함에 따라 고령자 가구를 위하여 계층별 다차원적인 연금체계 구축과 취약한 고령자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토론 요약

김행종 / 세명대학교 도시경제부동산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가구 자산구조의 불확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700만을 넘어섰고(전 인구의 14.2%), 2025년에는 1천만명 이상으로(전 인구의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후 준비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결과 국내 고령자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은퇴연령은 75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희망 은퇴연령은 평균 65세지만 실제 은퇴연령은 이보다 10년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017년 현재 25~74세의 절반 가량은 경제적인 이유로 75세 이후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영국,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자가 소유 비중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주택자산을 기초로 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주택자산을 기반으로 한 노후소득 모형



을 국내에 도입 활용하면, 고령자가구의 자산효과는 증가될 수 있으며, 그 자산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고령자가구의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주택 가격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간의 양도차익을 현금화하여 자본이득을 획득하는 방안, 주택자산을 담보로 가입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는 주택연금 방안, 그리고 주택자산의 가격 상승은 차입 여력의 증가로 고령자 가계의 소비를 증대하는 자산효과로 볼 수 있다.

고령자의 자산효과는 고령시기의 적정 소비를 유지 가능하도록 하는 유사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고령자의 자산효과는 고령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 고령자가구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주택연금, 토지연금, 산지연금 등과 고령자 일자리 마련 등, 고령자가구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 저소득분위가구일수록 소득이 현저히 낮아 적극적인 주택자산의 유동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연금과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제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소득분위가 낮은 고령자가구는 가구주의 나이가 고소득분위에 비교하여 1인가구가 많으며, 고령이며, 여성가구주가 많다. 이처럼 저소득 독거 고령자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저소득분위의 60~70대를 위한 일자리 마련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고령자 가계에 관한 활발한 연구 진행과 그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제발표 요약

I-4 주제

가계부채의 유형화 및 이행의 확률과 영향 요인

박호준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박정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연구는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를 유형화하고, 그 종단적인 변화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재정패널조사 제6~13차 데이터(2012~2019년)를 사용하였으며, 제6차 연도(2012년)에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총 1,151가구(9,208케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전이 확률을 구하였으며, 경제적 변수와 사회경제학적 변수가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의 가치분소득, 총 자산액은 고위험 가구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켰고, 총 부채액과 비우량부채비는 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전례 없는 급속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많은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과도한 가계부채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가계부채의 종류와 주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정책 설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을 보인다. 가계부채를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포에 대한 이해는 정책 설계자로 하여금 세밀하고 정교한 조세 및 재정 정책 구조를 계획하고 설립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일차적인 기술 통계량뿐만 아니라, 각 변수들과 고위험 가구들의 분포와 같은 이차원적인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이 독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확장된 전이확률행렬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를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각 종류별 2 by 2 전이확률행렬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도 가계부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지만, 고위험가구가 일반가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반대로 일반가구가 고위험가구로 이동하기 쉬운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확장된 4 by 4 전이확률행렬을 추가한다면 추후 관련 정책 설계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다양한 모형설정(specification)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가구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종속변수에는 고위험가구를 나타내는 인덱스(index) 변수가 사용되었고, 독립변수에는 가처분 소득, 총자산, 총부채와 같은 재정적 변수들과 연령, 성별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고위험가구를 분류하는 기준이 일정 이상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과 자산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가지는 것이며,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재정적 변수들이 모두 독립변수에 다시 사용이 된다. 이러한 경우 재정적 변수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변수들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중공산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재정적 변수를 제외하거나, 고위험가구의 분류에 사용된 지표들의 분자 혹은 분모에만 해당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다양한 모형설정의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주제발표 요약

II-1 주제

Analyzing Causal Effects of Political Attitudes on Welfare Preferences Using a Fixed Effect Model with Instrument Variable

김대환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he social expenditures have remarkably increased over time in most countries and researchers have devoted much effort to



documenting the determinants of preferences toward welfare. However, there was little effort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attitude and welfare preference utilizing data at individual leve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by using long-term panel data to trace each individual every year. The result from a fixed effect model present that the tendency to oppose welfare expansion was strengthened as the political orientation evaluated as very liberal (1), liberal (2), moderate (3), conservative (4), and very conservative (5) changed to conservative. Furthermore, I attempted once again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technique. Employ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s the instrument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many people changed progressively dur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as a result, they further changed to favor the expansion of welfare. Since this study is the first to attempt an empirical study on political attitude and welfare preference on my knowledge, additional efforts are essential to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future.



토론 요약

김정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복지지출 정책의 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회귀모형(Panel Data Fixed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해외 및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분석 대상이 정부의 집권 정당에 따른 정부 지출의 정도 분석과 같이 경제 주체가 주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였으나 본고에서는 국민 개인 단위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이 있는 선구자적 연구로 보인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가지는 내생성을 ‘탄핵’이라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통제하려고 했다는 점도 도구변수로서 가져야 하는 이론적 조건을 일부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알맞은 방법론의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여 진다.

앞으로 본고의 연구를 더 확장할 때 흥미로운 방향성을 몇 가지 추측해 보자면 우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위투표자 정리(Medium Voter’s Theorem)나 호텔링정리(Hotelling Lemma)가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즉, 국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발생한다는 방향과 반대로 어떤 정당이 특정 복지지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을 때 그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선호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조금 더 강조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변호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도구변수에 대한 부분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연도의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 해당되는 시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구변수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제공한 저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추후에 경제적

으로도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당시 정부의 복지 지출에 해당하는 재정정책의 변화 등 국민들의 복지 지출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욱 분석의 근거가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본 내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통계 자료도 흥미로웠다. 표본 집단 내에서 특정 정당 지지에 따른 복지 지출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경우 회귀분석 모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정인 무작위동질표본(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 i.i.d.) 가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분표본(Subsample)을 활용한 방법론, 분위분석, 매칭(Matching) 등의 방법론을 모색하면 더 흥미로운 결론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주어진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패널 순서형 프로빗 모형(Panel Ordered Probit Model)과 같은 비선형 패널데이터 모형을 활용하면 조금 더 의미적이고 모수의 추정치에 대하여 해석이 더 용이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본 연구가 기초 단계에서 나아가야 할 흥미로운 방향이 많다는 점은 이 연구 주제가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것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중요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 싶다.



주제발표 요약

II-2 주제

Estimation of Latent Preference for Desirable Tax Rate of Taxpayers

김병우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We develop the model of ordered choice model that find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members for choosing the degree of desirable tax rate: 10%, 20%, and 30\$, etc. We performed the estimation of several types of dependent variable models. Estimation of ordered probit results shows, the choice for desirable tax is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current annual income as explanatory variable.



토론 요약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세율의 결정요소를 분석하였다.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세부담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소득세율 인상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고구간 세율이 4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40%로



증가하였다. 또 올해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의 한계 세율이 45%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진행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연구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겠다. 먼저, 국내에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충분한 현황 파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세통계 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소득수준에 따른 실제 세부담 수준(실효세율 등)과 납세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율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과표에 대한 적정세율 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적정 세부담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 내용과 연결하여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실증분석에서 각 요소가 무작위로 주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누진세율은 소득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차별적 선호 및 그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재정패널조사 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는 세전 소득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각 소득 별로 어느 정도의 유효세율이 적정한지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질문을 활용하는 경우와 달리 누진성 또는 역진성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구간별 적정 세율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납세자별 소득세 누진성의 선호도를 표준화된 지표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재무위험에 대한 태도, 조세 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주관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수준 또는 인구통계적 특성변수와 같은 객관적 요인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납세자의 선호는 위험 회피 성향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며, 성별의 차이는 조세 누진성의 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타인에 불신이 클수록 누진적인 소득세제를 더 선호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데 경제적·인구통계적 요인보다 사회적·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누진세율 체계의 정책적 타당성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였다.

주제발표 요약

II-3 주제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의 결정요인 연구

강민조 /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본 연구의 목표는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정 누진세율 체계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결정



토론 요약

안종석 /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이사

본 논문은 재정패널조사의 부가조사인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 누진도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수준별 적정세율에 대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개인별로 선호하는 누진도를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그 누진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소득, 위험회피 성향, 조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기타 사회정치적 태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하였다. 소득수준별 적정세율에 대한 의식조사 자료는 국내에서 재정패널조사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누진도에 대한 선호도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납세자의 선호는 금융상품의 투자의사 결정에 대한 위험회피 성향과 유의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누진성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신이 클수록 공정성을 의심하고 소득 불균등을 교정하는 정책수단으로서 누진과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를 직접 고려하는 경우 소득수준이나 학력 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는 누진성 선호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연구를 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

완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수준별 적정 세율 조사 자료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를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제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하여 저자가 분석한 개인별 누진도의 분포와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보완하면 좋겠다. 많은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는데, 대체로 수공이 가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종속 변수와의 인과관계가 직관적으로 명확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면 분석의 타당성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주요 결론으로 제시한 소득수준과 인구통계적 변수의 영향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보완되면 좋겠다. 결론 부분에서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재무위험에 대한 태도, 조세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주관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수준 또는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와 같은 객관적 요인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 서술이 소득 등 객관적 요인은 소득세 누진성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문이다. 소득 등 객관적 요인이 누진성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간접적 영향으로, 소득이 재무위험에 대한 태도, 조세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주고 그 태도와 의식이 누진성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 영향으로, 소득 등 객관적 요인이 재무위험에 대한 태도나 조세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의식과



관계 없이 누진성 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두 번째 경로 즉, 직접적 경로의 영향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소득 등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의식의 관계를 모형 내에서 설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발표 요약

II-4 주제

탈빈곤 경험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

민보람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박사과정
강성훈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탈빈곤이라는 경제적 지위 상승이 정부의 재분배 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제9~13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선형 비관측 효과 모형과 패널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탈빈곤 경험과 재분배 선호 간에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이는 젊은 계층에만 유의미하게 관측된다. 이와 같이 젊은 계층에서 관찰된 탈빈곤 경험의 재분배 선호효과는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는 일반소득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주로 기여하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소득 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할 때에 재분배를 더 선호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분배 선호가 경제주체의 심리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 요약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본 연구는 재분배 선호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빈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분석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여 탈빈곤 경험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으로 보이며, 재정패널조사 자료 및 선형비관측모형 등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탈빈곤 경험과 높은 기대소득은 재분배 선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반면, 낮은 기대소득은 재분배 선호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이와 같이 기대했던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 및 향후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모형에서는 연관임의효과모형(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론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재분배 선호를 의미하는 변수(Y)에 대해 5점 척도의 설문문항 답변을 소득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제시해 준다면 모형의 신뢰

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관심이 탈빈곤 가구이지만, 가구원 또는 가구주 단위로 분석을 수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소득기준으로 재분배 선호도를 가중평균하여 이용한 결과와, 가구주 또는 주소주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서 정부지원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탈빈곤 확률이 6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빈곤률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당 수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초통계 부분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속적 빈곤 집단, 일시적 탈빈곤 집단, 계속적 탈빈곤 집단에 대해 집단별로 재분배선호도 등을 살펴보는 것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변수나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matrix) 등을 살펴보고, 모형에 포함할 변수를 조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Mundlak 방법론의 경우에는 시간평균 변수를 선정할 때, 변수의 변동성(variation)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해석 부분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의 연령은 소득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구 나이를 의

미하고 있기 때문에, 50~65세 이하를 은퇴시점에 가까운 집단, 가구 나이 65세 초과를 은퇴한 집단 등으로 간주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발표 요약

III-1 주제

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이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김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 시 가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재의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를 QU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에너지재를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연료, 대중교통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에너지재의 지출 탄력성 및 수요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에너지재 중 수송용 유류의 지출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나 사치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에너지재의 경우 1보다 작은 양수(+)가 나와 필수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에너지재의 자기가격탄력성은 음수(-)를 가졌으며 수송용 유류와 대중교통의 경우 그 절댓값이 1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어 수요가 가격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에너지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에 미치는 후생손실은 다르게 나타났다. 수송용 유류의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는 지출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후생손실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역



U자 형태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에너지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지출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후생손실이 증가하는 역진성을 보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5만 5천원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이산화탄소 상당량 1톤당 5만원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지출분위별 가계의 후생손실을 추정된 결과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후생손실이 감소하는 역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에서 발생한 탄소세 세수를 구성원들에게 전액 정액분배(lump-sum transfer)하는 경우 역진성이 저지출 분위에서는 일부 해소되는 듯 보이거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배정환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 시 가계가 소비하는 에너지 재화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를 QU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5만 5천원 및 5만원의 탄소세가 에너지 재화에 부과됨에 따른 지출분위별 가계의 후생손실을 추정된 결과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후생손실이 감소하는 역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연구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 재화에 대한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는데, 본 모형이 기존의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에 대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부과된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배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득 분배의 역진성이 예측되고,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재화 지출에 반비례하여 탄소세 세수를 재분배하는 시나리오도 추가로 분석하기 바란다.

셋째,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는 탄소세 부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없을 수도 있다고 서론에서 기술했으나, 수송용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현행 유류세 비율이 100 : 85 : 50 상황에서 탄소 함량에 따라 연료별 가격 상승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표 6>에서 탄소세 부과 시 가격 상승 효과를 LPG 18-19%, 경유 9-10%, 휘발유 7-8%로 추정했는데 이는 탄소세 부과에 따라 수송용 유류가격 인상 폭이 기존 유류세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보여 준다.

넷째, 지출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없고, 필수재와 사치재의 구분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에 기반하는 데 지출탄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기본적인 미시경제이론과 차이가 있으니 추후 수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QUAIDS 모형 추정 결과, 전기요금(전기세가 아님) 1% 상승이 대중교통 소비는 1.86%, 수송용 유류 소비는 0.34% 감소시키는 반면, 전기 수요는 0.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추정 결과로 보인다. 즉, 자기가격탄력성보다 관련성이 더 적은 대중교통이나 수송용 유류소비가 전기요금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추정 결과로 보이므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여섯째, 탄소세를 5만원과 5만 5천원으로 했는데

결과를 보면 CV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굳이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좀 더 탄소세 부과 수준을 차별화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탄소세 세수를 정액으로 모든 소득계층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의 경우 분배적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은 애초의 설계 시부터 이미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점에서 별로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부과의 이중배당가설에 의하면, 탄소세 수입을 근로소득세 감소나 법인세 감소를 통해 고용을 증진시키는지 검토하거나, 탄소세 수입의 친환경기술 투자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론자가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정한다면 논문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술적인 연구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발표 요약

III-2 주제

Card or cash? Evidence regarding consumers' VAT compliance

김영록 / 간사이대학교 박사후과정 연구원

만홍우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강민조 /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Cashless payments discourage value-added tax (VAT) evasion through transaction records; these cashless payments essentially require cooperation from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s indirect VAT payers, consumers' payment methods decisively influence the final VAT declaration.

However, literature has yet to investigate consumers' VAT compliance. This study uses data from approximately 7,300 taxpayers as collected by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of South Korea to examine the impacts of perceived trust, service, and enforcement paradigms on consumers' responses to payment methods when small business owners offer low-, moderate, and high-discount benefits. The results reveal that regardless of the discount amount, perceived trust, government service, and enforcement significantly strengthen consumers' VAT compliance. We also discover that as the discount amounts increase, trust has a greater impact on VAT compliance. The study contributes to tax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at enforcement, trust, and services can improve consumers' VAT compliance.



토론 요약

정다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부가자료 중 응답자의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신뢰 수준과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도(compliance)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신뢰 수준에 대한 측정은 세 가지 재정패널 조사 질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귀하는 일반적으로 정부 관료가 전 국민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우리나라의 탈세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합하여 설명 변수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각각 개별 질문의 응답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도 역시 재정패널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 K씨는 여유자금이 생겨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K씨는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로 구매하려는데 가전제품 판매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면 10%(5만원)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K씨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결제하려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 때(정부가 국민의 이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 납세와 관련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 탈세자 처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때),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순응도가 높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롭다. 기존의 부가가치세 순응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거시적인 측면

에서 이론적으로 견혀야 하는 부가가치세 세수와 실제 걷힌 부가가치세 세수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는데, 이 연구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 변수를 구축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납세 순응과 심리적인 요인의 관계에 대한 재정학 연구(Adreoni et al., 1998¹⁾; Slemrod et al., 2019²⁾)는 그동안 경제학의 흥미로운 분야로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심리적인 요인과 납세 순응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이 관찰된다.

첫째, 저자가 재정패널조사의 질문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도 변수를 설정하였으나, 과연 설문문의 내용이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도를 대리(proxy)하는 변수인지는 의문이다. 소비자가 10%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소비자의 세금회피(tax avoidance)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지 여부가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가격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 구입 시 부가가치세 인식이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다. 재정패널조사에 이와 관련한 인식도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1) Andreoni, J., B. Erard, and J. Feinste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2), 1998, pp. 818-860.
 2) Slemrod, J.,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7(4), 2019, pp. 904-954.

기초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설문내용이 소비자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만을 정확하게 포착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거래를 선호하는지 현금거래를 선호하는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과 분리시켜 변수화하는 것은 현행 설문으로는 불가능하다.

둘째, 내생성(endogeneity)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정부 신뢰도가 부가가치세 납세 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 시사점은 정부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납세 순응 제고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임을 언급한다. 이러한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분석은 인과관계 분석이 아닌 상관관계 분석이기 때문에,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상당히 까다롭다. 정부 신뢰도 변수의 내생성 문제는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점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재정패널조사에는 인식조사와 관련된 다른 질문들도 많다. 이들 질문들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인식도와 납세 순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일정한 패턴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제도와 관련한 간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연도가 1977년이 아닌 1972년으로 언급되어 수정이 필요하며, 신고 납부기간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반기가 적용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수 설정 및 모형 설정에서 자료의 한계 등으로 한계가 있으나, 심리학적 요인들과 납세 순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좋은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발표 요약

III-3 주제

부모의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현정 /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

2020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 정도로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자녀의 출산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자녀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출산율을 비교하고 부모의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자녀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위형로지트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설명변수는 부모의 소득, 자산, 거주지, 주말부부 여부, 직업, 주택 소유 여부 등이며, 종속변수는 자녀의 수로 0부터 4까지의 범위가 있다. 출산율을 저해하거나 높이는 요인을 찾아보고 향후 출산율을 장려하는 정책 수립 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요약

조희평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13차년도(2021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출산 결정 요인에 있어 도시와 농촌 간 일부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출산율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부모가 출생지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양육 조력자와의 거리가 멀수록 출산율이 하락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본 연구는 향후 출산 장려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출산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대한 제언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재의 분석에서는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가구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출산이 가능한 연령으로 분석 샘플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부모의 특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을 계산할 때 15~49세 여성 인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대안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재정패널조사에서 가구주로 분류된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현재의 분석 결과는 아버지의 특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을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모의 현 거주지와 출생지가 다른지의 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조부모보다 외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부모의 인구 특성(연령 교육 수준)과 경제 상황(직업, 주택가격 등) 변수를 순차적으로 포함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다수의 설명변수들이 회귀분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생성(endogeneity)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인구 특성과 같은 상대적으로 더 외생적인 설명변수들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과 같은 다른 변수들을 포함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 사용한 범주 변인(categorical)인 중 샘플 수가 적은 유사한 범주끼리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분석에서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범주는 총 여덟 개이지만, 이를 세 개(고졸 이하, 4년제 미만, 4년제 이상)로 줄인다면 회귀분석의 추정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 요약

III-4 주제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비에 관한 연구
: 출생시기 코호트와 거주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손용진 / 부산노인건강센터 자문위원

본 연구는 제13차 재정패널조사에서 2,985명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retrospective) 종단(longitudinal) 조사이다. 주요 관심사는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주관적 노후생활비가 거주지역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우리나라 첫 베이비부머는 2020을 기점으로 65세 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폭등 등으로 베이비부머의 거주지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9차부터 제13차까지의 재정패널조사에서 두 가지 형태의 노후생활비(예: 최소 및 적정)에 대해 반복 측정된 자료가 주요 관심 대상 변수이다. 베이비부머 출생연도에 의해 wave1(1955~1957년), wave2(1958~1960년), wave3(1961~1963년) 세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각각 코호트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위집단의 노후생활비에 대한 추정치가 다르게 산출될 것이다. 패널자료의 특성으로, 관심 변수를 불변 및 시간 변화 공변량(time invaring & time varying covariate)로 구분했다. 제13차에만 측정된 TIC는 7개 변수로 성별, 배우자, 교육, 종교, 자가거주, 출생 코호트, 그리고 거주지역이다. 제9차부터 제13차까지 모든 조사시점에 측정된 TVC는 공적연금가입, 민

간보험, 주관적 건강수준, 부채, 기부금지출, 가구원별 연간소득, 및 은퇴시점 연령, 총 7개 변수를 선택했다. wave1, wave2, wave3의 각각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최소 및 적정 노후생활비의 평균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wave1에서 wave3으로 코호트가 올라갈수록, 2016년에서 2020년으로 연도가 높을수록 노후생활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wave1, wave2, wave3으로 각각 구분하여 TIC 및 TVC 간의 이변량분석을 했을 때, 높은 사회인구계층에 속할수록 노후생활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세 개의 하위집단 모두에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할수록 노후생활비를 높게 응답했다. 모든 하위집단에서 전라지역에 거주할 경우, 제일 낮은 노후생활비 인식을 나타냈다. 패널분석에서 wave1~wave3과 거주지역 간 상호작용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낮은 사회인구계층에 속하는 베이비부머의 소득보장과 다양한 거주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토론 요약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로 판단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라는 점도 의미 있는 논문으로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세 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여 연구를 접근한 것도 분석 틀로서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현재 논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부문에서 베이비부머 구분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1955~1957년(wave1), 1958~1960년(wave2), 1961~1963년(wave3)으로 그룹을 나누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세 개의 wave로 구분한 근거가 제시되었으면 한다. 특히 wave1과 wave2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베이비부머와 거주지역에 대한 이론적 논거 혹은 선행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논문 속에서는 신수민·정규형(2017)³⁾ 논문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 논문도 거주지역이 중심인 논문으로 보이지 않아, 이론적 및 선행연구가 보강되었으면 한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논문의 주요 변수인 거주지역에 대한 논거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표 4>에서 처음으로 4개 지역(서울·경기, 충청·강원, 전라, 경상)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왜 4개 지역인지, 이와 같이 구분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지 않다. 지역에서 광역시와 도가 차이가 있으며, 도시와 농촌도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제외했다면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독립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이론적 논거가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종교, 자가, 민간보험 지출, 기부금 지출 등이 독립변수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논거가 이론부문에서 설명이 되었으면 한다. 분석 기준 연도를 제13차, 즉 재정패널조사의 마지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연구자가 불변변수로 선정된 자거거주, 거주지역 변수는 분석기간인 5년 내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

결론 및 함의와 관련해서는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

에 연결된 정책적 함의가 추가되었으면 한다. 현재는 일반적 정책제언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분석과 연결된 제언이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논문 전체적으로 다른 연구와 비교한 차별성 등이 본문 내용 속에서 혹은 각주 등을 통해 추가 되었으면 한다. 연구윤리 측면에서 일부 장을 제외하고 인용, 표 인용 등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료 인용에 대해 분명히 기술해 주면 좋겠다.



주제발표 요약

IV-1 주제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구유형별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신상화 /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정부는 2018년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 개편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가구수와 전체 지급액은 1년 사이 약 2~3배 가량 증가하게 되었다. 근로장려금 개편 논의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시행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이 갖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가구들이 실 노동공급을 증가시켰을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재정패널조사 제11~13차까지의 자료들을 이용하

3) 신수민·정규형, 「노년기 주거비부담이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 노후생활비 준비여부에 따른 차이 비교」, 『한국노인복지학회』 제72권 제4호, 2017, pp. 191~215.

여 분석한 결과 노동공급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가구주들에서 개편 이후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편을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토론 요약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년부터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면에서 최신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의 기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자는 재정패널조사에서 확인되는 노동공급 변수의 조사시점과 조사 대상 시점을 명확히 하여 재정패널조사 데이터의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과거 추세를 통제했을 때 해당 추세와 관련된 계수의 값이 통계적 유의성을 띠는 것을 이중차이법의 기본적 가정인 공통 추세(common trend)를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려 결과 해석에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신중함은 향후 보다 강건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가 지적한 바대로, 더욱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이나 분석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공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적용의 시점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장려금의 수혜 여부를 정책의 적용으로 볼 것인지,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책의 적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공통 추세의 확인방법과 관련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집단별 이질적 추세를 가정하고 해당 항을 추가로 통제하여 이중차이법 분석을 하는 것은 공통 추세 가정을 완화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론이 그대로 도출된다는 것을 보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저자는 동일한 방법론을 이중차이법이라는 분석방법 자체를 부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계량학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는 제도 외의 다른 외생적 요인을 통제하는 부분이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통제한거나, 그러한 통제가 어렵다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할 때의 해석에 어떻게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 요약

IV-2 주제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⁴⁾

홍우형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이상엽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과 수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제12~14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제도 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개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평탄 및 점감 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제활동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노동공급 효과는 부부가구, 그리고 부주가구 중 노동유연성이 높은 자영업가구와 부소득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평탄 및 점감 구간에서의 노동공급 효과는 근로장려세제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벌이형태별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따르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특수성에 기인하였음을 지지한다.



토론 요약

고지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19년도에 있었던 근로장려세제의 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 근로장려세제 내에서 세 가지의 구간(점증, 점감-평탄 구간, 소득 증가 구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인센티브 구조가 어떤 이질적인 노동공급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재정패널조사 제10~12차 자료(노동공급 기준 2016~2018년)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였는데, 처치군은 2019년도에 근로 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로 통제군은 2019년의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조건을 만족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 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가구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부부 가구에서 그리고 평탄-점감 구간과 소득 증가 구간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0.13~0.16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부부가구 내의 부소득자들의 노동시장참여의 증가(13%)와 자영업 부부 가구에서의 경제활동 참가자 수의 증가(0.26~0.61명)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발표는 권성우·홍우형,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 발간 예정)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임

본 논문은 2008년도에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이후 수혜자나 지원금액 면에서 큰 폭으로 확대가 된 2018년도의 제도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는 의미와 함께, EITC의 구간별로 노동공급의 상이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EITC의 현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대조군과 처치군의 설정에 관한 것이다. 분석에서 대조군과 처치군은 소득과 재산 요건 면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구이나 실제 수급 여부에서의 차이가 있는 그룹이다. 이는, 근로장려세제라는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라 두 그룹을 설정한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노동공급과 관련된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중차분법에 의한 추정치에 편향이 생기게 된다(가령,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큰 경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강건성 분석에서 두 가지의 다른 통제군(재산 요건 4억원 미만, 재산 요건 무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통제군에 속한 가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를 기준으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그룹 간 이질성이 이중 차분법 추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공통 추세를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지만,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 사건연구(event

study) 접근법을 사용하여 확인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공급 변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제 10~12차 자료이고, 노동공급과 관련된 변수들은 작년의 노동공급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된 정보는 2016~2018년의 노동공급 정보이다.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2018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까지만의 노동공급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노동공급 변화를 위한 시간을 5개월까지밖에 허용하지 않아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보를 관련된 경제주체들이 인식하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9년도의 노동공급 정보도 사용하여 분석을 확대해본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제활동 참가뿐 아니라, 실제 근로 여부와 같은 변수를 종속변수에 추가하여 외연적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해 보는 것도 제안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결과 해석에 관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체로 노동공급의 외연적인 효과가 점증구간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평탄-점감 구간에서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석으로 가구 별이형태로 근로 장려금을 산정하는 제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론적으로 노동 공급 저해효과(disincentive)가 있다고 알려진 점감구간에서 노동공급이 유의하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점증구간에서의 노동공급



증가 효과를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이 있어[신우리·송헌재(2018),⁵⁾ 김문정·김빛마로(2020)⁶⁾], 기존 연구와 다른 점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준다면 본 연구와 결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앞서 언급한 노동공급 정보를 2018년도까지 사용한 부분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으나, 2019년도로 확장하여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점감률이 2019년 개정으로 낮아지는 것에 따른 효과가 잡히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21.3%에 이르던 점감률이 제도 확대 이후 13.6%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점감구간에 있는 가구들이 받았던 노동공급 저해효과(disincentive)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노동공급의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수혜자들이 근로장려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정보가 부족하여, 근로장려금을 극대화하는 형태가 아닌 근로 소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요약

IV-3 주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와 요인분해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과 비교한 근로 조건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차별의 크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제11~13차(2017~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 Kitagawa-Oaxaca-Blinder 임금격차분해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 2만 1,921원, 비정규직 근로자 1만 2,371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6.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적 속성, 기업 특성, 직무 특성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현재 정규직인 사람이 다음 기에도 여전히 정규직일 확률은 94.78%, 다음 기에 비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전이될 확률은 5.22%이고, 현재 비정규직인 사람이 다음 기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일 확률은 78.0%이며, 다음 기에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뀔 확률은 21.67%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사실상 분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5) 신우리·송헌재,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20권 제2호, 2018, pp. 107~138.

6) 김문정·김빛마로,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셋째, 비정규직 더미변수를 포함한 패널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 중 차별에 기인하는 격차 크기는 4.1~16.4%로 나타났다.

넷째, 패널회귀분석을 기초로 KOB 임금격차분해를 시도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로그시간당 임금의 특정 시점에서의 격차 중 부존 자원에 기인하는 임금격차는 2017년, 2018년에는 45% 수준에서 2019년 37.3%로 낮아졌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2017년, 2018년에는 35% 수준에서 2019년 44.1%로 높아졌다.

정규직을 전형적인 근로형태로 보고 비정규직을 정상에서 벗어난 근로형태로 바라보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제도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산업, 신직업, 유연한 근로방식과 노동계약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처우는 보장하되 다양한 근로형태는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토론 요약

박정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제11~13차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추정한다. 연구의 주된 의의는 패널회귀분석과 Kitagawa-Oaxaca-Blinder 임금격차분해의 두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하였다는 점과 통제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전체 임금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다만 두 가지 방법론의 조화와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에서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며, 보다 신중하고 상세한 결과 해석을 통해 설득력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할 여지 또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임금격차 분석에 주로 이용되는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적용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분석모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분석 대상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측면 또한 있다. 포괄적인 접근은 유지하되 논문의 컨텍스트와 각 모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추가함으로써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고 저자가 선호하는 모형을 제시해 준다면 보다 선명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제IV장 제2절의 임금격차분해에 사용된 패널회귀식은 임의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는데, 앞서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임의효과 모형에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인 만큼 모형 선택의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저자는 임의효과 모형 채택의 이유로 시간불변 변수의 계수 추정을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간불변 변수를 포함하였는지 제시해준다면 내생성을 희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익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제IV장 제1절에서 패널회귀분석 방법론을 설명할 때에는 구체적인 회귀식을 제시하는 것이 엄밀한 논지 전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 해석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추정치를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추정 결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추가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 추정된 임금격차의 크기가 비정규직 문제에 미치는 함의가 무엇인지, 2019년 계수 차이에 의한 임금



격차가 증가한 지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보다 선명히 제시한다면 본 논문의 결론과 정책 함의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정부와 사회 각층에서 노력해온 만큼 엄밀한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통해 본 논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여 13년 동안의 누적 경조사비 지출액이 해당 가구의 중고령층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누적 경조사비 지출액의 증가는 2019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취업해 있을 확률을 높이고, 연간 근로 월수를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제발표 요약

IV-4 주제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액이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손혜림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고은비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조사비 지출에는 금전적 지출과 경조사 참석이라는 시간 비용이 수반되며, 이것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축적된다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경조사비 지출이 쌓여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구직에 드는 비용 또는 기간이 감소하거나, 직장 유지율이 높아지는 등의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경조사비 지출의 액수보다는 누적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



토론 요약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가구의 누적 경조사비 지출액이 만 51~64세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1~13차(2007~2019년에 해당)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는 2019년 취업상태⁷⁾ 및 근로기간⁸⁾ 두 가지 변수로 측정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프로비트(probit) 모형, 후자의 경우 OLS 모형이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누적 경조사비 지출액의 증가는 가구주의 취업 확률을 높이고, 연간 근로월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내생성 통제를 위해 누적 경조사비 수입액을 누적 경조사비 지출액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한 추가 분석에서 그 추정치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중장년층 가구주들의 경우

7) 임금근로자(일용직 제외), 고용원을 둔 사업주,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일 경우 취업상태로 간주됨
8) 2019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취업상태에 있었던 총 개월 수를 의미함

경조사비 지출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유지라는 ‘보험’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조사비와 관련된 기존 실증연구가 매우 한정적임을 감안할 때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생각되며, 이하에서는 독자들의 이해 및 흥미 증진을 위하여 저자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제Ⅱ장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들에 대한 서술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의 차별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다운·진승우(2015)⁹⁾에서 사용된 Arellano and Bond(1991)¹⁰⁾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해당 방법론이 본 연구에 부적합한 이유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적 네트워크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예: Calvo-Armengol and Jackson, 2007)¹¹⁾도 언급·소개된다면 기존 연구와 본 연구와의 연관성 내지 보완성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는 제Ⅲ장 및 제Ⅳ장에서 몇 가지 논의 내지 설명들이 보완된다면 연구 결과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내생성 통제를 위해 누적 경조사

비 수입액을 누적 경조사비 지출액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한다는 전략은 직관적으로 그 타당성이 이해되나 도구변수 선택 및 사용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결과가 추가적으로 제시된다면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 보다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가구의 순자산이 가구주의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다른 금액 변수들과는 달리 가구 순자산의 경우 로그값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도 추가적으로 서술된다면 독자들의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¹²⁾

끝으로 현재까지의 분석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는 분석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해 본다. 첫째, 2019년이 아닌 2018년 혹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면 저자들이 얻은 결과들이 특정 연도(2019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는 2019년 기준 만 51~64세 가구주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다른 연령대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결과도 보완적으로 제시된다면 경조사비 지출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대별 차이가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9) 정다운·진승우, 「가구 인적 네트워크의 동태적 효과 분석: 경조사비 지출액을 이용한 분석」, 『201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발표 자료집』, 2015, pp. 527~561.

10) Arellano, M. and S. Bond,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1991, pp. 277~297.

11) Calvo-Armengol, A. and M. O. Jackson, "Networks in labor markets: Wage and employment dynamics and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32, 2007, pp. 27~46.

12) 한계효과를 계산한 방법 등도 각주 등을 통해 간략히 기술해 줄 것을 제안함



2021년도 제2차 PEMNA 예산분과 및 국고회계분과 웨비나

개요

- 회의명 2021년도 제2차 PEMNA 예산분과 웨비나
- 주제 What It Takes for MTEFs to Become a Budget Management Tool
- 일시 2021년 11월 22일(월)

- 회의명 2021년도 제2차 PEMNA 국고회계분과 웨비나
- 주제 Fixed Asset Management, Valuation and Registries
-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 주최 세계은행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원 기획재정부 및 유럽연합

* 본 원고는 2021년 11월 22일(월)과 11월 30일(화),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하에 「What It Takes for MTEFs to Become a Budget Management Tool」과 「Fixed Asset Management, Valuation and Registries」를 주제로 열린 2021년도 제2차 PEMNA 예산분과 및 국고회계분과 웨비나의 요약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협력체)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 WB)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B,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는 제2차 예산분과 및 국고회계분과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진행함

- 회의는 각 분과별로 하루씩 개최되었으며 예산분과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국고회계분과는 고정자산의 관리와 가치평가 및 등록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

2021년도 제2차 PEMNA 예산분과 웨비나

11월 22일
월요일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 PEMNA 예산분과 의장 Rofyanto Kurniawan (인도네시아)은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이 단일연도 예산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다루기 때문에 재정정책 수립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부가 필요한 지출 또는 예상되는 지출규모, 그리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모든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용을 고려하게 되고,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됨
- PEMNA 회원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은 국가의 예산제도, 특성, 그리고 국가의 가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할 것임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조정이 필요했음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재정준칙이 조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또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크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함



- 중기재정계획이 효과적인 예산관리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함
 -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실적인 세입과 지속가능한 재정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며, 중기재정계획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예측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
 -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함으로써 부처의 예산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시재정 규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웨비나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각국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여러 논의를 통해 중기재정계획이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예산관리 도구가 되기를 기대함

B-CoP Overview Session: What it Takes for MTEFs to Become a Budget Management Tool

Presentation
 • Dusan Vujovic (World Bank)

- 중기재정계획제도는 우선순위 설정과 그 우선순위에 맞춘 예산 배정을 가능하게 하여 재정 관리와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중기재정계획은 거시재정정책 목표와 예산을 연계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국가가 중기재정사업을 도입할 때
 - 다년도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할 때
 - 재정준칙을 준수하려 할 때

- 부채 관련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할 때
- 중기재정계획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를 방지하여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임
- 중기재정계획을 통하여 다년도 지출을 계획하고, 예산투입과 그 투입의 결과를 연계하여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중기재정계획제도는 단년도 예산의 단점을 줄이고 예산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단계는 중기재정제도(Medium-term Fiscal Framework: MTFF), 중기예산제도(Medium-term Budgetary Framework: MTBF), 그리고 중기성과제도(Medium-term Performance Framework: MTPF) 순으로 나누어짐
 -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중기재정제도에서는 독립적인 거시경제 예측치 추정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인 세입 예상치를 추정하고,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부채와 적자 목표치를 설정하며, 예산 관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거시재정 목표에 대한 설명을 재무부가 제공함
 - 중기예산제도에서는 재무부가 거시재정제도와 중기 예산 우선순위를 포함한 예산 및 재정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일선 부처에 공유하여 일선 부처가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함
 - 가장 진화한 단계인 중기성과제도에서는 각 사업의 산출물(output), 결과물(outcome), 그리고 성과(performance)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예산과 연계하여 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적하여 검토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7-2008년 사이에 다양한

단계의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음

- 2000년대 이전에는 선진국을 위주로 중기재정 계획제도가 도입되었음
- 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기재정제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되었고, 중기예산제도는 중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도입되었으며, 중기성과제도는 선진국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은 중기예산계획제도를 늦게 도입한 편이며, 대부분 중기재정제도를 도입하였음
- 아프리카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기구 또는 선진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기성과제도를 도입함

■ 오스트리아는 상대적으로 늦게 2009년부터 중기 재정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함

- 오스트리아는 유연성, 투명성, 그리고 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예산 관련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첫 번째 단계인 중기재정 제도를 도입하여 법으로 지출 상한선을 규정하고 이후 4년 동안의 예산을 미리 전망하고 계획함
- 2013년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구조를 변경하고, 예산 및 재무보고에 대해 현금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활용한 이중보고 방식을 채택함

■ 뉴질랜드는 2019년에 Wellbeing 예산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기성과제도를 도입함

- 뉴질랜드는 1990년대에 일찍이 중기재정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맞춰 모든 정치적 절차와 정부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정착됨

- 정부는 25년간 시행해 온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던 예산결정에 대한 확신으로 중기성과제도를 도입함

■ 세르비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IMF로부터 중기 재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2014년에 이르러 중기재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되면서, 비로소 이때 제대로 제도를 도입될 수 있었음

- 중기재정제도가 도입된 후,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 Dusan Vujovic (World Bank)
- Bill Dorotinsky (World Bank)
- Sokkheang La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ambodia)
- Achmad Fauzan Sirat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 Nguyen Minh Tan (Ministry of Finance, Vietnam)

■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기재정계획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경제위기가 있는 시기가



좋은 도입 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경제위기가 있는 시기에는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때 중기재정계획과 같은 새로운 제도도 비교적 쉽게 정치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음

■ 베트남은 중기재정계획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5년 「국가예산법」과 2019년 「공공투자법」은 계속(rolling) 중기재정예산계획과 5개년 중기공공투자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단연도 예산과 5개년 국가재정계획을 3년 계속 중기재정예산계획과 연계하고, 투자계획과정과 사회경제발전계획 과정을 연계 하려고 함
- 중기재정계획제도를 운영하는 데 일선 부처가 겪는 어려움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계획에 필요한 통계와 회계시스템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어서, 일선 부처가 작성하는 계획의 질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베트남은 담당 인력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한 훈련과 방법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기재정계획제도가 3년 계속 예산(rolling budget) 개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한

(top-down), 그리고 바텀업(bottom-up) 과정에서 모두 적용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매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편성을 업데이트함

- 인도네시아는 예산편성 시 정부지출에 대한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기준치(baseline) 설정을 위해 예측방법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음

■ 캄보디아도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법에 대한 행정부처의 사고방식과 관습을 제대로 고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세계은행은 중기재정계획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적인(substance)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행정적인(administrative) 측면인 법적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함

- 중기재정계획제도에서는 지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중기재정 목표에 맞춰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배정하되, 예산이 집행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음
- 제도의 목적은 공유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의 성과 측정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Closing Session

Closing Remarks

- 허경선 PEMNA 사무국장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PEMNA 국가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할 기회가 마련되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모든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함
 - 이번 웨비나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지식공유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길 희망함

**2021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웨비나**

11월 30일
화요일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 Introduction

- PEMNA 국고회계분과 간사 Fabian Seiderer(세계은행, Lead Public Sector Specialist)는 회의 주제인 고정자산의 관리, 가치평가와 기재가 공공자산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 코로나19로부터의 복구는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흐름뿐 아니라 대차대조표와 자산활용도를 총체적으로 보는 한편, 자산관리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과 정책이 요구됨
- 기존 고정자산과 인프라의 손실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처와 재무부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T-CoP Overview Session

Present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 Management, Valuation and Reporting of Fixed Assets

- Theuns Henning (University of Auckland)

- 지역사회, 경제, 공공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 고정자산의 가치평가와 효과적인 관리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
 -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고정자산은 경제성장, 사회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인프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 경제 및 비용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성, 탄력성, 적응성에도 영향을 미침
- 자산관리의 공식적인 정의는 국제인프라관리매



뉴얼(International Infrastructure Management Manual: IIMM)과 ISO55000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국제인프라관리매뉴얼은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자산에 적용되는 관리, 재무, 경제, 엔지니어링, 기타 관행의 결합”으로 정의함
- ISO55000은 “조직에 잠재적·실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 사물 또는 개체”인 “자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조정된 활동”으로 정의함

- 자산관리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① 보존 우선, ② 개별프로젝트가 아닌 시스템 위주의 접근, ③ 투자수의 극대화, ④ 지속가능성이며, 국가의 대차대조표와 물리적 수요 충족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 공공자산관리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산 손상이나 좌초로 인해 공공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함
 - 데이터와 정보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자산이며, 반드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함

- 자산평가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이나, 핵심은 모든 자산의 잠재적인 서비스 감소에 대한 자금조달을 보장하는 것임
 - 자산은 종종 과소평가되기도 하며, 적절한 자산 평가는 자산관리 역량을 위한 초석임

- 자산관리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필리핀을 언급할 수 있으며, 각국이 실행 중인 자산관리 거버넌스는 <표 1>과 같음

- 자산관리의 모범사례 확립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야 하며, 자산관리역량의 확립과 이행은 몇 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함

<표 1> 국가별 자산관리 거버넌스 현황

국가	인프라 자산관리 거버넌스 현황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내에 인프라 담당조직이 있으며 재무부 장관이 인프라 장관을 겸하고 있음 ▪ 국가 인프라전략과 인프라투자에 대해 자문하는 독립적인 인프라위원회가 있음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주도하기 위해 인프라 조직인 도시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함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산관리계획, NARS, 정책을 만들기 위한 국가기술자산관리 워킹그룹을 설치

출처: Theuns Henning, "PEMNA T-CoP Webinar Overview Session," 2021. 11. 30.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Presentation: Government Properties Valuation and Reporting

• Hyun hwa Choi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한국은 정부자산을 ‘법령이나 조약, 기부채납, 정부비용으로 인해 정부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부자산 규모는 2016년 1천조원 돌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20년 기준 정부자산은 약 1,157조원이며, 기획재정부가 정부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가짐
- 정부자산의 평가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정부소유의 모든 토지, 건물, 구조물, 선박, 항공기, 기계, 증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일선부처 재산담당관에 의해 하의

상달식(bottom-up) 방법으로 이루어짐

- 「국유재산법」과 「국가회계법」에 의거하여 국유 재산 가격평가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우 「국유재산법」 제68조에 의거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국가회계기준 제58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장 및 기금운용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최초 평가액은 취득원가(구매비용과 부대비용)를 기재하고 이후 감가상각(정액법)을 반영하며, 재평가 시에는 공정가치(fair value)가 원칙이나 불가능할 경우 대안 평가방법을 사용함

- 자산의 취득, 처분, 감평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e나라 자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스템의 국가자산계정에 자산유형별로 자동으로 기록되어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됨

Presentation: The National Asset Registry System

• Maria Erika T. Reyes (Bureau of the Treasury, The Philippines)

- 필리핀은 국유자산등록시스템(National Asset Registry System: NARS)을 202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산관리에 대한 일반정책 제8.8절(section)에 따라 필리핀 국고청(Bureau of the Treasury)이 관리하고 있음

- NARS는 국가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과 현황 등을 기록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자산정보와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취득하고 관리함
- NARS가 수집·관리하고 있는 국가고정자산의 정보로는 일반정보, 법적 정보, 위치, 재무정보, 보험, 기술 등이 있음
- 2018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5개의 파일럿 기관(교육부, 국립관개청, 보건부, 사회복지개발부, 공공사업도로부)과 10개의 기타 기관을 비롯한 15개 기관으로부터 정부 고정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적 중임
- 또한 NARS는 재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가 자산정보의 중앙저장소 역할을 하는 한편, 자산에 대한 보험, 우선순위, 리스크 모델링, 자산 극대화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NARS는 웹기반 포털로 업그레이드하여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개선을 목표로하고 있음

Presentation: Asset Valuation and Reporting (including Asset Registries and Their Link to IFMIS)

• Noryati binti Ahmad (Accountant General's Department, Malaysia)

- 말레이시아의 유형자산은 공공부문 회계기준에 의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형(有形)이어야 함



- 임대 혹은 행정적 목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보유해야 함
- 2개 이상의 보고기간에 걸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최초 가치평가의 경우 취득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나누어지며, 취득방법에 따라 인식방법도 달라짐

- 원가요소로는 취득원가와 수입세, 취급비용, 기타비용(운송비, 조립비, 검사비 등)이 있으며, 해체나 재건비용의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만 반영하고 있음
- 자산의 인식방법은 획득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교환거래로 취득된 자산은 간주원가로 인식하는 반면, 비교환거래로 취득된 자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인식함

■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로는 원가모델과 재평가 모델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원가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재평가모델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원가모델은 감가상각(정액법)과 손상차손만을 고려하는 반면, 재평가모델은 재평가적립금과 손실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재평가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자산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자산의 취득과 기재, 감가상각과 가치는 모두 자산 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리되며, 말레이시아 재정정보시스템인 iGFMAS도 자산회계기능이 있지만 통합되지 않은 별도의 시스템임

Country Updates

- Sokneov Heng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ambodia)
- Aguido da Silva (Ministry of Finance Timor-Leste)

■ 캄보디아는 자국의 자산관리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음

- 캄보디아의 공공부문 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기계 및 가구 설비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21년부터 국가자산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아직 오프라인 시스템이며, 일선 부처들이 데이터를 업로드할 예정임
- 캄보디아는 향후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자산의 평가와 기재 완료, 자산관리정보와 재정정보시스템의 통합을 계획 중이나, 불완전한 자산등록과 제한적인 자산평가 방법론을 당면 과제로 언급함


■ 동티모르는 자국의 자산등록 과정과 평가에 대한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음

- 동티모르는 현금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만 기재하고 보고함
- 현재 동티모르의 자산 중 자동차와 사무기기과 같은 비고정 자산만이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산은 재무부 국가자산국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회계보고는 재무국장이 담당하고 있음

- 동티모르 재무부는 인프라자산을 포함한 고정자산을 재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체계적인 등록과 가치평가를 위한 절차를 올해부터 시작하였으며, 2022년 말 고정자산 등록, 2023년 고정자산의 가치평가, 2024년 자산정보와 가치의 공시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점진적으로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

Closing Session

Closing Remarks

- 허경선 PEMNA 사무국장은 약 3시간에 걸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각국의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교류와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사와 참석자들에 감사를 표함
- 고정자산의 관리와 평가는 공공재정관리 분야에서 다소 새롭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이며, 이번 웨비나에서 논의된 지식과 경험이 관련 실무에 통찰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세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2022년도 인플레이션 조정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1년 11월 10일, 세금공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2022년도 인플레이션 조정을 발표함¹⁾
 - 이러한 조정은 미국 「내국세법(IRC)」에 근거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국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조정을 시행할 계획임
 - 2022년 과세연도의 개인 면세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0으로 유지함

- 2022년 과세연도에서 소득이 53만 9,900달러²⁾(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64만 7,850달러) 이상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은 37%로 유지됨

- 만 18세 미만 자녀의 불로소득(예: 투자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에게 '아동세금'이 적용됨
 - 자녀의 유일한 소득이 이자 및 배당금이고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부모의 세금신고 시 자녀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

<표 1> 미국 2022년 개인소득별 최고 세율 기준 변화

2021년도 개인소득	2022년도 개인소득	최고 세율
9,950달러 이하	1만 275달러 이하	10%
9,950달러 초과	1만 275달러 초과	12%
4만 525달러 초과	4만 1,775달러 초과	22%
8만 6,375달러 초과	8만 9,075달러 초과	24%
16만 4,925달러 초과	17만 50달러 초과	32%
20만 9,425달러 초과	21만 5,950달러 초과	35%
52만 3,600달러 초과	53만 9,900달러 초과	37%

출처: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1. 11. 16.

<표 2> 미국 2022년 공동신고 부부소득별 최고 세율 기준 변화

2021년도 부부소득	2022년도 부부소득	최고 세율
1만 9,990달러 이하	2만 550달러 이하	10%
1만 9,900달러 초과	2만 550달러 초과	12%
8만 1,050달러 초과	8만 3,550달러 초과	22%
17만 2,750달러 초과	17만 8,150달러 초과	24%
32만 9,850달러 초과	34만 100달러 초과	32%
41만 8,850달러 초과	43만 1,900달러 초과	35%
62만 8,300달러 초과	64만 7,850달러 초과	37%

출처: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1. 11. 16.

1)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tax-inflation-adjustments-for-tax-year-2022adjustments-for-tax-year-2022>, 검색일자: 2021. 11. 16.

2) 2021년 12월 7일 기준 원환 환산 시 1달러는 약 1,181.70원임

- 2021년도 자녀 불로소득 기준 금액은 2,200달러였고 세금신고 한도 금액은 1만 1천달러였음³⁾
- 2022년도 자녀 불로소득 기준 금액은 1,150달러이고 세금신고 한도 금액은 1만 1,500달러로 조정됨

■ 최저한세(AMT)에 대한 2022년 면제금액은 다음과 같음

- 결혼한 개인이 공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저한세 면제금액은 11만 8,100달러임
- 미혼 개인의 경우, 최저한세 면제금액은 7만 5,900달러임
- 부동산 및 신탁의 경우 최저한세 면제금액은 2만 6,500달러임
- 아동세금 대상 아동에 대한 2022년 최저한세 면제금액은 아동의 소득에 8,200달러를 합산한 금액 또는 미혼인 납세자의 일반 최저한세 면제금액 중 적은 금액임

■ 2022년 과세연도에 적용될 표준공제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음

- 과세연도에 공동으로 신고한 부부에 대한 표준공제액은 전년도보다 800달러 증가한 2만 5,900달러임
- 미혼 납세자와 기혼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표준공제액은 전년도보다 400달러

증가한 1만 2,950달러임

- 가장에 대한 2022년도 표준공제액은 전년도보다 600달러 증가한 1만 9,400달러임

■ 202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적격 납세자의 경우 전년도 공제금액인 6,728달러에서 6,935달러로 증가함

■ 2022년 과세연도의 해외 근로소득 공제액은 전년도 공제금액인 10만 8,700달러에서 11만 2천달러로 증가함

■ 2022년 과세연도 입양에 허용되는 최대 공제액은 전년도 공제금액인 1만 4,440달러에서 1만 4,890달러로 증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캐나다 - 2022년 최대 연금 가능 소득 발표]

■ 캐나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 1일, 2022년도 최대 연금 가능 소득을 발표함⁴⁾

- 발표된 2022년 캐나다 연금계획(이하 CPP)에 의한 최대 연금 가능 소득은 6만 4,900캐나다달러⁵⁾로 2021년에 비해 3,300캐나다달러⁶⁾ 증가함

3) IRS, "Tax on a Child's Investment and Other Unearned Income(Kiddie Tax)," <https://www.irs.gov/taxtopics/tc553>, 검색일자: 2021. 12. 7.

4) ICRA, "Canada Revenue Agency announce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for 202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1/canada-revenue-agency-announces-maximum-pensionable-earnings-2022.html>, 검색일자: 2021. 11. 18.

5)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74만원임

6)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8만원임



- 새로운 상한선은 캐나다의 평균 주급 및 급여의 증가분을 고려하여 CPP 입법 공식에 따라 계산됨
- 2022년도 6만 4,900캐나다달러 초과 소득자는 CPP에 추가 기여가 불가함

■ CPP는 은퇴연금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18세에서 70세까지의 캐나다(퀘벡 외 지역) 근로자 중 연간 3,500캐나다달러⁷⁾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CPP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 CPP 기여금은 임금에서 기본공제금(3,500캐나다달러)을 제외한 금액 중 매년 정해진 기여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절반씩 지불함
 - 단,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 CPP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는 자는 65세가 되면 CPP에 따라 연금을 받거나, 또는 70세가 지 지급일을 늦추어 할증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 기본공제금은 3,500캐나다달러로 유지됨
- 2022년 고용주 및 피고용자의 기여율은 2021년 각 5.45%에서 5.70%로, 자영업자 기여율은 2021년

- 10.9%에서 11.4%로 증가함
 - 2022년 CPP에 대한 고용주 및 피고용자 최대 기여금은 2021년 각 3,166.45캐나다달러⁸⁾에서 3,499.80캐나다달러⁹⁾로 증가하였음
 - 자영업자 최대 기여금은 2021년 6,332.90캐나다달러¹⁰⁾에서 6,999.60캐나다달러¹¹⁾로 증가하였음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영국 - 2021/22년 제2차 재정법안 발의]

- 영국 재무부는 2021년 11월 4일, 2021/22년 제2차 재정법안(Finance Bill)을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중 세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2), 13)}
- 2023년 4월에 예정된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19%→25%)과 연관된 세목에 대한 후속 입법을 진행함
 - 영국 경제에 대한 은행의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를 위해 법인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은행추가세(banking surcharge)를 2023년 4월부터 8%에서 3%로 인하하고, 그룹별 공제액을 2,500만 파운드¹⁴⁾에서 1억 파운드¹⁵⁾로 증액시킴으로써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킴¹⁶⁾

7)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만원임

8)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6만원임

9)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만원임

10)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2만원임

11)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5만원임

12) 영국 국회, *Finance (No. 2) Bill*, 2021. 11. 15., <https://bills.parliament.uk/bills/3060>, 검색일자: 2021. 11. 23.

13) KPMG, *Finance Bill 2022*, 2021. 11. 8., <https://home.kpmg/uk/en/home/insights/2021/11/tmd-finance-bill-2022.html>, 검색일자: 2021. 11. 23.

14)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0억원임

15)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00억원임

16) 영국 국세청, "Amendments to the surcharge on banking companies, Policy paper," 2021. 10.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mendments-to-the-surcharge-on-banking-companies/amendments-to-the-surcharge-on-banking-companies>, 검색일자: 2021. 11. 23.

- 해외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세율을 2023년 4월부터 25%에서 31%로 인상하여 법인세 최고 세율과의 차이를 유지시킴

●극장·박물관·미술관·오케스트라 등 창의 분야(creative sector)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시 상향 조정함¹⁷⁾

- 현행 세액공제(tax credit)율은 최고 25%이며,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최고 50%,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최고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됨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정비, 건물 보수공사 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 신설 등의 세제상 조치를 취함

- 자산관리 및 투자펀드 입지로서 영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산지주회사(Asset Holding Companies) 제도를 2022년 4월부터 도입함으로써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의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함¹⁸⁾

- 주택 외피(cladding) 보수공사 재원 충당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개발세(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 Tax)를 신설하여 2022년 4월부터 주

거용 부동산개발 그룹별로 2,500만파운드¹⁹⁾를 공제한 이익에 대해 4% 세율로 과세하기로 함²⁰⁾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아일랜드 - 탄소세 인상 계획 이행 및 환경세 검토 예고]

■아일랜드는 2021년 10월 13일, 2020년 「재정법(Finance Act)」을 통해 계획된 탄소세 이행의 일환으로 광물유류세(mineral oil tax)를 이산화탄소(CO₂) 1톤당 33.50유로²¹⁾에서 41.00유로로 7.50유로 인상하였고,²²⁾ 추후 추가적인 환경세 부과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함

●2020년 「재정법」은 탄소세를 CO₂ 1톤당 33.50유로에서 2030년 100유로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담음

- 금번 광물유류세 인상은 경유(light oil), 중유(heavy oil) 및 대체연료(substitute fuels)에 적용됨
- 천연가스탄소세(natural gas carbon tax) 및 고체연료탄소세(solid fuel carbon tax)는 2022년 5월 33.50유로에서 41.00유로로 7.50유로 인상할 예정임

17) KPMG, "Creative sector tax reliefs," 2021. 11. 8., <https://home.kpmg/uk/en/home/insights/2021/11/tmd-fb-creative-sector-tax-reliefs.html>, 검색일자: 2021. 11. 23.

18) 영국 국세청, "New tax regime for asset holding companies(AHCs)," Policy paper, 2021. 10.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ew-tax-regime-for-asset-holding-companies-ahcs/new-tax-regime-for-asset-holding-companies-ahcs>, 검색일자: 2021. 11. 23.

19)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환 환산 시 약 400억원임

20) 영국 국세청, "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 Tax, Policy paper," 2021. 10.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sidential-property-developer-tax/residential-property-developer-tax>, 검색일자: 2021. 11. 23.

21)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환 환산 시 1유로는 약 1,341원임

22)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187/21, 2021. 10. 14.,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1/no-1872021.aspx>, 검색일자: 2021. 11. 23.



-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2021년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에서 탄소세 인상 이외에도 다음의 환경세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예고함²³⁾
 - 경(輕)화물차에 대한 배출 기반(emissions-based) 조세제도 도입
 - 전기 이용 대안이 존재하는 상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 경유 및 휘발유 소비세(excise rates) 균등화(equalisation)
 - 차량 현물 혜택(Benefits-In-Kind) 관련 세제에 환경 기준 반영
 - 에너지 고효율장비 및 가스동력 상용차에 대한 투자 관련 가속상각 허용
 - 건물 에너지 효율화(building retrofit) 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수단 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 EU의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계획 이행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은 인하하기로 함²⁵⁾
 - 탄소세는 배출권 인증(emission certificate) 거래 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이산화탄소(CO₂) 1톤당 가격은 2022년 30유로²⁶⁾에서 2025년 55유로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 법인세율 및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현재 25%에서 2023년 24%, 2024년 23%로 인하할 예정이며, 소득세율은 두 번째 소득구간(1만 8천~3만 1천 유로)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35%에서 30%로 인하, 세 번째 소득구간(3만 1천~6만 유로)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42%에서 40%로 인하할 예정임
- 2022년 3월부터 암호화폐(crypto currencies)를 자본성 자산(capital assets)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함²⁷⁾
 - 과세 대상은 암호화폐 관련 실현 자본이득(realized capital gains) 및 당기소득(current income)임
 - 암호화폐를 다른 자산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경우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만, 암호화폐

[오스트리아 - 2022년 생태사회적 조세개혁법 발의]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1년 11월 8일, 2022년 생태사회적 조세개혁법(Ökosoziales Steuerreformgesetz 2022) 초안을 공개함²⁴⁾

23) 아일랜드 정부, *Climate Action Plan 2021*, 2021. 11. 5., <https://www.gov.ie/en/campaigns/2f87c-climate-action-plan-2021/>, 검색일자: 2021. 11. 23.
 24) 오스트리아 재무부, *Blümel: 2022 Budget stands for recovery,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2021. 10. 13., <https://www.bmf.gv.at/en/press/press-releases/2021/October-2021/Bl%C3%BCmel-2022-Budget-stands-for-recovery%2C-stability-and-sustainability.html>, 검색일자: 2021. 11. 23.
 25) EY, "Austrian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bill to reduce Corporate Income Tax and introduce Carbon Tax," 2021. 11. 18., https://www.ey.com/en_gl/tax-alerts/austrian-ministry-of-finance-publishes-draft-bill-to-reduce-corporate-income-tax-and-introduce-carbon-tax, 검색일자: 2021. 11. 23.
 26)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환 환산 시 1유로는 약 1,341원임
 27) Deloitte, "TAXATION OF CRYPTO CURRENCIES IN THE DRAFT OF THE ECOSOCIAL TAX REFORM LAW 2022 PART I," 2021. 11. 12., <https://www2.deloitte.com/at/de/blog/deloitte-tax-blog/2021/taxation-of-crypto-currencies-in-the-draft-of-the-ecosocial-tax-reform-law-2022-part-i.html>, 검색일자: 2021. 11. 23.

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경우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음

- 무상으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취득가액은 영(zero)으로 간주되고 처분 시 과세됨

- 법안은 2021년 12월 6일까지 검토를 거친 후 의회 의결을 통해 입법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벨기에 - 부가가치세 수정 법안 초안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10월 26일, 부가가치세 수정 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안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²⁸⁾

- 비영리단체가 정치, 노동, 종교, 이념,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분담금의 납부로 운영되고, 회원의 수익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용역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단, 이러한 면제가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 호텔, 모텔 및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에서 가구가 비치된 숙박시설(학생 기숙사 등)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함

- 사업 및 개인적인 목적으로 혼합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함

- 재화 및 용역의 실제 사용 또는 실제 사용의 부분에 기반하여야 함

- 과세관청에 사전 통보한 경우에 한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2023년 6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는 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의 취득에도 사용 가능함

- 납세자는 EU 내에서 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 및 신규 운송수단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통지해야 함

-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 적용 납세자 및 면세 납세자는 연매출이 2만 5천유로²⁹⁾를 초과하는 경우에 더 이상 고정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없음

-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1%, 경감 부가가치세율은 12%, 6%, 0%이며, 고정세율이란, 연 매출에 대한 고정 비율을 의미함³⁰⁾

- 농업 관련 사업자가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 적용 대상인 경우에 고정세율 및 일부 수정 조항을 반영한 규정이 추가될 예정임

28) DE KAMER.BE, "PROJET DE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ère de taxe sur la valeur ajoutée." <https://www.dekamer.be/FLWB/PDF/55/2279/55K2279001.pdf>, 검색일자: 2021. 11. 23.; IBFD, "Belgium Plans to Base VAT Deduction for Mixed Use of Goods and Services on Actual Use," 2021. 10.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8_be_1.html, 검색일자: 2021. 11. 23.

29) 2021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66만원임

30) belgium.be, "TVA," https://www.belgium.be/en/economy/business/taxation_and_accounting/tva, 검색일자: 2021. 11. 30.



-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잘못 신고된 경우와 같이 기존 부가가치세 채무에 대하여 환급액이 공제되는 상황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인공 이식 모발에 대하여 경감 부가가치세율(6%)이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은 미국령 사모아, 피지, 괌, 팔라우, 파나마,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누아투임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이탈리아 - 코로나19 관련 관광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독일 - 비협력 국가와의 지역 지정 시행령 공개]

- 독일 재무부는 2021년 10월 25일, 비협력 국가와 지역 목록을 지정한 시행령을 공개함³¹⁾
 - 「조세회피방지법(StAbwG)」 시행의 일환으로 비협력 국가와 지역 목록을 지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공개함
 - 「조세회피방지법」은 국제적 조세회피와 불공정 조세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해당 목록으로 지정되면 지정 지역의 거주자 기업과의 거래 관련 비용 공제제한, 강화된 정보보고 의무, 지정 지역의 거주자 기업과 거래하는 개인·기업들의 협력 의무가 부여됨

-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11월 7일, 관광산업 개선 촉진을 위해 두 종류의 세액공제제도를 법령 152/2021로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함³²⁾
 - 호텔, 야외 숙박시설, 해변시설, 온천시설, 마리나 및 테마파크를 포함한 관광, 오락(레크리에이션), 축제 및 단체회의 등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광 기업의 경우 2021년 11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아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허용함
 - 적격시설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지진피해 위험 감소
 - 건축 장벽 제거 및 적격시설 접근성 제고
 - 온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열 저장조 건설 및 장비 확보
 -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 개선

31)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 3 des Steueroasen-Abwehrgesetzes (Steueroasenabwehrverordnung StAbwV),"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10-25-StAbwV/0-Verordnung.html, 검색일자: 2021. 11. 29.;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Decree Listing Non-Cooperative States and Territor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8_de_1.html, 검색일자: 2021. 11. 29.

32) IBFD, "Italy Introduces Tax Credits for Tourism Enterprises," 2021. 1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10_it_2.html, 검색일자: 2021. 11. 16.

- 해외 여행사와 관광업체의 경우 2021년 11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화 제도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2만 5천유로³³⁾)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스페인 - 부동산 처분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개정]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11월 8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처분에 따른 차익과 관련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납부능력 원칙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객관적 계산법을 조정하고 직접계산법을 도입함³⁴⁾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6일, 부동산 처분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객관적 계산법을 정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Case 182/2021)³⁵⁾을 내림
 -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부동산 처분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법령(Royal Decree-Law 26/2021)으로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함

-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은 객관적 계산법을 일부 조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납세자 요청에 따라 직접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기존의 객관적 계산법을 일부 조정한 방법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 목적을 위해 토지 가치를 최대 15%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
 -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의 가치에 적용되는 종전의 연간 백분율을 재산 취득 후 경과된 연수에 따라 설정된 최대 계수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수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매년 갱신됨
- 납세자 요청에 따른 직접계산법의 경우
 -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a safe harbour rule)
 -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손실매각), 비과세 처리³⁶⁾

- 또한, 투기적 거래회피를 위해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새롭게 과세하도록 개정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33) 2021년 1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40만원임

34) IBFD, "Spanish Government Amends Method of Calculation of Taxable Base of Local Tax on Gains from Immovable Property Followin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21. 1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10_es_1.html, 검색일자: 2021. 11. 17.

35) 스페인 헌법재판소, https://www.tribunalconstitucional.es/NotasDePrensaDocumentos/NP_2021_102/2020-4433STC.pdf, 2021. 11. 3., 검색일자: 2021. 11. 17.

36) 단, 부동산 보유기간은 신규 취득자가 후속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익을 계산할 목적으로 갱신됨



[스페인 - 2022년도 예산 초안 국회 제출]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10월 15일, 2022년도 예산 초안을 국회에 제출함^{37), 38)}

- 주요 내용은 OECD 주도하에 이루어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안에 따라 법인세 15% 최저한세율을 설정, 기업의 주거지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및 연간 복지제도 기여금의 세액공제 혜택 축소 등이 있음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법인세의 핵심 요소는 법인세 15% 최저한세율 설정과 기업의 주거지 임대료 세액공제 축소 등임

- 법인세 15% 최저한세율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 이전 12개월 동안 연간 순매출액이 2천만유로³⁹⁾ 이상인 기업과 연결 조세제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적용됨
 - 단, 비정부기구(NGO), 개방형변동자본투자회사(SICAV), 투자펀드, 부동산투자회사 등 세율이 '0'이거나 인하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 금융회사와 탄화수소 매장지 및 지하 저장시설의 탐사,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일반세율은 30%이며, 최저한세율은

18%임

- 새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 일반세율은 15%이며, 최저한세율은 10%임

- 주거 특별임대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주거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85%에서 40%로 축소할 것을 제안함

■ 2022년 예산 초안에서 개인소득세의 핵심 요소는 복지제도에 대한 연간 기여금의 세액공제 축소임

- 개인연금, 사회보장 상호혜택, 보장저축제도, 회사저축제도 및 종속보험 등 복지제도의 연간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2천유로에서 1,500유로⁴⁰⁾로 축소할 것을 제안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네덜란드 - 정상가격원칙 적용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법안 채택]

■ 네덜란드 하원은 2021년 11월 11일, 정상가격원칙 적용의 불일치 방지(Combating mismatches in the applica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를 위한 법안을 채택함⁴¹⁾

37) IBFD, *Budget Bill 2022: Government Proposes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of 15%*, 2021.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5_es_1.html, 검색일자: 2021. 11. 17.

38) 스페인 의회, *21/000070 Proyecto de Ley de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para el año 2022*, 2021. 10. 15., 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4/CONG/BOCG/A/BOCG-14-A-70-1-C1.PDF, 검색일자: 2021. 11. 17.

39) 2021년 1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7억 8,280만원임

40) 2021년 1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267만원, 200만원임

41) News IBFD, "Netherlands Adopts Bill on Mismatches in Application of Arm's Length Principle," 2021. 11.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12_nl_3.html, 검색일자: 2021. 11. 18.

-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차이가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⁴²⁾
 - 이익 하향 조정에 대한 제한과 사업용 자산 이전과 관련된 이전가격 차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함⁴³⁾
- 네덜란드 법인과 외국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거래(arm's length)가 아닌 경우 이익의 조정은, 쌍방 국가의 이윤세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범위까지만 허용됨
- 현재 네덜란드의 이전가격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정상이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의 일방적인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⁴⁴⁾
 - 만약 법인세 면제 규정 등으로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거래 상대방 국가의 이익 하향 조정은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아닌 면제 대상국의 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만 하향 조정되어야 함
- 제안된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외국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사업

용자산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둠

-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감가상각 기준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함
 - 취득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가상각 기준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전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함임
 - 만약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해 상향 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정상가격이 아닌 이전가격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네덜란드 - 2022년 에너지세 추가 인하 법안 발표]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11월 5일, 2022년 에너지세 추가 인하 법안을 발표함⁴⁵⁾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10월 23일, 전기 및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42) KPMG, "Netherlands: Legislation addressing mismatches in application of arm's length principle," 2021. 11. 12.,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11/tnf-netherlands-legislation-mismatches-application-arms-length-principle.html>, 검색일자: 2021. 11. 18.

43) News IBFD, "Tax Plan 2022 - Netherlands Issues New Rules on Mismatches in Application of Arm's Length Principle," 2021.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9-22_nl_4%23tns_2021-09-22_nl_4, 검색일자: 2021. 11. 18.

44) EY, "Netherlands issues proposed legislation with unilateral 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mismatches," 2021. 9. 21., https://www.ey.com/en_gl/tax-alerts/netherlands-issues-proposed-legislation-with-unilateral-measures-against-international-transfer-pricing-mismatches, 검색일자: 2021. 11. 18.

45) News IBFD, "Netherlands Announces Further Cuts to Energy Tax for 2022," 2021. 11.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08_nl_1.html, 검색일자: 2021. 11. 18.



<표 3> 네덜란드 2022년 전기세 부과 기준 변화

사용구간	종류	2021년		2022년	변화
1	사용량 기준	0 ~ 10,000kWh		좌동	-
	1kwh당 부과액	0.09428유로		0.03329유로	-64.7%
2	사용량 기준	10,001 ~ 50,000kWh		좌동	-
	1kwh당 부과액	0.05164유로		0.04361유로	-15.5%
3	사용량 기준	50,001 ~ 10,000,000kWh		좌동	-
	1kwh당 부과액	0.01375유로		0.01189유로	-13.5%
4	사용량 기준	10,000,000kwh~		좌동	-
	1kwh당 부과액	개인	사업자	좌동	-
		0.00113유로	0.00056유로		

출처: 네덜란드 국세청,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overige_belastingen/belastingen_op_milieugrondslag/tarieven_milieubelastingen/tabellen_tarieven_milieubelastingen?projectid=6750bae7-383b-4c97-bc7a-802790bd1110, 검색일자: 2021. 11. 18.

평균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최대 430유로⁴⁶⁾까지 절약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음⁴⁷⁾

[중국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간예납액 납부유예 발표]

- 전체 가구 및 사무용 건물에 부과되는 표준 에너지세 할인액(Blastvermindering)을 인상하고, 전기세 구간별 부과액을 인하함
 - 표준 에너지세 할인액을 당초 발표한 230유로⁴⁸⁾에서 265유로⁴⁹⁾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전기세(energiebelasting) 구간별 부과액을 인하함
 - 첫 번째 구간 및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의 사용량별 부과액을 인하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11월 1일,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액 납부유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시(SAT Public Notice) [2021] No.30을 발표함⁵⁰⁾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중간예납하는 것에 상관없이, 2021년 4분기(10~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액을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음
 -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 국세청에 법인세예납신고표를 제출하고 법인세,

46)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만원임

47) News IBFD, "Netherlands Cuts Energy Tax to Counter Soaring Electricity and Gas Prices," 2021.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25_nl_1%23tns_2021-10-25_nl_1, 검색일자: 2021. 11. 18.

48)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만원임

49) 2021년 11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만원임

50) IBFD, "China Allow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ngaged in Manufacturing to Delay Tax Payments Due in Last Quarter of 2021," 2021. 1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02_cn_1.html, 검색일자: 2021. 11. 23.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하면 됨

- 소기업(small-sized enterprise)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천만원⁵¹⁾ 미만이어야 하며, 중기업 (medium-sized enterprises)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억⁵²⁾ 미만이어야 함
- 소기업은 2021년 4분기 중간예납액 전액을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나, 중기업은 2021년 4분기 중간예납액의 50%만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싱가포르 -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중재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 발표]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1년 10월 23일, 이중과세방지협약(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이하 DTA)의 중재(arbitration)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함⁵³⁾
-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를 진행 중인 납세

자가 이중과세 등 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방법 등이 포함됨

- 세법상 거주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과세 결과가 DTA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⁵⁴⁾
- 납세자가 제기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 절차로 DTA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하지만, 이러한 상호합의 절차가 상호합의 시작일로부터 2~3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 즉,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정 기간(2~3년) 이내에 합의되지 못했으며, 합의를 위해 기간 연장 등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함⁵⁵⁾
- 중재 절차 신청방법은 중재 절차가 필요한 이유 등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싱가포르 국세청 국제조세 관련 부서⁵⁶⁾에 제출하면 됨
- 중재 절차 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51)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억원임

52)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3억원임

53) IRAS e-tax Guid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2021. 10. 23.,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 검색일자: 2021. 11. 23.

54) IBFD, "Singapore Updates Tax Treaty Guidelines to Include Guidance on Arbitration," 2021. 10.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0-25_sg_1.html, 검색일자: 2021. 11. 23.

55) IRAS e-tax Guid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2021. 10. 23.,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 검색일자: 2021. 11. 23.

56) 싱가포르 국세청의 국제조세 관련 부서의 명칭은 "The Competent Authority International Tax and Relations Division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임



‘final offer’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들이 해결책을 각각 제시하면 인선된 중재 패널이 제시된 해결책 중 한 가지를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함⁵⁷⁾

- 단, 중재 절차가 진행된 후 과세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중재 절차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종결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상한을 6천만루피아⁵⁹⁾로 인상하며 50억루피아⁶⁰⁾ 이상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35%로 인상함
- 2022년 과세연도부터 표준 법인세율을 22%로 유지함
-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서비스 및 기타 여러 유형의 서비스와 같이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기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VAT를 면제하는 등 면세범위를 축소함
- VAT 세율을 2022년 4월부터 10%에서 11%로, 이후 2025년부터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인도네시아 - 세법 개정안 대통령 비준]

■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9일, 지난 9월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을 비준함⁵⁸⁾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사치세법」 등에 대해 개정함

- 해당 세제 개혁안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도입되는 납세자의 미공개 자산 신고를 허용하는 조세 사면 프로그램이 도입됨
- 이전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 납세자는 미신고 자산별로 6~11% 세율이, 그 외의 개인 납세자는 자산별로 12~18%의 세율이 과세됨

<표 4> 인도네시아 소득세 과세구간 및 한계세율의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과세구간	기존 한계세율	개정 과세구간	개정 한계세율
1	~ 5천만루피아 이하	5%	~ 6천만루피아 이하	5%
2	5천만 초과 ~ 2억 5천루피아 이하	15%	6천만 초과 ~ 2억 5천루피아 이하	15%
3	2억 5천 초과 ~ 5억루피아 이하	25%	2억 5천 초과 ~ 5억루피아 이하	25%
4	5억 루피아 초과 ~	30%	5억 초과 ~ 50억루피아 이하	30%
5	-	-	50억 루피아 초과 ~	35%

출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7) IRAS e-tax Guid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2021. 10. 23.,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income-tax_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s-(dtas)_3rd-edition.pdf), 검색일자: 2021. 11. 23.

58) IBFD, "President Ratifies Tax Reform Bill,"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1-05_id_1.html, 검색일자: 2021. 11. 16.

59) 2021년 10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3만 4천원임

60) 2021년 10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1,950만원임

<표 5> 인도네시아 조세사면 프로그램 비교

구분	정책 1	정책 2
주체	(이전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 납세자	개인 납세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12월 31일 이전 조세 사면 프로그램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연간 세금신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한 자산
최종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로 송금되지 않은 외국 자산 신고의 경우 11% 송금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8% 정부 증권/천연자원 처리 부문(다운스트림)/재생 에너지 사업 활동에 투자된 송금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로 송금되지 않은 외국 자산 신고의 경우 18% 송금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14% 정부 증권/천연자원 처리 부문(다운스트림)/재생 에너지 사업 활동에 투자된 송금된 해외 자산 및 국내 자산의 경우 12%

출처: IBFD, President Ratifies Tax Reform Bill

-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탄소세가 도입됨
 -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기업에 대해 이산화탄소 환산(CO₂e) 1kg당 30IDR⁶¹⁾로 탄소세가 부과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 가격 인하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의 약 52%, 경유 가격의 약 47%를 차지했음

-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대한 인도의 유류세는 1리터당 5루피,⁶⁴⁾ 경유는 10루피⁶⁵⁾로 인하됨
- 이러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연방 정부는 5천 500억루피⁶⁶⁾에서 6천억 루피⁶⁷⁾ 사이의 세입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인도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 인도 정부는 소비 증진과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함⁶²⁾
- 인도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석유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2021년 유가 급등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음⁶³⁾

[OECD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현황보고서 발행]

- OECD는 2021년 10월 27일, G20 국가들의 탄소

61)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원임
 62) Taxnote, "India Lowers Fuel Taxes to Ease Impact Of Rising Prices," 2021. 11. 8.
 63) REUTERS, "India cuts fuel taxes ahead of festive season to boost economy,"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reduces-excise-duty-petrol-diesel-source-2021-11-03/>, 검색일자: 2021. 11. 24.
 64)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3원임
 65)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6원임
 66) 2021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조 7,670억원임
 67) 2021년 1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조 5,640억원임



가격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탄소가격제의 적극적 확대 및 국내·외 정책 조율·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함⁶⁸⁾

- 2021년 기준 탄소배출량 대비 유효(effective) 탄소가격제 적용률(coverage) 항목에서 한국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96.5%)를 기록하였으며,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제 적용률 항목에서는 3위(79.6%)를 기록함
 - 유효(effective) 탄소가격제 적용률은 전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s), 탄소세(carbon tax), 연료소비세(fuel excise)가 가격에 가산된 CO₂ 배출량의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G20 평균은 2018년 37.2%에서 2021년 48.7%로 11.5%p 상승함
 - 2021년 유효 탄소가격제 적용률(coverage)은 한국 96.5%(1위), 캐나다 88.2%(2위), 독일 88.1%(3위), 이탈리아 85.1%(4위), 일본 78.6%(5위), 영국 68.3%(8위), 중국 47.5%(11위), 미국 38.4%(14위), 호주 22.4%(15위)를 기록함
 -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제 적용률은 전체 CO₂ 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가 가격에 가산된 CO₂ 배출량의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G20 평균은 2018년 15.5%에서 2021년 28.4%로 12.9%p 상승함
 - 2021년 명시적 탄소가격제 적용률은 캐나다 85.5%(1위), 독일 85.3%(2위), 한국 79.6%(3위),

일본 77.2%(4위), 프랑스 67.3%(5위) 순임

- 2021년 기준 CO₂ 1톤당 배출가격 항목에서, 한국은 G20 국가 중 유효(effective) 탄소가격 5위(43.03유로⁶⁹⁾),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 6위(10.34유로)를 기록함
 - 유효(effective) 탄소가격(CO₂ 1톤당)은 배출권거래제 가격, 탄소세, 연료소비세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G20 평균은 2018년 16.82유로에서 2021년 18.71유로로 1.89유로 상승함
 - 2021년 유효 탄소가격(CO₂ 1톤당)은 영국 95.95유로(1위), 이탈리아 93.99유로(2위), 프랑스 93.10유로(3위), 독일 78.22유로(4위), 한국 43.03유로(5위), 일본 31.59유로(7위), 미국 15.23유로(13위), 중국 8.59유로(15위)를 기록함
 - 명시적(explicit) 탄소가격(CO₂ 1톤당)은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탄소세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G20 평균은 2018년 1.59유로에서 2021년 3.62유로로 2.03유로 상승함
 - 2021년 명시적 탄소가격(CO₂ 1톤당)은 독일 30.26유로(1위), 프랑스 29.43유로(2위), 캐나다 21.78유로(3위), 영국 17.56유로(4위), 이탈리아 15.44유로(5위), 한국 10.34유로(6위) 순임
- OECD는 탄소가격제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탄소가격제가 완벽한 해결책(silver bullet)은 아니므로 국내·외 정책 공조와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함

68) OECD, "G20 economies are pricing more carbon emissions but stronger globally more coherent policy action is needed to meet climate goals," 2021. 10. 27., <https://www.oecd.org/tax/tax-policy/g20-economies-are-pricing-more-carbon-emissions-but-stronger-globally-more-coherent-policy-action-is-needed-to-meet-climate-goals-says-oecd.htm>, 검색일자: 2021. 11. 23.

69) 2021년 11월 23일 기준 원환 환산 시 1유로는 약 1,341원임

- G20 국가 탄소배출량의 절반 가량에 아직 탄소 가격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부과되는 가격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므로 좀 더 유의미한 (significant) 진전이 필요함
- 생산기지를 규제가 약한 해외로 옮기는 탄소 누출(leakage)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 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등 국제적 조율(co-ordination)이 중요함
- 명시적 탄소가격제가 정책효과⁷⁰⁾·부작용 억제⁷¹⁾·국가세수·공기정화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정책 수단임을 설명하고, 연료소비세를 탄소 함유량에 연동시키는 등의 탄소가격제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 여지가 있음을 언급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EU - CbCR 지침의 공식 채택 최종 승인]

- EU 의회는 2021년 11월 11일, CbCR 지침(Directive)의 공식 채택을 최종 승인하였음⁷²⁾
- EU 및 EU 역외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이 EU 내에서 지점 및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최근 2개의 연속된 회계연도의 연결 총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⁷³⁾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 및 여타 조세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상세 관련 정보는 모든 27개 EU 회원국 및 조세 목적을 위한 EU 비협력 지역 목록 부록 1, 2에 포함된 관할국에 공개되어야 하며, 다른 관할국에는 총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으로 충분함

- 지침은 서명 후 관보에 공표되고 그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발효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은 지침을 내국법으로 입법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4월 12일 회계 지침(Directive 2013/34/EU)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은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CbCR과 관련한 Action 13에 기초한 것으로 OECD/G20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의무를 요구함

- 해당 제안은 2019년 EU 경쟁이사회(COMPET)에서 동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21년 2월 25일 다시 제안되어 회원국의 필요한 동의를 얻어 2021년 6월 1일 지침 규정과 관련한 최종 협의를 마쳤음

- EU 경쟁이사회는 2021년 9월 28일 아래 두 가지의 중요한 수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종 협의의 내용과 유사하게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하기로 함
 - 조세 목적을 위한 EU 비협력 지역 목록의 부록 2에 포함된 관할국 정보의 국가별 보고 기준 명확화
 -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산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70) 가격을 통한 통제는 사용자에게 절감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공하게 되며, 가격 대신 기준(standards) 요건을 부과할 경우 기준을 달성 시 추가적인 개선 유인이 사라지게 됨

71)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기준(energy efficiency standards)에는 사용 단가를 낮춰서 소비를 늘리는 반동효과(rebound effects)가 존재함

72) EY, "European Parliament provides final approval needed for formal adoption of public CbCR Directive," https://www.ey.com/en_gl/tax-alerts/european-parliament-provides-final-approval-needed-for-formal-adoption-of-public-cbcr-directive, 검색일자: 2021. 11. 29.

73) 2021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01억 7,500만원임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이사회·의회, 2022년 EU 연간 예산 합의(2021. 11. 24)^{1),2)}

- 2022년 예산은 EU 장기 예산인 2021~2027년 EU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의 두 번째 단년도 예산안으로 위기 대응에서 지속가능한 회복으로의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
- 확정된 2022년 예산금액은 승인기준 1,695억유로, 지출기준 1,706억유로³⁾
 - 회복 지원을 위해 경제, 사회 및 영토 결속에 497억유로를 투자

-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⁴⁾ 531억유로,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 9억 7,190만 유로를 지원하여 농·어업 종사자 지원 및 어업 부문 탄력성 등 강화
- Horizon 유럽에 122억유로를 편성하여 연구(건강, 디지털, 산업, 우주, 기후, 에너지 및 이동성 등의 분야)를 지원하며, 관광 분야를 포함하여 경쟁력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일 시장 프로그램에 6억 1,350만유로를 지원
- EU4 Health 프로그램에 8억 3,970만유로를 배정하여 EU 보건 연합을 지원하고 유럽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

■ EU 집행위원회, European Semester⁵⁾의 가을패키지의 일환인 2021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1. 11. 11.)^{6), 7)}

1) EU 집행위,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EU Annual Budget 2022," 2021. 11.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5942, 검색일자: 2021. 11. 26.; EU 의회, "EU Budget 2022 approved: investing more for a strong recovery," 2021. 11. 24.,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11118IPR17624/eu-budget-2022-approved-investing-more-for-a-strong-recovery>, 검색일자: 2021. 12. 8.; EU 이사회, "Agreement reached on 2022 EU budget," 2021. 11. 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1/11/16/eu-budget-for-2022/>, 검색일자: 2021. 12. 8.

2) 2021년 6월 8일 EU 집행위에서 2022년 EU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7월 14일 EU 이사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후 10월 21일 EU의회에서 EU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KIPF 재정동향을 참고 바람(EU 집행위, 2022년 EU 예산안 발표 - 2021 상반기 KIPF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568>; EU 이사회, 2022년 EU 예산안 입장 발표 - 2021년 7월호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520>; EU 의회, 2022년 EU 예산 수정안 발표 - 2021년 10월호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569>)

3) 승인기준(commitments)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 지급기준(payments)은 당해 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

4) EU에서 식량 안보,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유럽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농업정책으로 EU 농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환경 친화적인 농업 관행을 촉진하고자 함(<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541f0184-759e-11e7-b2f2-01aa75ed71a1>, 검색일자: 2021. 12. 9.)

5) EU의 경제·재정 정책의 조정 및 감축에 대한 연간 순환 과정으로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율에 맞추어 조정함 European Semester의 주요 과정

- 준비단계(전년 11~12월) Autumn Package 연간 지속가능한 성장 조사, 경고체계보고서, 유로지역 회원국 예산안 평가, 유로지역에 대한 권고안 등 발표
- 정책자침(1~3월) Winter Package 심층검토, 국가별 보고서 등 발표
 - 국가별 목표, 정책, 계획(4~7월) 회원국별 국가개혁 프로그램,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 봄패키지(Spring Package) 국가별 정책권고, 안정성장협약 관련 주요 결정 발표
- 실행(7월~연말) - 유로지역 회원국별 차년도 예산 계획 제출

6)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1*, 2021. 11. 11.,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autumn-2021_en

7) EU 집행위는 연 4회 경제전망(겨울 중간전망, 봄 전망, 여름 중간전망, 가을 전망)을 발표

- (경제성장률) 유로지역⁸⁾과 EU⁹⁾의 GDP 성장률은 2021년 둘 다 5.0%로 올해 5월 봄 경제전망에 비해 각각 0.7%p, 0.8%p 상승했으며, 2022년 역시 각각 4.3%로 전망되고, 2023년은 유로지역 2.4%, EU는 2.5%로 전망
- (물가) 유로지역 물가 상승률(HICP¹⁰⁾)은 2021년 2.4%로 올해 5월 봄 전망치 대비 0.7%p 상승했으며, 2022년은 2.2%, 2023년 1.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은 올해 4분기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2021년 2분기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으로 2022년에 노동시장은 회복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
- (재정) 경제가 회복에서 확대로 전환되면서 긴급 지원대책의 완화, 세입의 반등으로 재정적자가 2022년에 약 절반으로 감소하여 2022년과 2023년 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EU GDP 대비 재정적자 2022년 3.6%, 2023년 2.3% 전망)
- (주요 리스크) 팬데믹의 영향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EU 대내·외 경제회복은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많은 국가에

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재도입될 수도 있음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 가을패키지의 일환인 2022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발표(2021. 11. 24.)¹¹⁾

* 경고체계보고서(AMR)는 EU의 경제 기능을 저해하는 불균형(imbalance)¹²⁾을 확인하고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s Procedure: MIP)의 첫 단계인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국가를 선별함

- 팬데믹으로 채무 감소세가 중단되었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가속화되었으며 거시 경제적 위험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으며 회복·복구기금이 위기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021년 12개* 회원국이 심층검토(in-depth review) 대상이며 이들 회원국은 2020년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에서 심층검토 적용을 받았음
- *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 크로아티아, 프랑스¹³⁾, 독일¹⁴⁾,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은 '불균

8)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9) 유로지역 19개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27개국(유로지역 19개국,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10)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1)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Semester: Alert Mechanism report," 2021. 11. 24., https://ec.europa.eu/info/files/2022-european-semester-alert-mechanism-report_en, 검색일자: 2021. 12. 8.

12) 불균형은 경상수지, 일반정부 채무, 실업률 등 14개의 주요 지표와 추가 보조 지표들을 기초로 평가

13) 2021년 6월 EU 집행위는 프랑스가 높은 정부 채무(2020년 GDP 대비 115%)와 취약한 경쟁력(weak competitiveness,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와 수출 시장 점유율 등으로 평가)과 관련하여 거시경제 불균형 상태로 결론 내림

14) 2021년 6월 EU 집행위는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2020년 GDP 대비 6.9%),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 7.1%), 정부채무 지표(2020년 GDP 대비 68.7%, 2021년 71.4% 전망) 등에서 기준치를 넘겨 거시경제 불균형의 상태로 평가함



형(imbbalances)’을 나타냄
-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는 ‘과도한 불균형(excessive imbalances)’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유로지역 회원국의 2022년 예산안평가 발표(2021. 11. 24.)¹⁵⁾
 - 집행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의 전환과 2022년에도 안정성장협약 재정준칙 일반면책조항의 적용을 고려하여 2022년 유로지역 회원국 예산안 평가
 - (경제 전망) 유로지역의 경제 재개는 강력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민간 소비와 투자 반등에 따라 5%로 전망되고, 2022년에도 4.3% 성장률이 전망됨
 - (재정 전망) 회원국 예산안의 202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4.1%, 채무 비율은 GDP 대비 96%이며, 회원국들은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회복세 유지를 위한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음
 - (위기 대응 방향) 회원국들은 ‘팬데믹 위기와 관련된 조치’에서 ‘회복세 유지를 위한 조치’로 방향을 선회
 - (회복·복구기금) 회복·복구기금의 상환하지 않는(non-repayable) 재정지원 혹은 보조금은 2022년 전체 회복 지원책의 24%를 차지할 예정이며, 회원국들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보장

혹은 유예형태로 가계와 기업에 풍부한 유동성을 지원함

- (투자)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투자는 2022년 모든 회원국에서 유지되거나 전반적으로 유지될 계획
- (재정기조) 유로지역의 재정기조는 2020~2022년 기간 동안 확장 기조로 전망되고, 일시적인 긴급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조정하면 2022년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재정지지 기조를 유지할 계획
- (고채무 회원국 평가) 이사회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모든 회원국은 회복·복구기금을 사용하여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유지
- (저·중채무 회원국 평가) 이사회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슬로바키아와 몰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은 회복·복구기금을 포함하여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계획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IMF

- IMF, “Not Yet on Track: Climate Threat Demands More Ambitious Global Action” 기사 (2021. 10. 31.)¹⁶⁾ 및 IMF 총재, COP26 CPLC*에서

15)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 2022 Draft Budgetary Plans Overall assessment, 2021. 11. 24.,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022-draft-budgetary-plans-overall-assessment_en, 검색일자: 2021. 12. 7.

16) Kristalina Georgieva, “Not Yet on Track: Climate Threat Demands More Ambitious Global Action,” 2021. 10. 31., <https://blogs.imf.org/2021/10/31/not-yet-on-track-for-net-zero-climate-threats-demands-more-ambitious-global-action/>, 검색일자: 2021. 12. 8. 본 게시글은 해당 저자의 견해이며, IMF, IMF 이사회, IMF 집행부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음

연설(2021. 11. 2.)¹⁷⁾

*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탄소가격주도연합회의

- 현재 발표된 세계 각국의 정책들은 지구 온난화를 파리협정 목표인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2°C 이하로 억제하기에는 미흡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기준선보다 30% 감축이 필요하고 1.5°C 목표를 위해서는 55% 감축이 필요
-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감축 노력(ambition)을 기울여야 함
 - 세계 온실가스의 3/4 이상을 배출하는 135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선진국은 43%, 고소득 신흥국은 12%, 저소득 신흥국은 6% 감축을 선언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
 - 2°C 목표를 위해서는 각각 45%, 30%, 20%, 혹은 65%, 20%, 10% 등과 같은 추가 감축이, 나아가 1.5°C 목표를 위해서는 70%, 55%, 35%와 같은 더욱 적극적인(ambitious) 감축이 필요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준 역시 더 강화해야 하며, 탄소 가격제가 민간투자를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환케 하는 가격 신호를 제공할 수 있음
 -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유지하려면 현재 1톤당 3달러 수준의 탄소가격을 2030년까지 75달

러 이상으로 높여야 함

- 탄소 가격제의 국제적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IMF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를 제안한 바 있음
 - 고 배출국 중심으로 제도 설계 후 참여국 확산, 모든 참여국의 공통 가격 하한 합의, 발전 수준 등에 따른 하한 차이 허용, 동등한 감축효과가 있는 비가격정책 허용, 전력·산업 부문 배출량에서 시작해 전체 배출량으로 적용 범위 확대, 명목 탄소가격에서 향후 유효 탄소가격으로 전환 등을 핵심 요소로 함¹⁸⁾
 -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동등한 결과를 달성하는 비가격 조치를 허용함으로써 실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경 간 탄소 조정¹⁹⁾을 피할 수 있어 협력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최근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탄소가격제 개혁이 경제 혹은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나아가 탄소 세수(GDP 대비 1% 혹은 그 이상)를 근로세 인하 혹은 공공투자 확대에 활용함으로써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음
 - 다만, 동 개혁은 취약층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 공공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함

■ IMF, 프랑스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1. 11. 9.)²⁰⁾

17) IMF, "Remarks by the Managing Director at the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 Meeting at COP26," 2021. 11. 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11/03/sp110221-Georgieva-COP26-Carbon-pricing-leadership-coalition>, 검색일자: 2021. 12. 8.
 18) Ian Parry, Simon Black, and James Roaf,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among Large Emitters," IMF Staff Climate Notes, IMF, 2021.
 19) IMF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가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임
 20) IMF, "France: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1 Article IV Mission," 2021. 11. 9.,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11/09/mcs-France-Staff-Concluding-Statement-2021-Article-IV-Mission>, 검색일자: 2021. 12. 8.



* 이사회 상정 전 협의단 입장문임²¹⁾

- 프랑스는 공공 지원과 견고한 민간투자에 힘입어 강건한 경제 회복이 진행 중임
 - 프랑스 경제는 2020년 유럽 평균(유로지역 -6.3%, EU -5.9%)보다 심각한 -8.0%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 3분기에는 위기 이전 GDP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며, 투자는 빠르게 회복해 이미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2021년 2분기와 3분기 강력한 소비 및 투자 반등에 힘입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6.75%(2021년 10월 WEO 6.3%)로 상향 조정되었고 중기적으로는 위기 이전 추세보다 소폭 낮은 전망
- 2020년과 2021년의 확장적 재정 지원은 위기를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 2021년 초 제3차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비상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가 위기가 진정되면서 지원규모를 축소하기 시작
 - 프랑스 활성화(France Relance) 계획과 같은 투자 정책은 위기로부터의 상흔효과를 억제하는 동시에 친환경 회복에 기여
- 2022년에는 다소 확장적(moderately expansionary) 재정 기조가 적절하며 2023년부터는 점진적이지만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필요
 - 2022년 예산법안은 다소 확장적으로 평가되는데 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적절하며, 추가적인 지출은 투자 촉진, 고용 압력 완화, 자

원 재배분 촉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전망기간 동안 GDP 대비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럽 주변국 대비 높은 채무 수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 회복세가 진행되면 완충 자본을 재건하고 위기 이전 중기재정목표로 복귀하려는 노력이 필요

■ IMF, 중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1. 11. 18.)²²⁾

※ 이사회 상정 전 협의단의 협의 완료 발표문임²³⁾

- 중국은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며 하방 위험이 누적되고 있음
 - 코로나19 재확산과 확산 방지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 회복 지연과 정책 지원의 급속한 축소가 회복 둔화를 야기했으며 최근 전력난과 부동산 투자 둔화도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 소비 취약성, 금융 취약성, 장기적으로 생산성 하락, (미-중) 탈동조화 심화, 노동 인구 감소 등이 현재 성장률 전망(2021년 8.0%, 2022년 5.6%)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균형적(balanced)이고 포용적이며 친환경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거시경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
 - 2021년 크게 축소된 재정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립 기조로 전환하고 지출 방향은 전통적인 인프라 지출보다는 사회 보호를 강화하고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21) 2020년 연례협의 결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월호, 2021을 참고 바람

22) IMF, "IMF Staff Completes 2021 Article IV Mission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11. 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11/18/pr21338-china-imf-staff-completes-2021-article-iv-mission-to-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1. 12. 8.

23) 2020년 연례협의 결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월호, 2021을 참고 바람

- 낮은 근원 인플레이션과 여전히 상당한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완화적이어야 함
 - 내수 시장 개방 확대, 국유기업 개혁, 공기업·민간기업 간 경쟁중립성 확보, 친환경 투자 촉진, 사회 보호 강화 등 핵심 개혁의 동시 이행이 필요
-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선임연구원>



OECD

■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발표(2021. 12. 1.)^{24), 25)}

- (개요) 세계 경제는 회복경로에 있으나 국가별·영역별 상이한 경제 상황에 따른 경제회복 격차가 예상되며 불균형한 성장과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보건역량, 정책조합, 경제의 각 부문에서 국가 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공급망 차질),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불균형한 모습이 드러남
 -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려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세계 경제 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 5.6%, 2022년 4.5%로 성장 추세를 유지하다가,

2023년 3.2% 수준으로 전망됨

- 2022년 말까지 글로벌 백신보급 노력을 통한 국경 간 활동제한 철폐, 거시경제정책 지원, 낮은 가계 저축률을 통한 수요 증대 등을 가정하여 전망
-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성장 추세는 2023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국들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

● (주요국 경제 전망)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 및 속도가 계속 상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꾸준한 고용률의 상승, 가계저축 비율의 감소, 인프라에 대한 추가 재정지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21년 5.6%, 2022년 3.7%로 전망
 - 지역별 백신접종 격차를 감안할 때 추가 국지적 코로나19 위험이 남아 있어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지연시킬 수 있음
- (일본) 2022년 가계저축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민간소비를 강화하고 최근 발표된 2022년 재정 패키지의 지원 등으로 2022년 GDP 성장률은 3.4%로 전망되나 2023년에는 경제회복 모멘텀이 약해지며 2023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예상
- (유로지역) 유럽전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기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으나 2022~2023년 차세대 EU 보조금(Next Generation EU grants) 집행, 가계저축률 감소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24)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Volume 2021 Issue 2: Preliminary version, No.110 OECD Publishing, Paris, 2021,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december-2021/>, 검색일자: 2021. 12. 6.

25) OECD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5월과 11월에 정식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재정동향은 제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및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5.2%, 4.3%로 전망

- (한국) 점진적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소비 및 고용 부문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GDP 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7%로 전망
-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리스

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OECD는 한국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권고함

- (중국) 초기 발병에 대한 강력한 공중 보건 대응, 수요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2021년까지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산업 위축, 인프라 투자 감소 등으로 2022년 이후 완만한 경제성장이 전망됨

<표 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1 Q4	2022 Q4	2023 Q4
실질 GDP 성장률 ¹⁾								
세계 ²⁾	3.3	-3.4	5.6	4.5	3.2	3.8	3.9	3.2
G20 ²⁾	3.5	-3.1	5.9	4.7	3.3	4.1	3.8	3.3
OECD ²⁾	2.2	-4.7	5.3	3.9	2.5	4.4	3.3	2.2
미국	2.4	-3.4	5.6	3.7	2.4	5.1	3.0	2.3
유로 지역	1.9	-6.5	5.2	4.3	2.5	4.9	3.3	2.1
일본	0.8	-4.6	1.8	3.4	1.1	0.0	3.1	0.9
한국	-	-0.9	4.0	3.0	2.7	-	-	-
Non-OECD ²⁾	4.3	-2.2	5.8	4.9	3.8	3.2	4.3	1.0
중국	6.8	2.3	8.1	5.1	5.1	3.9	5.5	5.0
인도 ³⁾	6.8	-7.3	9.4	8.1	5.5	-	-	-
브라질	-0.3	-4.4	5.0	1.4	2.1	-	-	-
실업률 ⁴⁾	6.5	7.1	6.2	5.5	5.2	5.7	5.4	5.1
인플레이션 ^{1), 5)}	1.7	1.5	3.5	4.2	3.0	4.9	3.4	3.1
재정수지 ⁶⁾	-3.2	-10.4	-8.4	-5.2	-3.7	-	-	-
세계 실질 무역 성장률 ¹⁾	3.4	-8.4	9.3	4.9	4.5	6.1	5.2	4.2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GDP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6)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Table 1.1. 재구성

- 2021년 및 2022년 GDP 성장률은 각각 8.1%, 5.1%로 예상됨
- (인도) 2021년 봄 코로나19 변종바이러스의 확산세 이후 경제가 재개되었으나 인적자본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감소로 중기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국내 수요 증가와 백신접종의 진전으로 2021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긴축 통화정책으로 성장이 억제되어 경제성장률은 2022년 1.4%, 2023년 2.1%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전망) 노동시장 여건, 세계무역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고용률은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은 향후 2년 동안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며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2022년 5.5%, 2023년 5.2%로 전망
-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1~2022년 기간 중 정점에 도달한 후 2023년 3%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팬데믹 이전 대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역) 세계무역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례적으로 전염병 관련 의료 및 재택근무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받았던 일부 국가(중국, 아시아 및 일본)의 수출은 2021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팬데믹 이전 전망치를 상회할 수도 있으나 2022년부터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강력한 내수 증가로 2021년 수입이 증가하였고 202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상·하방 요인) 변이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 인플레이션 지속가능성, 중국의 성장 추세 둔화, 통화정책의 조기 긴축 우려 등 위험 요인이 존재
 -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 배포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백신 배포 지연, 기존 백신의 효율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파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최근 에너지 비용의 급증, 공급 부족, 높은 운송비용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의 성장 추세 둔화) 부동산 시장의 위험으로 인한 파급효과, 인프라 투자 감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 등의 하방요인이 존재
- (정책권고) 글로벌 백신보급과 성장 친화적 재정운용을 권고하고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함
 - 변이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에 백신을 배포하는 것이 중요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성장 친화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지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설계가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



환, 보건의료체제 개편 등 보건의료 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의회, 육상교통정리 제2차 연장 법안(Further Surface Transportation Extension Act of 2021) 통과(H.R. 5763; P.L. 117-52) 의결(2021. 10. 28.)²⁶⁾

* 미국의 일반적인 연방지원 고속도로(federal-aid highway)와 교통체계(transit programs) 관련 예산은 「육상교통정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지난 10월 2일에 육상교통정리법안 1차 연장 법안(H.R. 5434)이 의회를 통과하여 입법 발효되었으나 만료 시한(10월 31일)이 다가오면서 12월 3일까지 재차 연장함

■ 미 백악관,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기후변화 대응 정책안(Build Back Better Framework) 발표(2021. 10. 28.)²⁷⁾

- (배경) 지난 4월 28일 교육, 가족, 아동 등에 대

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담긴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이 발표된 이후 규모 및 재원조달에 대한 조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

* 가족계획은 발표 당시 향후 10년 동안 총 약 1조 8천억달러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주요 내용) 경제능력(economy's capacity) 증대를 위한 아동/가정/부양 관련 투자, 클린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투자, 노동자 지원, 중산층 강화 등을 위한 주택/교육 투자 등 총 1조 7,500억달러 규모 소요 전망

* 이민개혁 정책이 포함될 경우 1천억달러 추가 소요 전망

- (주요 재원조달 계획)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최저세 15% 부과 및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tax) 15%, 주식 환매 부가세(stock buybacks), 부유층(소득 40만달러 초과자)에 대한 메디케어 세금 허점 차단, 조세격차²⁸⁾(Tax Gap) 감소를 위한 국세행정(IRS enforcement) 투자 등 약 1조 9천억달러 규모

■ 미 의회 하원,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H.R. 5376) 통과 의결(2021. 11. 19.)

- (CBO 비용 추계²⁹⁾) 11월 18일에 공개된 CBO의 비용 추계 보고서³⁰⁾에 따르면 더 나은 재건(BBB) 법

26)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0/31/bill-signed-h-r-5763/>, 검색일자: 2021. 12. 10.

27)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0/28/build-back-better-framework/>, 검색 일자: 2021. 11. 9.

28) 조세격차: The tax gap is the difference between taxes paid and taxes owed by law (법적인 근거하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차이 (CRFB, Primer: Understanding the Tax Gap, 2021. 6. 17.)

29) CBO, <https://www.cbo.gov/topics/budget/fall-2021-reconciliation>, 검색일자: 2021. 11. 23.

30) CBO, Summary of Cost Estimate for H.R. 5376, the Build Back Better Act, 2021. 11. 18., <https://www.cbo.gov/publication/57627>, 검색일자: 2021. 11. 23.

안(H.R. 5376)의 총 지출규모는 약 1조 7천억달러이며,³¹⁾ 재정적자 효과는 향후 5년간 7,500억달러, 향후 10년간 1,600억달러로 추산(국세행정 집행 개선으로 인한 절감 비용 포함)되고 있음

- (평가) CRFB는 Build Back Better 예산 조정 법안에는 비용 감소를 위해 다수의 일몰 조항(sunsets)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임시 조항(arbitrary expirations)들이 영구화된다면 25조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이며, 따라서 총비용은 4.9조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³²⁾

■ 미 의회,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H.R. 3684, P.L. 117-58) 최종 확정 (2021. 11. 5.)³³⁾

- (주요 내용) 총규모 약 1조달러 이상의 종합적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로서 도로, 전력, 수자원, 광대역 통신망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계획을 담고 있음³⁴⁾

■ 미 의회, 2022 회계연도 제2차 임시 예산안(H.R. 6119, P. L. 117-70) 가결(2021. 12. 2.)^{35), 36)}

- 제1차 임시 예산안의 만료 시한(12월 3일)이 다

가오면서, 의회는 아프가니스탄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및 전년도 수준에 준하는 제2차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였으며, 제2차 임시 예산의 만료 시한은 2022년 2월 18일로 규정됨

■ 미 의회예산처(CBO), 2021 회계연도(2020. 10. 1.~2021. 9. 30.) 최종 결산 발표(2021. 11. 8.)³⁷⁾

- (재정수지) 재정적자는 전년(3조 1천억달러) 대비 11.5%(3,600억달러) 감소한 약 2조 7,720달러 (GDP 대비 12.4%) 집계
- (세입) 전년 대비 18.3%(6,270억 달러) 증가한 4조 460억달러(GDP 대비 18.1%) 집계
 - 주요 세입항목인 개인소득세(27.1%) 및 법인세(75.5%) 수입 모두 전년 대비 증가[사회보험급여세(payroll taxes)는 0.3% 증가]
- (세출) 전년 대비 4.1%(2,660억 달러) 증가한 6조 8,180억 달러(GDP 대비 30.5%) 집계
- 주요 지출항목인 사회보장지출(3.6%), 메디케어 드(13.5%) 등의 의무지출(mandatory programs)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메디케어는 10.4% 감소

31) MSNBC News, Congress Works To Pass Funding, Build Back Better Act By End Of The Year, 2021. 11. 30., CNBC, <https://www.cnbc.com/2021/11/19/biden-build-back-better-bill-house-passes-social-safety-net-and-climate-plan.html>, 검색일자: 2021. 11. 30.
 32) CRFB, <https://www.crfb.org/blogs/build-back-better-cost-would-double-extensions>, 검색일자: 2021. 11. 24.
 33)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21/11/05/1050012853/the-house-has-passed-the-1-trillion-infrastructure-plan-sending-it-to-bidens-des/>, 검색 일자: 2021. 11. 9.
 34) 인프라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 2021. 10. 참고
 35)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2/03/bill-signed-h-r-6119/>, 검색일자: 2021. 12. 9.
 36)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further-extending-government-funding-act>, 검색 일자: 2021. 12. 8.
 37)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7539>, 검색일자: 2021. 11. 12.



[기타]

■ 의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3분기 GDP(속보, 수정) 발표(2021. 10. 28.; 2021. 11. 24.)³⁸⁾

- 미국 경제는 2021년 3분기 2.1%(연율, 수정치) 성장하여 2021년 2분기(6.7%) 대비 낮은 성장률을 기록
- 명목GDP 성장률은 8.1%로 2021년 2분기 성장률(13.4%)보다 감소함

■ 미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공개(2021. 11. 24.)³⁹⁾

- FOMC 참석자(participants)⁴⁰⁾들은 11월 2-3일 개최된 FOMC 회의⁴¹⁾에서 백신 보급 진척과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함
-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공급망 붕괴는 지속되고 있음
-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전 평가보다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 위원(member)⁴²⁾들은 자산매입을 축소하고 및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공급망 문제 등의 경제 상

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0-0.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반면, 자산매입 규모는 11월(국채 7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350억달러 매입)에 10월(국채 8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400억달러 매입)대비 150억달러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행하기로 결정

* 12월(국채 6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300억달러)도 11월 대비 150억달러 축소 예정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1. 12. 1.)⁴³⁾

- (전반적인 경제활동) 공급망 붕괴와 노동 부족 문제에도 완만하게 경제활동이 증가함
- (고용 및 임금) 고용 증가는 업종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이 있었음
- 많은 지역에서 연방 차원의 백신 의무화가 고용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 (물가)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인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남
- 물가는 지역에 따라 완만하거나(moderate) 견조한(robust) 속도로 상승했는데, 원자재 수요 증가, 물류난, 노동시장 경색 등에 따른 원가 상승의 영향이 컸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선임연구원, 서동규 연구원>

38) BEA, Gross Domestic Product, 3rd Quarter 2021 (Advance Estimate), 2021. 10. 28., <https://www.bea.gov/news/2021/gross-domestic-product-3rd-quarter-2021-advance-estimate>, 검색일자: 2021. 11. 19.; BEA, Gross Domestic Product, 3rd Quarter 2021 (Second Estimate); Corporate Profits, Third Quarter 2021(Preliminary Estimate), 2021. 11. 24., <https://www.bea.gov/news/2021/gross-domestic-product-3rd-quarter-2021-second-estimate-corporate-profits-3rd-quarter>

39) Fed,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1. 11. 24.,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211103.htm>, 검색일자: 2021. 12. 7.

40) 연준 이사 7명과 지역연준 총재 12명

41) 베이지북 7월호를 참고 바람

42)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43) Fed, Beige Book-December 2021, 2021. 12.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112.htm>, 검색일자: 2021. 12. 7.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21 추경예산(제1호) 발표(2021. 11. 26.)^{44), 45)}

- 2021년 11월 19일 발표된 「코로나 극복·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편성
 - (세입) 세입 추가 재원은 공채 22조 580억엔 추가 발행 및 전년도 잉여금 6조 1,479억엔, 기정 경비 감액 등으로 대응할 예정
 - (세출) 경제대책관계비로 31조 5,627억엔, 그 외 기타 경비로 및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총 37조 5,560억엔을 계상

■ 재무성, FY2020 결산 국회 제출(2021. 12. 6.)^{46), 47)}

- FY2020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8조 8,910억엔(5.1%) 증가한 184조 5,788억 엔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7조 5,973억엔이며, 「재정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잉여금은 7조 7,959억엔으로 나타남
 - 세출예산현액 중 연내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한

금액은 36조 9,814억엔이며, 불용액은 3조 8,880억엔, 예비비 사용액은 2,839억엔으로 집계됨

-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계는 417조 5,612억엔이며, 세출결산 총계는 404조 5,189억엔임

[기타]

■ 내각부, 「코로나 극복·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 발표(2021. 11. 19.)⁴⁸⁾

- 이번 경제 대책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에 의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하여 “성장도 분배도” 모두 이루는 자율적 성장궤도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대책임
- (규모) 총재정지출 55조 7천억엔, 총사업규모 78조 9천억엔
 - 본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FY2021 추경예산은 이른바 「16개월 예산」⁴⁹⁾에 따라 FY2022 당초 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하여, 끊임없는 재정정책을 실행할 예정
 - 경제대책에 의한 지출이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GDP 환산 시 5.6% 정도로 예상됨
- (감염 확대 방지) 감염 확대 방지책과 의료제공 체제 정비, 감염 방지 대책 등

44)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45) Fed, Beige Book-December 2021, 2021. 12.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112.htm>, 검색일자: 2021. 12. 7.

46)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0/ke0312.html, 검색일자: 2021. 12. 6.

47) 세입 세출 결산 국회제출은 회계 감사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다음연도 개회의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FY2003 결산” 이후에는 결산의제출 시기를 앞당겨 회계연도 익년의 11월 20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는 2003년 5월 참의원 요청으로 인해 2021년 12월 6일 각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함(헌법, 제90조, 「재정법」 제40조)

48) 내각부,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keizaitaisaku.html>, 검색일자: 2021. 11. 22.

49)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추경이 필요할 경우 보통 “15개월 예산”의 일환으로 1~3월경 추경예산과 함께 당초예산을 편성하나, FY2023의 경우 FY2022 11월 추경, FY2023 당초예산의 16개월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



<표 2> 일본 FY2021 추경예산(제1호) 규모 및 내용(일반회계)

구분	내용
1. 코로나19 확대 방지 (186,059억엔)	<p>1. 의료제공체제 확보 등: 44,783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급포괄교부금(병상확보 등)(20,314억엔) - 코로나19 백신 접종체제 정비·집중 실시(12,954억엔) - 치료약 확보(6,019억엔) 등 <p>2.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 및 생활 지원: 141,276억엔</p> <p>(1) 사업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활지원금(28,032억엔) - 자금지원(1,403억엔, 기정경비의 활용 포함 시 30,245억엔) - 영업시간 단축 등에 응한 음식점 등에 협력금 지원(지방창생임시교부금)(64,769억엔) 등 <p>(2) 생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비과세세대에 대한 급부금(14,323억엔) - 긴급소액자금 등 특례대출(4,581억엔) - 코로나19 생활곤란자 자립 지원(937억엔) - 학생지원긴급급부금(675억엔) - 주거확보급부금(100억엔)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등(6,547억엔) - 고용보험재정 안정(17,422억엔) 등 <p>(3)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용 연료에 대한 부담 경감제도 등(800억엔) 등
2. 「위드 코로나」속 사회경제활동 재개와 위기 대비 (17,67억엔)	<p>1. 안전·안심을 확보한 사회경제활동 재개: 8,336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Go To」트래블 사업(2,685억엔, 기정경비 활용(지역관광사업지원 포함) 포함 시 13,239억엔) - 예약이 필요 없는 무료 검사 확대(지방창생임시교부금)(3,200억엔) 등 <p>2. 감염증 유사대응의 근본적 강화: 9,351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치료약 연구개발 및 생산체제 정비(7,355억엔) 등
3.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새로운 자본주의」기동 (82,532억엔)	<p>1. 성장전략: 62,579억엔</p> <p>(1) 과학기술입국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펀드(6,111억엔) - 문샷형 연구개발(800억엔) -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강화 연구개발사업(최첨단 반도체 등의 기술개발)(1,100억엔) - 우주분야 연구개발 추진 등(933억엔) - 축산지 국내생산기반 확보(1,000억엔) 등 <p>(2) 지방활성화로 세계와 연결되는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디지털인프라 정비(571억엔) - 마이너포인트 제2탄(가칭)(18,134억엔) -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관련 지방창생교부금(가칭)(660억엔) - 중소기업 등 사업재구조추진사업(6,123억엔) - 중소기업생산성성취추진사업(2,001억엔) - 농림수산업 수출 강화, 성장 강화(3,200억엔) 등 <p>(3) 경제안전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반도체 국내생산거점 확보(6,170억엔) - 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육성프로그램(비전 실현형)(2,500억엔) 등 <p>2. 분배전략-안심과 성장을 부르는 "사람"에 투자 강화-: 19,952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세대에 대한 급부(12,162억엔)(11/26 코로나예비비사용분을 포함하면 19,473억엔) - 노동이동 유연화 및 인재육성 추진(640억엔¹⁾(특별회계를 포함하면 0.1조엔 정도) - 간호, 개호, 보육, 육아교육 등 현장 인력 수입 인상(2,600억엔) - 보육·방과후아동클럽 정비(618억엔) 등
4.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등 안전·안심 확보 29,349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공공사업관계비)(12,539억엔¹⁾) - 재해복구(4,870억엔) - 자위대의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의 즉응적인 대응(7,354억엔) 등

경제대책 관계 추경예산 추가 세출 계: 315,627억엔

주: 1. FY2021 추경예산(제1호)에는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 실행에 관련된 국비 외에 지방특례교부금, 국제분담금 등의 추가 재정수요(2,135억엔) 등을 계상

2. 상기 외, 노동보험 특별회계에서 3,841억엔 세출 추가 등을 계상

1) 다른 사업으로 분류된 금액도 포함된 금액임

출처: 재무성, 「令和3年度補正予算(第1号)の概要」, 2021. 11. 26.

<표 3> 일본 FY2020 일반회계 결산 개요

(단위: 억엔, 억엔 미만 버림)

구분	금액	참고
1. 세입결산 총액	1,845,788	
2. 세출결산 총액	1,475,973	
3. 「재정법」 제41조 잉여금	369,814	(1-2)
4. 2019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0	
5. 2020년도 신규발생잉여금	369,814	(3-4)
6. 2021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 순잉여금의 계산상 공제액	307,804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2020년도 신규발생 잉여금	62,010	(5-6)
8.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의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16,646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16,132	
(2) 공항정비사업비등 재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	
(3) 부흥비용 및 부흥상환비용재원(FY2011 추경예산(제3호) 이월분 및 FY2020 예산에 의한 잉여금)	514	
9. 「재정법」 제6조 ¹⁾ 에 의한 순 잉여금	45,363	(7-8)

주: 1. 억엔 미만 버림으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재정법」 제6조 :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 중 1/2를 하회하지 않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연도(翌々年度)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해야 함

출처: 재무성, 『令和2年度決算の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0/02kessangaiyou.pdf, 2021. 11. 20.

- 의료체제 확보 등

- 공립 공적 병원의 전용 병상화, 감염 확대 시 확보 병상 80% 이상의 확실한 가동 체제⁵⁰⁾ 구축, 지역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재택 치료자에 대한 대책
- 백신 추가접종 무료 실시, 치료약(중화항체 약·경구약) 확보 및 투여체제 구축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사업자 및 일반 생활 지원

- (사업자 지원) 지역·업종을 한정하지 않는 사업규모에 따른 급부금(사업부활지원금),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 등의 자금융자 지원 연장,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시간 단축 등 요청 시의 협력금 등)
- (생활 지원) 주민세 비과세 세대(1세대당 10만 엔 급부)와 고학생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고용조정 조성금 등 특례조치 연장 등
- 고유가 대책

50) 즉시 대응 병상으로 신고하였으면서도 코로나 환자가 사용하지 않는 병상을 '유령병상'이라고 문제 삼아 감염 확대 시 코로나 병상 사용률이 최소 80%가 되도록 하겠다고 명시



-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속 사회경제활동 재개와 위기 대비
 - 안전·안심 확보를 통한 사회경제활동 재개
 - 백신·검사 패키지 활용, 전자백신 접종 증명 연내 발급, 무료 PCR·항원검사 등 검사 실시
 - 사회경제활동 재개: Go To 트래블 등을 통한 수요 환기, 이벤트 개최, 취소 비용 등에 대한 지원
 - 감염증 유사 대응의 근본적 강화
 - 백신·치료약 등의 국내 개발, COVAX 퍼실리티를 통한 개도국 지원,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의 코로나19 대책·사회경제활동 재개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 코로나19 대책 예비비의 적시 적절한 집행
- (새로운 자본주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기동
 - (성장전략) 과학기술 입국 실현, 지방을 활성화

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경제안전 보장 등

- (과학기술) 10조엔 대학펀드 연내 설치, 연구인력 양성, 디지털, 그린,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해양 분야 등 첨단과학기술연구개발
- (청정에너지) 축전지·반도체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촉진, 태양광 발전 설비 정비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디지털화)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준공공 분야(건강·의료·돌봄, 교육 등)의 데이터 이용·활용 추진,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1인당 최대 2만엔 상당의 마이너포인트⁵¹⁾ 부여
- (경제안보) 첨단반도체 생산거점의 국내 입지 및 첨단 핵심기술 실용화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표 4〉 일본의 코로나 극복·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 사업규모 및 재정지출 내역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규모
	합	국·지방 세출	재정투융자	
I. 코로나19 확대 방지	22.1	22.1	-	35.1
II. 「위드 코로나」속 사회경제 활동 재개와 위기 대비 ¹⁾	9.2	9.2	-	10.7
III.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새로운 자본주의」기동	19.8	14.6	5.2	28.2
IV.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등 안전·안심 확보	4.6	3.8	0.8	5.0
합계	55.7	49.7 ²⁾	6.0 ³⁾	78.9

주: 1) 코로나19 대책 예비비의 적시 적절한 집행(2021년: 1.8조엔 정도, 2022년: 5.0조엔)을 포함

2) 국비는 43.7조엔이며, 이 중 FY2021 추경예산은 31.9조엔(일반회계 31.6조엔, 특별회계 0.4조엔)

3) FY2021 추경예산 추가액은 0.9조엔

출처: 내각부, 「コロナ克服・新時代開拓のための経済対策」について(令和3年11月19日) pp. 55~56을 재구성

51) 마이 넘버 카드로 마이너 포인트 이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택한 결제 서비스에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상한선 5천엔분)를 국가가 부여하는 소비 활성화 방안

- (분배전략) 민간부문 분배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 및 공적 부문 분배 기능 강화 등

- (임금 인상 추진)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하도급거래 감독체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조성금 등 확충
- (노동 이동의 원활화·인재 육성) 3년간 4천 억엔 시책 패키지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디지털 인재육성 강화 등의 실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확충
- (간호, 간호, 보육, 유아교육 분야 임금 인상) 공적 가격의 기본 방향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 민간부문에서의 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공공부문 조기 실시, 의료·복지 인재의 육성·확보 지원
- (아동·육아 지원 추진)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육아 세대에 대해 자녀 1인당 10만엔 상당의 급부, 입소 대기 아동 해소를 목표로 한 보육 인수 정비, 육아 세대의 주택 취득 지원 등
- (안전·안심 확보)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의 추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로·처리수 대책,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안심 등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예산·결산 등]

- 독일 재무부, 제161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⁵²⁾ 결과 발표(2021. 11. 11.)⁵³⁾
 - 독일의 제161차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연도의 세수는 지난 5월 추계치 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총세수는 지난 5월 추계 대비 385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16억유로, 225억유로, 80억유로 증가하고 EU는 38억유로 감소할 전망
 - 2025년까지 5년간 조세수입 추계 변화분(2021년 5월 추계 대비)은 약 1,800억유로(연간 평균 350억유로) 높을 것으로 추정됨

[기타]

- 독일 경제에너지부, 2021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1. 10. 27.)⁵⁴⁾
 - 연방정부는 가을 경제전망에서 2021년 실질 경제성장률 2.6%(봄 전망 대비 0.9%p 하향 조정),

52) 독일의 세수추계는 통상 5월, 11월 두 차례 발표하며, 세수추계 작업반은 간사 역할을 맡은 연방재무부 외에 연방 경제에너지부,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함

53) 독일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1. 11. 1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11/2021-11-11-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1. 11. 16.

54) 독일 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 Wirtschaftliche Entwicklung, 2021. 10. 27.,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herbst-2021.html>,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1/10/20211027-herbstprojektion-deutsche-wirtschaft-nach-corona-wieder-auf-wachstumspfad.html>, 검색일자: 2021. 11. 3.



<표 5> 독일 2021년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방정부	2021년 11월 추계	3,054 (7.9)	3,284 (7.5)	3,455 (5.2)	3,595 (4.0)	3,724 (3.6)	3,855 (3.5)
	2021년 5월 추계	2,938 (3.8)	3,146 (7.1)	3,309 (5.2)	3,442 (4.0)	3,562 (3.5)	-
주정부	2021년 11월 추계	3,471 (9.1)	3,564 (2.7)	3,679 (3.2)	3,831 (4.1)	3,967 (3.6)	4,110 (3.6)
	2021년 5월 추계	3,246 (2.6)	3,395 (4.6)	3,524 (3.8)	3,679 (4.4)	3,810 (3.6)	-
지방자치단체	2021년 11월 추계	1,205 (12.2)	1,225 (1.6)	1,271 (3.7)	1,337 (5.3)	1,403 (4.9)	1,456 (3.8)
	2021년 5월 추계	1,125 (4.7)	1,160 (3.1)	1,229 (6.0)	1,298 (5.6)	1,353 (4.3)	-
EU ²⁾	2021년 11월 추계	389 (18.5)	416 (7.1)	416 (0.0)	428 (2.8)	443 (3.6)	454 (2.4)
	2021년 5월 추계	427 (30.1)	420 (-1.5)	423 (0.5)	435 (2.9)	451 (3.7)	-
총세수	2021년 11월 추계	8,120 (9.8)	8,489 (4.5)	8,821 (3.9)	9,190 (4.2)	9,538 (3.8)	9,875 (3.5)
	2021년 5월 추계	7,735 (4.6)	8,121 (5.0)	8,484 (4.5)	8,854 (4.4)	9,175 (3.6)	-

주: 1)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21~2025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연방재무부, Press Aktuelles 2021. 11. 11.

2022년 4.1%, 2023년 1.6%로 독일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경제성장률은 공급망 및 운송 병목현상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여 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 민간소비지출은 현재 경제회복의 원동력이며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부문도 크게 개선

■ 연방정부, 코로나19 제4차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

주정부 결정사항 발표(2021. 12. 2.)⁵⁵⁾

- 연방정부는 연방-주정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추고 의료시스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응 조치들을 결정
- (백신접종)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3천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치과, 약국, 간호인력을 통해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2G 규정 적용) 독일 전역에 2G 규정을 적용하고 대 규모 스포츠, 문화행사 등은 참석인원 제한 및 마스크

55) 연방정부, Federation-Länder decision, 2021. 12. 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federation-laender-decision-1987282>

<표 6> 독일 2021년 가을 경제전망 주요 수치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 성장률	-4.6	2.6	4.1	1.6
명목GDP 성장률	-3.0	5.6	6.4	3.3
가계최종소비	-5.9	0.3	6.6	1.7
정부최종소비	3.5	3.6	-0.5	-0.3
총고정자본형성	-2.2	2.6	3.9	2.9
설비	-11.2	5.5	4.5	4.0
건설	2.5	1.4	3.2	2.2
내수	-4.0	2.5	4.3	1.6
수출 증가율	-9.3	8.6	6.3	3.7
수입 증가율	-8.6	9.2	7.1	4.1
실업률(연방고용청 기준)	5.9	5.7	5.1	4.9

주: 2020년 잠정치, 2021~2025년 전망치

출처: 연방 경제에너지부, wirtschaftliche-entwicklung, 2021. 10. 27.

크 착용 의무화(특정 상황에서는 2G+ 적용 가능)

- (사적모임) 접종 미완료자는 본인가구 구성원 외 최대 2인까지만 모임 가능(14세 이하 제외),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제한 없음

■ 연방통계청, 2021년 3분기 GDP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발표(2021. 11. 25.; 2021. 11. 10.; 2021. 11. 29.)⁵⁶⁾

- 2021년 3분기 독일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경제는 2021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민간소비지출 증가(전분기 대비 6.2%)가 3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재무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시행기간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 발표(2021. 12. 2.)⁵⁷⁾

- 독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시행기간을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기존 2021년 12월 말)하기로 결정
- 기존 프로그램(Überbrückungshilfe III Plus)은 Überbrückungshilfe IV로 연계되며, 기존 지원 지속 및 추가 지원 등의 내용 발표
- (기본 신청 요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3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매출 감

56) 독일 재무부, Press releases, 2021. 12.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12/2021-12-03-antragstellung-kfw-sonderprogramm-verlaengert.html>

57) 프랑스 정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2021. 11. 3., <https://www.vie-publique.fr/loi/282248-second-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21-plfr-budget-rectificatif>, 검색일자: 2021. 11. 23.



<표 7> 독일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		
	1Q	2Q	3Q	4Q	1Q	2Q	3Q
전분기 대비 ¹⁾	-1.8	-10.0	9.0	0.7	-1.9	1.9	1.7
전년 동기 대비 ²⁾	-1.5	-11.3	-3.6	-1.9	-3.2	10.3	2.5

주: 1) 가격 조정, 계절 및 캘린더 효과 조정

2) 가격 조정

출처: 연방 통계청, Press release, 2021. 10. 29.

소에 따른 고정비용 지원 비율 차등 적용 유지

- (추가 지원금)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이 평균 50% 이상 일 경우 고정비용 상환액의 30%까지 추가 보상 청구 가능하며, 쇼맨, 시장상인, 취소된 크리스마스 행사 주최자는 50%까지 추가 청구 가능

■ 재무부, 독일재건은행 특별 프로그램 연장(KfW-Sonderprogramm) 발표(2021. 12. 3.)⁵⁸⁾

- (프로그램 연장 및 확대) 연방정부는 KfW 특별 프로그램 신청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기존 2021. 12. 31.)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소액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함
- KfW 신속 대출 한도 확대: 직원 50인 이상 기업 230만유로(기존 180만유로), 10~50인 기업 150만유로(기존 112만 천만유로), 10인 이하 기업 85만유로(기존 67만 5천유로)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선임연구원>



프랑스

[예산·결산 등]

■ FY2021 2차 수정예산법안(PLFR 2: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1-2) 발표(2021. 11. 3.)⁵⁹⁾

- 2021년 제2차 수정예산법안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과 실업자 고용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위해 편성
- (경제 전망) 2021년 제2차 수정예산법안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9월 편성된 2022년 예산법안 전망치인 6%보다 다소 높은 6.25%로 전망
 - *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4%로 유지
- (재정 전망) 2021년 제2차 수정예산법안의 재정적자는 2,052억유로(GDP 대비 8.1%)로 1차 수정예산법안(GDP 대비 8.4%) 대비 149억유로 개선
 - * 2021년 GDP 대비 공공채무는 115.3%로 전망
- (주요 재정 조치) 인플레이션 수당(indemnité

58) Vie Publique, Proposition de loi organique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2021.11. 26., <https://www.vie-publique.fr/loi/281020-proposition-de-loi-lolf-modernisation-de-gestion-des-finances-publiques>, 검색일자: 2021. 12. 8.

59) 독일 재무부, Press releases, 2021. 12.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12/2021-12-03-antragstellung-kfw-sonderprogramm-verlaengert.html>

inflation) 지급, 전문직 고용에 대한 보너스 지급 등이 반영

- 물가 상승,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직면한 가계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에 2021년 26억 유로 배정
 - 월 순소득 2천유로 미만 국민에 대해 1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하며, 약 3,800만명이 지급 대상자가 될 전망
 - 장기 구직자의 전문직 고용에 대해 8천유로 보너스 지급

[기타]

- 공공재정 현대화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상원 채택(2021. 11. 24.)⁶⁰⁾
 - 공공재정 현대화에 관한 조직법은 다년간의 공공재정 관리 강화, 재정 투명성 개선, 의회 절차 합리화 및 개선을 목표로 재정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LOLF)을 개혁하기 위해 발의됨

<표 8> 프랑스 FY2021 제2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예산법 (A)	2021 1차 수정 예산법 (B)	2021 수정전망 (2022 예산법안)	2021 2차 수정 예산법안 (C)	C-A	C-B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55.5	503.8	494.8	499.8	44.3	-3.9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84.9	433.9	424.7	429.8	44.8	-4.1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70.6	69.9	70.1	70.1	-0.5	0.2
재정수입(Recettes nettes)	283.2	285.5	300.8	299.9	16.8	14.5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57.9	259.0	278.6	277.6	19.7	18.6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3.3	75.4	77.0	77.0	3.8	1.6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31.0	28.4	36.4	36.4	5.4	8.0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	17.1	17.0	17.5	17.5	0.4	0.4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85.5	88.3	92.4	92.0	6.5	3.6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51.1	49.8	55.3	54.7	3.6	4.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5.3	26.5	22.2	22.4	-3.0	-4.1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9	-1.7	-3.5	-5.2	-4.2	-3.4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1	-0.1	-0.1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173.3	-220.1	-197.4	-205.2	-31.9	14.9

출처: 프랑스 재무부, 2021년 수정예산법안(PLFR 2021)

60) Vie Publique, Proposition de loi organique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2021. 11. 26., <https://www.vie-publique.fr/loi/281020-proposition-de-loi-lolf-modernisation-de-gestion-des-finances-publiques>, 검색일자: 2021. 12. 8.



- 예산 가독성 강화
 - 중장기예산법(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LPPF)과 단년도 예산법의 재정지출 목표를 GDP 대비 비율이 아닌 유로 단위로 정의하도록 함
 - 연간사업계획(Projets Annuels de Performances: PAP)이 3년간의 성과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법안의 수치가 증기 전망과 차이가 생기는 경우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
- 예산일정 간소화
 -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에 대한 논의와 국가재정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débat d'orientation des finances publiques)를 증기 재정 방향에 대한 논의로 통합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재정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의회에 제공
 - 예산법안에 첨부되는 경제·사회·재정 상황 및 전

망에 대한 보고서는 예산법안과 이전에 발표된 중장기예산법⁶¹⁾의 지출 전망 차이를 설명해야 함

-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권한 강화
 - 차년도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에 대해 최고재정자문위원회는 예산법안의 지출 전망이 기존에 발표된 중장기 예산법의 전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선임연구원>



영국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 검토(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발표(2021. 10. 27.)⁶²⁾
 - 경제전망(<표 9> 참고)

<표 9> 영국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 성장률	-9.8	6.5	6.0	2.1	1.3	1.6	1.7
(2021년 3월 전망 대비 변화, %p)	0.1	2.4	-1.3	0.3	-0.2	-0.1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0.9	2.3	4.0	2.6	2.1	2.0	2.0
실업률(LFS)	4.6	4.9	4.8	4.3	4.2	4.2	4.2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 10., Table 1.1, 2.9.

61) 중장기예산법(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은 최소 향후 4년 동안의 재정 전망을 제시하며, 2009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총 5차례 제출됨

62)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 10. 27.,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28814/Budget_AB2021_Web_Accessible.pdf

HM Treasury, "Budget and Spending Review October 2021: What you need to know," 2021. 10. 27.,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dget-and-spending-review-october-2021-what-you-need-to-know>

HM Treasury, "A stronger economy for the British people," 2021. 10. 27., <https://www.gov.uk/government/news/a-stronger-economy-for-the-british-peopl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 10. 27.,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october-2021/>

<표 10> 영국 재정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수입 및 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795.3	862.0	962.4	1,019.8	1,061.3	1,101.9	1,147.8
(GDP 대비 %)	37.9	37.2	38.8	39.6	39.8	39.9	40.0
총관리지출(TME)	1,115.2	1,045.0	1,045.4	1,081.4	1,107.6	1,148.3	1,191.7
(GDP 대비 %)	53.1	45.1	42.1	41.9	41.6	41.6	41.6
재정적자 및 순투자(GDP 대비 %)							
경상예산 적자	11.8	5.3	0.6	-0.5	-0.9	-1.0	-1.1
공공부문 순차입	15.2	7.9	3.3	2.4	1.7	1.7	1.5
경기조정 순차입	15.1	8.3	3.9	2.7	1.8	1.7	1.5
공공부문 순투자	3.5	2.6	2.7	2.9	2.7	2.7	2.7
채무(GDP 대비 %)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제외)	86.1	85.2	85.4	85.7	85.1	84.2	83.3
공공부문 순채무	96.6	98.2	97.9	97.8	94.7	90.5	88.0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 2021. 10., Table 1.3.

- (경제성장률) 2021년 GDP 성장률은 2021년 3월 전망 대비 2.4%p 높은 6.5%로 예상되며 2021년 말~ 2022년 초에는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2022년은 소비와 주거 투자의 성장 둔화로 보다 서서히 성장이 이루어져 GDP 성장률이 6.0%로 3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됨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1년 4분기에 5.2%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4년에 4.2%로 감소할 전망
- (물가) 유틸리티 가격 상승, 운송비용 증가,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CPI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여 2022년 2분기에 4.4%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표 10> 참고)

- (수입) FY2021-22의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8,620 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667억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명목 GDP 증가에는 미치지 못해 GDP 대비 비율은 37.2%로 감소할 전망
 - 봄과 가을 예산안에서 발표한 주요 조세 정책 조치*들의 영향으로 FY2022-23부터 GDP 대비 공공부문 경상수입이 팬데믹 이전 상황보다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
 - * 소득세 공제 기준 동결, 법인세율 인상,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Health and Social Care Levy) 도입 등
- (지출)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팬데믹 관련 지출 감소와 명목 GDP 증가에 따라 FY2021-22에 45.1%(1조 45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8.0%p 감소하고 FY2022-23에도 대다수 팬데믹 지원의 종료로 42.1%(1조 454억파운드)로 급격히 하락할 전망

- (재정수지) FY2021-22에 팬데믹 관련 지원이 줄어들면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7.9%로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고 FY2022-23에도 3.3%로 감소할 전망

- 경사예산 적자도 전망기간 동안 감소하여 FY2023-24에 균형에 도달하고 FY2024-25에는 251억파운드 흑자가 예상됨

- (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1-22에 98.2%로 전년 대비 늘어난 이후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매년 감소하여 FY2026-27에 88.0%를 기록할 전망

● (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및 지출 검토에서 강화된 공공서비스, 기회의 레벨업, 비즈니스 성장, 일하는 가족의 생계비 지원 등 영국 국민의 우선 순위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

-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 (의료 및 돌봄) 영국 전역의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지출 관련 자금을 연간 130억파운드 확보하여 NHS, 사회적 돌봄, 공공 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 개혁, 인력 훈련 등에 추가로 지원

• (학생 및 교사 지원) 핵심 학교 예산(core schools budget)에 FY2024-25까지 추가 47억 파운드 투자, 신규 특수 교육학교 관련 26억

파운드, 교육 회복 및 캐치업을 위한 추가 18억파운드 등

• (주택) 115억파운드 투자(2021~2026년)를 통해 18만개의 신규 저가 주택(affordable home) 건설(이 중 65%는 런던 외 지역에 투자)

- 성장에 대한 투자

•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R&D 투자를 2024-25년까지 200억파운드 규모로 확대

• R&D 조세 감면제도 개선, 신규 Global Talent Network를 통한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 등

- 국민 및 기업 지원

• 근로자들이 소득을 높이고 적절한 기술(skill)을 개발하도록 향후 3년간 노동연금부(DWP)에 60억파운드 이상 자금 지원

• 평생 숙련 보장(Lifetime Skills Guarantee)⁶³⁾ 지원 확대, 신규 성인 수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Multiply scheme) 등 기술(skill) 관련 지원 확대

• 통합급여의 수당 삭감률⁶⁴⁾ 하향 조정(63%→55%), 국가생활임금 인상(시간당 8.91파운드→9.5파운드, 2022년 4월) 조치 등을 통해 근로 소득을 보장

• 정부 무료 보육 제공자에 대한 지원금 인상에 추가 투자(2024-2025년), 부모-영아 정신 건강

63) 학자금 대출을 유연화하여 성인이 대학이나 평생교육 기관에서 고등교육수준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64)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비율

- 지원 등 신규 영유아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Supporting Families programme)에 추가 투자 등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잉글랜드 내 소매, 집객, 레저 부동산에 대한 한시적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세율 감면, 비주거 재산세 승수⁶⁵⁾ 동결(2022~2023년) 등
- 친환경적 재건(Building back greener)
 - 2021년 10월 발표한 ‘넷 제로 전략’의 260억 파운드의 투자를 바탕으로 예산안 및 지출 검토에서 영국의 녹색 산업혁명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규모는 2021년 3월 이후 총 300억파운드에 달함
 - 해상풍력 부문 3억 8천만파운드, 운송부문 탈탄소화 계획 이행에 61억파운드, 건물 탈탄소화에 39억파운드 등
- 지역 균형 발전(Levelling up)
 - 8개 지역에 런던 스타일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7억파운드, 2020~2025년에 50여개 지방 도로 개선을 위해 26억파운드, 지방도로 유지보수에 50억파운드 등
 - Levelling Up Fund 제1차 배정으로 17억파운드의 지역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지원, 취업 및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26억파운드의 영국 공동 번영 기금(UK Shared Prosperity Fund) 등
- 브렉시트로부터 기회 포착 및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강화
 - 14억파운드의 신규 Global Britain Investment Fund를 통해 국제 기업의 영국 투자 장려
 - 영국 해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영국의 톤세⁶⁶⁾ 제도를 현대화
 - 영국의 ODA 지원 비율이 2024-25년에 0.7%로 다시 복구되도록 확대
- 영국 전역을 위한 지원 제공
 - 2021 지출검토에서 검토 기간 동안 연간 평균 87억파운드를 이양정부에 추가로 제공하여 학교, 주택,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교통에 투자
- (지출 검토 주요 내용) 지출검토에서 FY2024-25까지의 총 부처별 지출규모를 연간 현금 기준 1,500억파운드, 실질 기준 900억파운드(3.8%) 증가하도록 설정하여 금세기 의회 회기 중 가장 큰 실질 증가를 기록할 전망
- (재정준칙 개정) 새로운 재정준칙(안)을 수립하여 예산책임헌장 개정안에 반영
- (재정 목표, fiscal mandate) 영국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GDP 대비 %)을 전망 기간(rolling)의 세 번째 연도까지 감축한다는 신규 준칙을 제시
- (보완적 목표, supplementary target) 재정수지와 지출 상한 기준의 보완적 준칙도 제시
 - (경상예산수지) 전망기간(rolling)의 세 번째 연도까지 경상예산수지 균형 달성

65) 부동산 평가 가치에 승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66) 해운기업에 실제 영업이익 대신 운항하는 선박의 수와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한 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 (공공부문 순투자) 5년 전망기간(rolling)의 공공부문 순투자 평균이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복지지출 상한) 복지지출을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와 마진 이내로 유지
- (예외 조항) 영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충격이 있는 경우 재무부는 일시적으로 재정준칙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에 이를 진술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 부동산세를 징수
- ‘결정’에 의하면 시범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 대상은 거주용 및 비거주용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이며 농촌의 주택과 주거용 건물은 포함되지 않음
- ‘결정’에 의하면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결정하고 통일된 법규를 제정하며 지방 인민정부가 시행세칙을 제정

■ 중국 10월 생산자가격지수(PPI) 상승률 13.5% 기록(2021. 11. 10.)⁶⁹⁾

- 국가통계국은 10월 생산자가격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를 발표하였으며 작년 동월 대비 13.5%(전월 대비 2.5%) 증가하여 26년 만에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국가통계국은 글로벌 요인에 더해 국내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PPI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고 분석

- 반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5%(전월 대비 0.7%)로 낮게 나타나 PPI와 CPI의 격차가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⁷⁰⁾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재원 연구원>



중국

[기타]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범운영 결정안 가결(2021. 10. 23.)⁶⁷⁾

-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⁶⁸⁾ 제31차 회의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보유세 개혁 시범사업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이 통과됨

- 중국은 원칙적으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업용 부동산세에 대해

67) 중국정부망, http://www.gov.cn/xinwen/2021-10/23/content_5644480.htm, 검색일자: 2021. 12. 1.

68)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국가의사 결정기관이며 상무위원회는 전인대의 상설기구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

69)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zxfb/202111/t20211110_1824271.html, 검색일자: 2021. 12. 2.

70)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zxfb/202111/t20211110_1824272.html, 검색일자: 2021. 12. 2.

<참고> 중국의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시각

- 중국의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PPI는 크게 상승한 반면, CPI의 상승률은 크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존재
 -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원자재 수입이 많은 중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 기업비용 상승에 따라 생산자물가(PPI)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중국 경제의 특성상(기업 간 경쟁 심화, 구조적 소비 부진, 물가지수 간 구성 차이 등) 이러한 현상이 소비자물가(CPI)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블룸버그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내의 원자재 공급불균형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PPI가 높게 나타나며, 중국 경제의 변화로 인해 PPI와 CPI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
 - 첫 번째 변화로 알리바바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쇼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지적
 - 두 번째 변화는 과거에 비해 소비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CPI 바스켓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공산품의 가격 상승이 CPI에 미치는 경로가 약하게 작용하게 됨

- 블룸버그⁷¹⁾는 중국의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
 -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 경제성장률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다음 달 내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⁷²⁾
 - PPI와 CPI 간의 간격은 CPI 상승보다는 PPI 하락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글로벌 물가 상승 현상과 중국의 물가 상승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공통된 요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중국의 물가상승이 글로벌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반면, WSJ 보도⁷³⁾에 따르면,
 -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PPI 상승률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존재

71) Bloomberg, CHINA REACT: Strong PPI, Weak CPI Poses No Dilemma for PBOC (1), 14 October 2021

72) 실제 인민은행은 12월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할 것을 12월 6일 발표

73) Wall Street Journal, “China’s Factory-Gate Prices Rise at Record Pace,” 2021. 10. 14.

재정포럼

2021년 12월호 통권 제306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1년 12월 15일 발행 / 제25권 제12호(통권 제30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